

2011년 하반기부터

이런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정부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목 록

◇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1. 세제 3

-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제한 / 3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 4
- 축사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 5
-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 부가가치세 과세 / 6
- 개별소비세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제도 도입 / 7
- 경마·경륜·경정장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 / 8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 신설 / 9
- 원재료 등에 대한 원산지 확인범위 확대 / 10
-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필수 요건 / 11

2. 공정거래·금융·조달 12

- 담합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 / 12
- 하도급법 적용 확대 / 14
-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도입 / 15
- 경쟁을 제한하는 M&A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기준 제정 / 16
- 구매안전서비스 적용대상 금액 확대 및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링크 의무화 / 17
- 보이스포싱 피해금 환급 절차 개선 / 18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업체 진입요건 강화 / 19

-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표준 계약서 사용업체 우대 / 21
- 조달업체 스스로 품질을 보증하는 「자가 품질보증제도」 시행 / 23

3. 산업(중소기업·특허) 25

- 구매확인서 on-line발급 2011.7.1일부터 전면 시행 / 25
-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제 도입 등 안전관리제도 개선 / 26
- 국가통합인증마크(KC)만 확인하세요! / 28
- 법적규제를 특정지역에 한해 완화하는 지역 특구 규제특례 확대 / 30
- 통관단계에서 보호되는 지재권의 종류 및 대상물품 확대 / 32
-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지원대상 확대 / 33
- 한·EU FTA 협정에 의한 EU의 지리적 표시 보호 / 34

4. 환경·국토 35

- 녹색생활 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린카드 전국 출시 / 35
- 인체에 유해한 어린이용품의 안전관리 강화 / 36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제도 시행 / 37
- 자연공원 내 용도지구 축소 / 38
- 분노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도 시행 / 40
-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시행 / 41

- 사업장폐기물 배출시 전자인계서 작성 의무 대상 확대 / 43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실시 / 44
- 취급제한물질 규제 시행 확대 / 45
- 환경산업 진흥단지 조성 / 47
- 토양정화공제조합 설립 / 48
- 오염토양의 정화 국가의 역할 확대 / 49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50
-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의제협의절차 개선 / 52
-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 53
-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실구획 허용 / 54
- 리츠, 펀드 법인에게 민영주택 우선공급 (임대용·5년) / 55
-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참여 허용 / 57
- 종합적인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 58
- 택지개발사업지구 대토보상자들에 대한 투자기회 확대 / 59
- 택지지구내 단독주택 층수제한 완화, 가구수 규제 폐지 / 60
- 지상경계점 등록·관리 제도 시행 / 61
- 거래 할 부동산 내역 스마트폰으로 확인 / 62
-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완화 / 63
- 실적미달업체 영업정지 처분 대상에서 제외 / 64
- 상수도 미보급지역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 65
- 준공검사 조건부 허가 폐지 / 66
- 지하수개발·이용시 공업 등록 결격사유 합리화 / 67
- 수도권 소재 산업대학의 일반대학 전환 한시적 허용 등 / 68
- 중저가 관광호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 69
- 회전교차로 건설에 따른 사고감소 및 연료 절감 / 70
- 이동성 기능도로의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완화 / 71
- 경춘선, 좌석급행열차 운행 개시 / 72
- KTX, 전라선(익산~여수) 운행 개시 / 73
- 광역급행버스 정류소 확대 / 74
- 자동차 Total 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 제공 / 75
- CNG 내압용기 안전성 강화 / 76
- 이륜자동차(50cc 미만)에 대한 자동차의무 보험 시행 / 76
-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실태조사 실시 / 77
-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 78
- 교통안전 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 / 79
-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권(利用權) 강화 / 80
- 전국 5대권역 내륙물류기지 기능 조정 / 81
- 평택 청북 신규 물류단지 개발 / 83
-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 84
- 수출·입 컨테이너 및 샤시 추적정보 서비스 확대 / 85
- 해운중개업 등록기준 완화 / 86
- 선박펀드 유형 다양화 / 87
- 선박펀드 추가주식 발행 금지 규정 완화 / 88
- 외국인 선원 관련 고용절차 개선 등 외국인 선원관리지침 개정 시행 / 89
- 선박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 91
- 유조선 통항금지해역 통항금지선박 확대 / 92
- 내항선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 93
-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체제 마련 / 94
- 소형선박 질소산화물 규제 (유예기간 종료) / 95
- 유조선 기름화물 이송계획서 비치 / 96
- 선교항해당직경보 장치 의무화 / 97
- 부유식 해상구조물 구조설비기준 개정 / 98

- 선박 내연기관 형식승인 대상 확대 / 99
- 공기부양선 구조설비기준 제정 / 100
-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안전운송 교육이수 의무화 / 101
- 예인선항해검사의 주기 개선(1년 → 5년) / 102
- 선박검사관의 자격기준 완화 / 103
- 선박의 기관개방검사 주기 개선 / 104
- 소형항공운송사업 좌석기준 상향 / 105
- 인천공항 배후물류단지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 / 106
- 군비행장 사용신청 처리기간 단축 / 108
- 「항공안전관리 시스템(SMS)」 운영 확대 / 109
- 집중점검 방식의 항공안전감독제도 도입 / 111
- 항공사 자율적 안전관리시스템 (SMS) 정착 유도 / 112
- 항공안전 특별점검실시 기준 마련 / 113
- 항공기등에 관한 안전성 인증 및 승인 수수료 50% 감면 / 114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 유효기간 연장 / 115
- 공항시설 준공 전 사용허가 처리기간 단축 / 116
- 소음부담금 부과·징수 효율 인상 / 118
- 항공장애표시 등 설치신고 처리기간 단축 / 119
- 레이저 운영 승인 신청 처리기간 단축 / 121
- 연안관리정보시스템 (Coastal-GIS) 고도화 / 123
- 전국 자연해안관리 목표제 시행 / 124
- 제2차 연안통합 10개년계획 수립·시행 / 125
- 연안정비사업 패러다임 전환 / 126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업무처리 규정 신설 / 127
- 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기간 연장 및 과태료 완화 / 128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대상 확대 및 규제 완화 / 130

5. 보건복지·여성 132

- 전문병원 지정제도 시행 / 132
- 임시마약류 지정제도 도입 / 134
-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136
-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 / 137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요건 완화 / 138
-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 범위 합리적 확대·조정 / 139
-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도입 / 141
-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공제계산서 교부의무 완화 / 142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통합 발급 서비스 제공 / 143
- 집행유예자·가석방자 기초노령 연금 수급 가능 / 144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 145
- 보육료·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실시 / 146
-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 / 147

6. 고용노동 148

- 외국인력상담센터 개소 / 148
-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부담금 부과 / 149
-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내일 배움카드제”로 통합 / 150
-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 151

-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 152

7. 법무·행정안전 154

- 성폭력법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실시 / 154
- 압류금지 범위 구체화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시행 / 156
- 상법 항공운송편 신설 / 157
-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 인사교류 인센티브 강화 등 / 158
- '11. 7월 29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 / 159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 160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 161
- 고층·특수건축물 대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성능위주설계 활성화 / 163

8. 보훈·국방·병무 164

- 참전유공자! 모두 국가유공자로 인정 / 164
- 보국수훈자 국가유공자 인정범위 개선 / 165
- 소방공무원의 일반직무 중 희생도 보상금을 받는 순직·공상군경으로 인정 / 166
- 입영 후 자녀 출산시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제도 실시 / 167
- 여군 전역제도 개선으로 예비역 문호 개방 / 168
- 군수품 국방표준바코드 부착 시행 / 169
- 육군 베레모 착용 / 170
-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제도 도입 / 171
-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입영기일연기 제도 신설 / 172
- 동반입대병·직계가족병 범죄경력 제한 기준 완화 / 173
- 국외이주자 중 현역병복무지원자에 대한 선발가산점 부여 / 174

- 거주지 이동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완화 / 176

- 근무태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처벌 강화 / 177

- 산업기능요원 제도개선 / 178
-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지침 개정 / 179
-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 / 180

9. 교육·문화 181

- 이동통신 요금 인하 / 181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이용자 선택 사항으로 변경 / 182
-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 184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투명성 제고 및 참여확대 / 185
- 유치원비 수납방식 월납제 도입 / 187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 개정 / 188
-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자본금 1천만원으로 하향 / 189
-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율등급분류 제도 도입 / 190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개선 전문 예술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확대 / 192
-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선-선택적 기금제 도입 등 / 194
-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공연장의 범위 축소 / 196
- 공공도서관에서의 기부금품 접수 명확화와 국·공유 재산의 사립도서관 무상사용 근거 마련 / 197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확대 등 행정절차 간소화 / 198
-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제한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에서 청소년(만 19세 미만)으로 변경 / 200

10. 농식품·산림 201

- 쌀 등급 의무표시제 도입 / 201
- 배합사료 제조과정에 항생제 첨가 금지 / 203
- 음식점 수산물 등 원산지표시제 확대 / 205
-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품질인증제 시행 / 206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사후관리 강화 / 207
- 농약 포장지 글자크기 표시 최소기준 신설 / 208
- 연구클린센터 (Clean Center) 구축 / 210
-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제도 도입 / 211
-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제도 도입 / 212
- 특별관리임산물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도입·시행 / 213
-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 신설 / 214
-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완화 / 215

◇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

○ 기획재정부 219

1.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감면 제한 / 219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 219
3. 축사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 219
4.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 부가가치세 과세 / 220
5. 개별소비세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제도 도입 / 220
6. 경마·경륜·경정장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 / 220
7.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 신설 / 220
8. 원재료 등에 대한 원산지 확인범위 확대 / 221
9. 간이과세제도 합리화 / 221
10. 내국신용장 등으로 거래한 경우 영세율 신청시 납세협력 부담 완화 / 221
11. 농업용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 대상 농업기계 범위 조정 / 221

○ 교육과학기술부 222

1.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 222
2. 학교운영 위원회 운영 내실화·투명성 제고 및 참여확대 / 222
3. 유치원비 수납방식 월납제 도입 / 223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 개정 / 223

○ 법무부 223

1. 성폭력법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제도 실시 / 223

2. 압류금지 범위 구체화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시행 / 224
3. 자동차 번호판 압류 / 224
4. 상법 항공운송편 신설 / 224

○ 국방부 225

1. 입영 후 자녀 출산시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제도 실시 / 225
2. 여군 전역제도 개선 예비역 문호 개방 / 225
3. 군수품 국방표준바코드 부착시행 / 225
4. 육군 베레모 착용 / 225

○ 행정안전부 225

1.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 인사교류 인센티브 강화 등 / 225
2. 2011. 7. 29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 / 226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 226

○ 문화체육관광부 228

1.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자본금 1천만원으로 하향 / 228
2.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율등급분류 제도 도입 / 228
3.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개선 전문 예술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 229
4. 건축물 미장식 제도 개선 - 선택적 기금제 도입 등 / 229
5.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공연장의 범위 축소 / 229
6. 공공도서관에서의 기부금품 접수 명확화와 국·공유 재산의 사립도서관 무상사용 근거 마련 / 230
7.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시 인허가의제 확대 등 행정절차 간소화 / 230

- 8.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제한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에서 청소년(만 19세 미만)으로 변경 / 231

○ **농림수산식품부** 231

- 1. 쌀 등급 의무표시제 도입 / 231
- 2. 배합사료 제조과정에 항생제 첨가 금지 / 231
- 3. 음식점 수산물 등 원산지표시제 확대 / 232
- 4.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품질인증제 시행 / 232
- 5.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사후관리 강화 / 232

○ **지식경제부** 232

- 1. 구매확인서 on-line발급 2011.7.1일부터 전면 시행 / 232
- 2.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제 도입 등 안전관리제도 개선 / 233
- 3. 국가통합인증마크(KC)만 확인하세요! / 233
- 4. 법적규제를 특정지역에 한해 완화하는 지역 특구 규제특례 확대 / 234

○ **보건복지부** 234

- 1. 전문병원지정 제도 시행 / 234
- 2. 임시마약류 지정제도 도입 / 235
- 3.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235
- 4.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 / 236
- 5.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요건 완화 / 236
- 6.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 범위 합리적 확대·조정 / 236
- 7.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도입 / 236
- 8.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공제계산서 교부의무 완화 / 236
- 9.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통합 발급 서비스 제공 / 237

- 10. 집행유예자·가석방자 기초노령연금 지급 / 237

- 1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 237
- 12. 보육료·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실시 / 237

○ **환경부** 238

- 1. 녹색생활 포인트 지급 그린카드 전국 출시 / 238
- 2. 인체에 유해한 어린이용품의 안전관리 강화 / 238
- 3.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제도 시행 / 238
- 4. 자연공원 내 용도지구 축소 / 238
- 5.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도 시행 / 239
- 6.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시행 / 239
- 7. 사업장폐기물 배출시 전자인계서 작성 의무 대상 확대 / 239
- 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실시 / 240
- 9. 취급제한물질 규제 시행 확대 / 240
- 10. 환경산업 진흥단지 조성 / 240
- 11. 토양정화공제조합 설립 / 240
- 12. 오염토양의 정화 국가의 역할 확대 / 241
- 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41

○ **고용노동부** 241

- 1. 외국인력상담센터 개소 / 241
- 2.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부담금 부과 / 241
- 3.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내일 배움카드제”로 통합 / 241
- 4.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 242

5.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 242

○ 여성가족부 242

1.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 / 242

○ 국토해양부 242

- 1.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의제협의절차 개선 / 242
- 2.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 242
- 3.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실구획 허용 / 243
- 4. 리츠, 펀드 법인에게 민영주택 우선공급 (임대용·5년) / 243
- 5.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참여 허용 / 243
- 6. 종합적인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 243
- 7. 택지개발사업지구 대토보상자들에 대한 투자기회 확대 / 244
- 8. 택지지구내 단독주택 층수제한 완화, 가구수 규제 폐지 / 244
- 9. 지상경계점 등록·관리제도 시행 / 244
- 10. 거래 할 부동산 내역 스마트폰으로 확인 / 245
- 11.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완화 / 245
- 12. 실적 미달업체 영업정지 처분 대상에서 제외 / 245
- 13. 상수도 미보급지역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 245
- 14. 준공검사 조건부 허가 폐지 / 245
- 15.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결격사유 합리화 / 245
- 16. 수도권 소재 산업대학의 일반대학 전환 한시적 허용 등 / 246
- 17. 중저가 관광호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 246
- 18. 회전교차로 건설에 따른 사고감소 및 연료 절감 / 246

- 19. 이동성 기능도로의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완화 / 246
- 20. 경춘선, 좌석급행열차 운행 개시 / 246
- 21. KTX, 전라선(익산~여수) 운행 개시 / 247
- 22. 광역급행버스 정류소 확대 / 247
- 23. 자동차 Total 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 제공 / 247
- 24. CNG 내압용기 안전성 강화 / 247
- 25. 이륜자동차 (50cc 미만)에 대한 자동차의무 보험 시행 / 247
- 26.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실태조사 실시 / 247
- 27.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 248
- 28. 교통안전 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 / 248
- 29.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권(利用權) 강화 / 248
- 30. 전국 5대권역 내륙물류기지 기능 조정 / 248
- 31. 평택 청북 신규 물류단지 개발 / 248
- 32.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아라뱃길 물류 단지 준공 / 249
- 33. 수출·입 컨테이너 및 샤시 추적정보 서비스 확대 / 249
- 34. 해운 중개업 등록기준 완화 / 249
- 35. 선박펀드 유형 다양화 / 249
- 36. 선박펀드 추가주식 발행금지 규정 완화 / 250
- 37. 외국인선원 관련 고용절차 개선 등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 개정 시행 / 250
- 38. 선박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 251
- 39. 유조선 통항금지해역 통항금지선박 확대 / 251
- 40. 내항선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 251
- 41.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체제 마련 / 251
- 42. 소형선박 질소산화물 규제(유예기간 종료) / 251
- 43. 유조선 기름화물 이송계획서 비치 / 252
- 44.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 의무화 / 252

- 45. 부유식해상구조물 구조설비기준 개정 / 252
- 46. 선박 내연기관 형식승인 대상 확대 / 252
- 47. 공기부양선 구조설비 기준 제정 / 252
- 48.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안전운송 교육이수 의무화 / 253
- 49. 예인선항해검사의 주기 개선 (1년→5년) / 253
- 50. 선박검사관의 자격기준 완화 / 253
- 51. 선박의 기관개방검사 주기 개선 / 253
- 52. 소형항공운송 사업 좌석기준 상향 / 253
- 53. 인천공항 배후물류단지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 / 254
- 54. 군비행장 사용신청 처리기간 단축 / 254
- 55. 항공안전관리 시스템(SMS) 운영 확대 / 255
- 58. 집중점검 방식의 항공안전감독제도 도입 / 255
- 59. 항공사 자율적 안전관리시스템(SMS) 정착 유도 / 255
- 60. 항공안전 특별점검실시 기준 마련 / 255
- 61. 항공기등에 관한 안전성 인증 및 승인 수수료 50% 감면 / 255
- 62.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 유효기간 연장 / 256
- 63. 공항시설 준공 전 사용허가 처리기간 단축 / 256
- 64. 소음부담금 부과·징수 효율 인상 / 256
- 65. 항공장애표시 등 설치신고 처리기간 단축 / 256
- 66. 레이저 운영 승인신청 처리기간 단축 / 257
- 67.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 257
- 68. 전국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실시 / 257
- 69. 제2차 연안통합 10개년계획 수립·시행 / 257
- 70. 연안정비사업 패러다임 전환 / 257
- 7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업무처리 규정 신설 / 257

○ 방송통신위원회 258

- 1. 이동통신요금 인하 / 258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이용자 선택 사항으로 변경 / 258

○ 국가보훈처 258

- 1. 참전유공자! 모두 국가유공자로 인정 / 258
- 2. 보국수훈자 국가유공자 인정범위 개선 / 258
- 3. 소방공무원의 일반직무 중 희생도 보상금을 받는 순직·공상군경으로 인정 / 258

○ 공정거래위원회 259

- 1. 담합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 / 259
- 2. 하도급법 적용확대 / 260
- 3. 조합에게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도입 / 260
- 4. 경쟁을 제한하는 M&A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기준 제정 / 260
- 5. 구매안전서비스 적용대상 금액 확대 및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링크 의무화 / 260

○ 금융위원회 261

- 1.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개선 / 261

○ 국민권익위원회 261

- 1.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 261

○ 관세청 261

- 1. 통관단계에서 보호되는 지재권의 종류 및 대상물품 확대 / 261

○ 조달청 262

- 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업체진입요건 강화 / 262
- 2.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표준 계약서 사용업체 우대 / 262
- 3. 조달업체 스스로 품질을 보증하는 「자가 품질보증제도」 시행 / 262

○ 병무청 263

1.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제도 도입 / 263
2.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입영기일연기 제도 신설 / 263
3. 동반입대병·직계가죽병 범죄경력 제한기준 완화 / 263
4. 국외이주자 중 현역병복무지원자에 대한 선발가산점 부여 / 263
5. 거주지 이동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완화 / 264
6.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자의 보상근거 명확화 / 264
7. 근무태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처벌 강화 / 264
8.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선 / 264

○ 방위사업청 264

1. 업체 생산(정비) 능력 확인지침 개정 / 264
2.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 / 265

○ 소방방재청 265

1. 고층·특수건축물 대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성능위주설계 활성화 / 265

○ 농촌진흥청 265

1. 농약 포장지 글자크기 표시 최소기준 신설 / 265
2. 수출용 농약의 제조 증명서 발급 / 265
3. 유통농약의 검사기준 개선 / 266
4. 연구클린센터 (Clean Center) 구축 / 266

○ 산림청 266

1.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 도입 / 266
2.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제도 도입 / 266
3. 특별관리임산물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 267

4.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 신설 / 267

5.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완화 / 267

○ 중소기업청 268

1.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지원대상 확대 / 268

○ 특허청 268

1. 한·EU FTA 협정에 의한 EU의 지리적 표시 보호 / 268

○ 해양경찰청 269

1. 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기간 연장 및 과태료 완화 / 269
2.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대상 확대 및 규제 완화 / 269

◇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11년 상반기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 4
- 담합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 / 12
- 하도급법 적용확대 / 14
-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도입 / 15
- 경쟁을 제한하는 M&A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기준 제정 / 16
-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표준 계약서 사용업체 우대 / 21
- 조달업체 스스로 품질을 보증하는 「자가 품질보증제도」 시행 / 23
- 수도권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시행 / 41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50
- 수도권 소재 산업대학의 일반대학 전환 한시적 허용 등 / 68
- 회전교차로 건설에 따른 사고감소 및 연료 절감 / 70
-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권(利用權) 강화 / 80
- 평택 청북 신규 물류단지 개발 / 83
- 수출·입 컨테이너 및 샹시 추적정보 서비스 확대 / 85
- 집중점검 방식의 항공안전감독제도 도입 / 111
- 항공사 자율적 안전관리시스템 (SMS) 정착 유도 / 112
- 항공안전 특별점검실시 기준 마련 / 113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요건 완화 / 138
-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 범위 합리적 확대·조정 / 139

-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공제계산서 교부의무 완화 / 142
- 참전유공자! 모두 국가유공자로 인정 / 164
- 보국수훈자 국가유공자 인정범위 개선 / 165
- 소방공무원의 일반직무 중 희생도 보상금을 받는 순직·공상군경으로 인정 / 166
- 여군 전역제도 개선으로 예비역 문호 개방 / 168
- 군수품 국방표준바코드 부착 시행 / 169
- 동반입대병·직계가족병 범죄경력 제한 기준 완화 / 173
-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지침 개정 / 179
-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 / 180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투명성 제고 및 참여확대 / 185
- 유치원비 수납방식 월납제 도입 / 187
-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제한 미성년자 (만 20세 미만)에서 청소년(만 19세 미만)으로 변경 / 200
- 농약 포장지 글자크기 표시 최소기준 신설 / 208
- 연구클린센터 (Clean Center) 구축 / 210

'11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7월

-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제한 / 3
- 축사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 5
-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 부가가치세 과세 / 6
- 개별소비세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제도 도입 / 7
- 경마·경륜·경정장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 / 8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 신설 / 9
- 원재료 등에 대한 원산지 확인범위 확대 / 10
-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필수 요건 / 11
- 구매안전서비스 적용대상 금액 확대 및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링크 의무화 / 17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업체 진입요건 강화 / 19
- 구매확인서 on-line발급 2011.7.1일부터 전면 시행 / 25
- 국가통합인증마크(KC)만 확인하세요! / 28
- 통관단계에서 보호되는 지재권의 종류 및 대상물품 확대 / 32
- 한·EU FTA 협정에 의한 EU의 지리적 표시 보호 / 34
- 녹색생활 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린카드 전국 출시 / 35
- 사업장폐기물 배출시 전자인계서 작성 의무 대상 확대 / 43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실시 / 44
-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 53
-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실구획 허용 / 54
- 택지개발사업지구 대토보상자들에 대한 투자기회 확대 / 59
- 지상경계점 등록·관리 제도 시행 / 61
- 거래 할 부동산 내역 스마트폰으로 확인 / 62
- 이동성 기능도로의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완화 / 71
- 광역급행버스 정류소 확대 / 74
- 외국인 선원 관련 고용절차 개선 등 외국인 선원관리지침 개정 시행 / 89
- 소형선박 질소산화물 규제(유예기간 종료) / 95
- 선교항해당직경보 장치 의무화 / 97
- 선박 내연기관 형식승인 대상 확대 / 99
-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안전운송 교육이수 의무화 / 101
- 인천공항 배후물류단지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 / 106
- 항공기등에 관한 안전성 인증 및 승인 수수료 50% 감면 / 114
- 제2차 연안통합 10개년계획 수립·시행 / 125
- 집행유예자·가석방자 기초노령 연금 수급 가능 / 144
- 외국인력상담센터 개소 / 148
-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부담금 부과 / 149
-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내일 배움카드제”로 통합 / 150
-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 151
-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 152
- 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제도 실시 / 154
- 압류금지 범위 구체화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시행 / 156
- '11. 7월 29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 / 159
- 고층·특수건축물 대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성능위주설계 활성화 / 163
-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입영기일연기 제도 신설 / 172
- 이동통신 요금 인하 / 181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이용자 선택 사항으로 변경 / 182
-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율등급분류 제도 도입 / 190
-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공연장의 범위 축소 / 196

- 공공도서관에서의 기부금품 접수 명확화와 국·공유 재산의 사립도서관 무상사용 근거 마련 / 197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확대 등 행정절차 간소화 / 198
- 배합사료 제조과정에 항생제 첨가 금지 / 203
-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 도입 / 211
-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제도 도입 / 212
- 특별관리임산물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도입·시행 / 213

8월

- 법적규제를 특정지역에 한해 완화하는 지역특구 규제특례 확대 / 30
-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참여 허용 / 57
- 종합적인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 58
- 상수도 미보급지역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 65
-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실태조사 실시 / 77
-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 78
- 교통안전 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 / 79
- 군비행장 사용신청 처리기간 단축 / 108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통합 발급 서비스 제공 / 143
- 국외이주자 중 현역병복무지원자에 대한 선발가산점 부여 / 174
-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자본금 1천만원으로 하향 / 189
- 음식점 수산물 등 원산지표시제 확대 / 205

9월

-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개선 / 18
-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지원대상 확대 / 33
- KTX, 전라선(익산~여수) 운행 개시 / 73
- 내항선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 93

- 유조선 기름화물 이송계획서 비치 / 96
- 부유식 해상구조물 구조설비기준 개정 / 98
- 공기부양선 구조설비기준 제정 / 100
- 예인선항해검사의 주기 개선(1년 → 5년) / 102
- 선박검사관의 자격기준 완화 / 103
- 선박의 기관개방검사 주기 개선 / 104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 유효기간 연장 / 115
- 임시마약류 지정제도 도입 / 134
- 보육료·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실시 / 146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 160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 161
-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 184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 개정 / 188
-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품질인증제 시행 / 206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사후관리 강화 / 207
-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 신설 / 214
-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완화 / 215

10월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제도 시행 / 37
- 자연공원 내 용도지구 축소 / 38
-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도 시행 / 40
- 환경산업 진흥단지 조성 / 47
- 토양정화공제조합 설립 / 48
- 오염토양의 정화 국가의 역할 확대 / 49
-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 84
- 선박펀드 유형 다양화 / 87
- 선박펀드 추가주식 발행 금지 규정 완화 / 88

- 소형항공운송사업 좌석기준 상향 / 105
- 전국 자연해안관리 목표제 시행 / 124
- 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기간 연장 및 과태료 완화 / 128
- 전문병원 지정제도 시행 / 132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 145
-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 / 147
- 육군 베레모 착용 / 170
-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선 / 178

11월

-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제 도입 등 안전관리제도 개선 / 26
- 인체에 유해한 어린이용품의 안전관리 강화 / 36
-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완화 / 63
- 실적미달업체 영업정지 처분 대상에서 제외 / 64
- 자동차 Total 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 제공 / 75
- CNG 내압용기 안전성 강화 / 76
- 이륜자동차(50cc 미만)에 대한 자동차의무보험 시행 / 76
- 전국 5대권역 내륙물류기지 기능 조정 / 81
- 소음부담금 부과·징수 효율 인상 / 118
- 상법 항공운송편 신설 / 157
- 입영 후 자녀 출산시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제도 실시 / 167
-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제도 도입 / 171
- 거주지 이동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완화 / 176
- 근무태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처벌 강화 / 177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개선 전문예술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확대 / 192

-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선 -선택적 기금제 도입 등 / 194
- 쌀 등급 의무표시제 도입 / 201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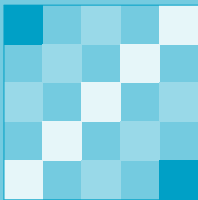
- 취급제한물질 규제 시행 확대 / 45
- 택지구내 단독주택 층수제한 완화, 가구수 규제 폐지 / 60
- 준공검사 조건부 허가 폐지 / 66
- 지하수개발·이용시 공업 등록 결격사유 합리화 / 67
- 중저가 관광호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 69
- 경춘선, 좌석급행열차 운행 개시 / 72
- 해운중개업 등록기준 완화 / 86
- 선박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 91
- 유조선 통항금지해역 통항금지선박 확대 / 92
-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체제 마련 / 94
- 「항공안전관리 시스템(SMS)」 운영 확대 / 109
- 공항시설 준공 전 사용허가 처리기간 단축 / 116
- 항공장애표시 등 설치신고 처리기간 단축 / 119
- 레이저 운영 승인 신청 처리기간 단축 / 121
- 연안관리정보시스템 (Coastal-GIS) 고도화 / 123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대상 확대 및 규제 완화 / 130
-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 / 137
-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도입 / 141

**구체적인 시행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11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의제협의절차 개선 / 52
- 리츠, 펀드 법인에게 민영주택 우선공급 (임대용·5년) / 55
- 연안정비사업 패러다임 전환 / 126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업무처리 규정 신설 / 127
-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136
-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 인사교류 인센티브 강화 등 / 158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세제	3
2. 공정거래 · 금융 · 조달	12
3. 산업(중소기업 · 특히)	25
4. 환경 · 국토	35
5. 보건복지 · 여성	132
6. 고용노동	148
7. 법무 · 행정안전	154
8. 보훈 · 국방 · 병무	164
9. 교육 · 문화	181
10. 농식품 · 산림	201



1. 세 제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제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12)

- 실거래가 과세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부동산 매매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이 제한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양도·취득분부터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세액에서 ‘계약서상의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액’을 차감합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제한>

- ▶ 추진배경 :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실거래가 과세제도 정착
- ▶ 주요내용
 - 허위계약서 유형
 -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 비과세·감면 제한 방법
 - ‘계약서상의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액’을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대상 세액에서 차감
- ▶ 적용시기 : 2011.7.1. 이후 양도·취득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12)

■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하였습니다.

-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으로서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었으나,

- 2011년 6월 3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세법시행령개정추진 (2011. 5. 1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 ▶ 추진배경 : 주택공급활성화
- ▶ 주요내용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중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 소재주택에 대한 2년이상 거주요건을 폐지
- ▶ 시 행 일 : 2011년 6월 3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축사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13)

□ 한·EU FTA 등으로 폐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축사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 축사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와 그 부수 토지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 이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990㎡에 해당하는 면적을 한도로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시기 : 2011년 7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공포·시행 예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기획재정부>보도자료>세법 개정안 국회 재정위 의결 (2011. 6. 23)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 부가가치세 과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
(☎ 02-2150-4231)

■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고 품목간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의료용역과 교육용역이 2011년
7월 1일부터 과세됩니다.

* 의료용역 : 인간의 질병치료에 한해 면세

교육용역 : 공교육 등 비영리교육은 면세, 사교육은 과세

• 의료용역 중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수의사의 동물진료
용역이 과세됩니다.

-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쌍꺼풀
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
흡인술로서 5개 항목의 성형수술만 과세되며

- 수의사의 동물진료 용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가축과
「기르는 어업육성법」상의 수산동물을 제외한 동물진료
용역이 과세됩니다.

• 교육용역 중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상 무도(舞蹈)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과세됩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개별소비세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제도 도입**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2-2150-4251)

■ 과세제도 정비 차원에서 개별소비세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제도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제도 도입에 맞추어 개별소비세 역시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개별소비세를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할 필요 없이 선택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 현행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
 - 개정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 사업자 단위로 신고·납부 가능
- 또한, 개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 역시 사업자 단위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여 졌습니다.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경마·경륜·경정장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2-2150-4251)

■ 경마장·경륜장·경정장의 장외발매소(장외매장) 역시 본 경주장과 마찬가지로 사행행위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는 장외발매소의 입장행위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과세합니다.

- 현행 : 경마·경륜 및 경정장 입장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 과세
경마장(1인 1회 500원), 경륜·경정장(1인 1회 200원)
장외발매소(장외매장)의 경우 비과세
- 개정 : 장외발매소(장외매장) 입장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 과세
개별소비세 세율은 본 경주장과 동일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2-2150-4174)

■ 주택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중산·서민층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12.12.31일 이전에 전용면적 149㎡이하 주택을 신축하거나 신규로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할 경우

- 최초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6년간 해당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 5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시기 : 2011년 7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공포·시행 예정 (시행후 최초로 신축하거나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

☞ 기획재정부>보도자료>세법 개정안 국회 재정위 의결 (2011. 6. 23)

**원재료 등에 대한
원산지 확인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02-2150-4491)

■ 원산지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도 제조 사실 확인서 발급을 통해 이를 공급받은 최종물품 생산자가 부가가치 계산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재료 등에 대한 원산지 확인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비원산지 원재료도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부분은 역내 부가가치에 포함할 수 있으므로 수출용 원재료 국내제조 확인제도를 신설(‘국내제조확인서’ 제정)하여 수출기업제품의 원산지요건을 확대하였습니다.

- 현행 : 원산지 원재료에 한하여 확인서 작성 가능
- 개정 : 비원산지 원재료에 대하여도 국내제조확인서 작성 가능

☞ 기획재정부>뉴스>보도자료

<원재료 등에 대한 원산지 확인범위 확대>

- ▶ 추진배경 : 수출기업제품의 원산지요건 확대
- ▶ 주요내용
 - ① 수출용 원재료 국내제조 확인제도
 - 재료생산자 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 제조확인서(12개월 범위내 국내제조 포괄확인도 가능)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
 - ②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율발급
 -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재료생산자로부터 제공받은 국내제조 확인서(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기초로 FTA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하거나 자율발급 가능
- ▶ 시 행 일 : 2011. 7. 1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필수요건**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30)

■ 11. 7. 1부터 발효되는 한·EU FTA에 따라 EU 지역으로 매 건당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만 특혜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관세청은 품목별·업체별 인증 업무를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세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인증 신청과 관련된 절차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는 아래 전화나 FTA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문의처 [서울세관] 02-510-1566 [부산세관] 051-620-6636
[인천세관] 032-452-3161 [대구세관] 053-664-5212
[광주세관] 062-975-8042

☞ FTA 포털을 통한 종합정보제공 안내

<관세청 FTA 포털(<http://fta.customs.go.kr>)>

- ▶ 주요내용
 - 관세청은 FTA 포털(<http://fta.customs.go.kr>)을 운영하여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및 FTA 협정문 등 일반적인 정보와 함께 수출 및 수입 시에 필요한 FTA 활용 가이드, 원산지 검증 대비 매뉴얼 등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실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공정거래 · 금융 · 조달

**담합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감시총괄과
(☎ 02-2023-4376)

■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보다 촉진하고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최고 10배까지 확대하고, 범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율도 최대 2배까지 상향하는 내용 등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11.5.18.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 >

▶ 추진배경 : 신고포상금 한도액 등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활성화를 촉진

▶ 주요내용

① 지급한도액을 최고 10배까지 상향조정

- 담합(부당공동행위) : 최고 10억 ⇨ 20억
- 부당지원행위: 최고 1억 ⇨ 10억
- 사원판매행위 : 최고 3천만원 ⇨ 1억
- 대규모소매업고시 위반행위 : 최고 3천만원 ⇨ 1억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 최고 2,500만원 ⇨ 1억
- 신문판매고시위반행위 : 최고 1,000만원/3,000만원 ⇨ 1억
- 부당고객유인행위 : 최고 1억(유지)

② 과징금 수준에 따른 지급구간·지급기준율 통일 및 상향(약 2배)
과징금(조치수준)이 부과될 경우 과징금액별 지급구간과 지급기준율을 통일·상향하되 담합과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행위유형보다 높은 지급률을 설정

행위유형	증 전	달라지는 내용
	지급구간 및 지급기준율	지급구간 및 지급기준율
담합 (부당공동행위)	5억원 이하 : 5% 5억원~500억원 : 1% 500억원 초과 : 0.5%	5억원 이하 : 10% 5억원 초과~50억원 이하 : 5% 50억원 초과 : 1%
부당지원행위	5억원 이하 : 4% 5억원~500억원 : 1% 500억원 초과 : 0.5%	

행위유형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지급구간 및 지급기준율		지급구간 및 지급기준율
부당고객 유인행위	10억원 이하 : 3%	10억원~50억원 : 1%	5억원 이하 : 5% 5억원 초과~50억원 이하 : 3% 50억원 초과 : 1%
	50억원 초과 : 0.5%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위반	4억원 이하 : 3%	4억원 초과 : 2%	
사원판매행위	4억원 이하 : 3%	4억원 초과 : 2%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4억원 이하 : 3%	4억원 초과 :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과징금의 5%		

③ 증거수준의 세분화 및 지급률 고정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수준에 따라 현행 3단계(상, 중, 하) → 4단계(최상, 상, 중, 하)로 세분화하고, 증거수준별 범위(구간)로 규정되어 있던 지급률을 고정(특정)시킴으로써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증거수준	지급률	
부당한 공동행위	上	70~100%	最上 : 100% 上 : 80% 中 : 50% 下 : 30%
	中	30~69%	
	下	30% 미만	
그 외 6가지 유형	上	80~100%	
	中	60~79%	
	下	40~59%	

(1. 최상 : 충분한 증거/추가조사가 거의 필요 없는 경우, 2. 상 : 상당한 증거/추가조사 필요, 3. 중 : 부분적인 증거, 4. 하 : 구체성은 결여되나 중요한 단서 제공)

※ 참고로 과징금 수준에 따라 위 ②에서 산정한 지급기본액(부과과징금×지급기준율)에 신고인이 제출한 ③의 증거수준을 반영(곱)하여 최종 지급액을 결정함

▶ 기대효과

이번 개정으로 내부임직원 등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되어 담합행위,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등의 적발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또한 신고활성화로 민간자율감시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기업의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커질 것으로 보여짐

아울러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 유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규정(고시) 시행일 : 2011.5.18

하도급법 적용확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총괄과
(☎ 02-2023-4491)

■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에 대해 원칙적으로 하도급법이 적용 되도록 하여, 불공정하도급행위로 인한 중소하도급업체의 피해구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의 경우 위탁을 하는 중소기업이 위탁을 받는 중소기업보다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수(“매출액 등”)가 2배 이상 커야만 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상당수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 이에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의 “매출액 등”이 크기만 하면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보다 폭넓게 규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공정거래 위원회)보도자료)하도급법

<하도급법 적용대상 확대>

- ▶ 추진배경 :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에 대한 법적용대상을 확대하여 1차 협력사 이후의 중층적 하도급거래단계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
- ▶ 주요내용
 - ①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매출액 등 2배 기준 폐지
 - ② 개정 전 하도급법에 의하면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의 경우 매출액 등 2배 기준이 충족되어야만 법적용이 가능하였으나, 개정 하도급법에 의하면 매출액 등이 크기만 하면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도 법적용이 가능
- ▶ 시행일 : 2011.6.30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총괄과
(☎ 02-2023-4491)

■ 원재료 가격의 급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합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 전 하도급법에 의하면 개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래 중단 가능성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조정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조합도 원사업자에게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공정거래 위원회)보도자료)하도급법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권>

- ▶ 추진배경 :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조합이 개별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 체계를 구축
- ▶ 주요내용
 - ①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조합에게도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부여
 - ② 개정 전 하도급법에 의하면 개별 수급사업자만이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신청이 가능하였으나, 개정 하도급법에 의하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조합도 조합원인 개별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 신청이 가능
 - ③ 다만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
 - * ① (원재료 가격 기준)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15% 이상 상승
 - ② (계약금액 기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변동액이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잔여 납품물량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이상 상승
- ▶ 시행일 : 2011.6.30

**경쟁을 제한하는
M&A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기준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 02-2023-4287)

■ 시장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M&A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하는 시정조치의 유형 및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이 M&A 추진여부를 결정하거나 추진전략을 세울 때 공정위의 시정조치 방안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재 M&A를 추진하는 기업의 경우, 공정위의 심사결과 경쟁제한적 이라고 판단될 경우 어떠한 시정조치를 어느 정도 범위로 부과 받게 될지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 이에 공정위가 부과하는 시정조치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예시하고, 각 시정조치별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예컨대, 경쟁제한적 M&A에 대해서는 자산매각 등 시장 구조를 변경하는 조치(구조조치)를 우선고려하고, 당사회사의 영업방식을 규제하는 조치(행태조치)는 구조조치가 불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당사회사가 구조조치를 부과 받을 지 행태조치를 부과받을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해졌습니다.

<경쟁제한적 M&A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기준 제정 >

- ▶ 추진배경 : 경쟁제한적 M&A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 명확성을 제고하고, 시정조치를 부과받는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 주요내용
 - ① 효과성 원칙, 비례원칙,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원칙 등 시정조치 부과 일반원칙 제시
 - ② 시정조치를 크게 구조적조치와 행태적조치로 구분하여 각각의 세부유형 및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
 - ③ 경쟁제한적 M&A에 대해서는 구조적조치의 부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행태적조치는 구조적조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부과할 원칙으로 규정
- ▶ 시행일 : 2011.6.22

**구매안전서비스
적용대상 금액 확대
및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링크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 02-2023-4361)

■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결제대금예치제도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 적용대상 금액이 현행 10만원 →5만원이상 거래로 확대되고, 인터넷쇼핑몰에 사업자정보 공개 페이지 링크가 의무화되어,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을 받지 못하고 대금을 떼이는 사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호해주는 장치로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있습니다.

• 지금까지 전자상거래시 소비자는 1회 결제금액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을 구입할 경우에만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였지만,

- 2011.7.29.부터는 5만원 이상 구입에 대해서도 구매안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또한, 2011.8.11.부터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는 쇼핑몰 하단에 신원정보를 표시할 때 공정위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도 함께 링크하여, 소비자가 신원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이번 개정에 따라 결제안전 및 사업자 신원확인이 강화되어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뉴스)보도/해명>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개선**

금융위원회 은행과
(☎ 02-2156-9822)

- 9.30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피해금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급받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노인, 주부 등 서민층의 피해구제가 어려웠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소송 없이 약 3개월 안에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지급정지된 피해금도 9.30일 특별법이 시행되면 특별법 절차에 따라 소송없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에 관한 절차 개선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 개선>

- ▶ 추진배경 : 신속하고 간편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마련
- ▶ 주요내용
 - ① 금융회사는 피해자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입금내역 확인 후 지급 정지 조치
 - ② 금감원의 2개월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후 사기이용계좌의 채권 소멸
 - ③ 피해금액에 비례하여 환급금액을 산정·지급
- ▶ 시행일 : 2011.9.30.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업체 진입요건 강화**

조달청 쇼핑물기획과
(☎ 070-4056-7274)

■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등 환경·보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달물품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을 위한 자격 심사를 강화합니다.

- 현재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통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는 최소한의 기준(납품실적 3건 이상, 신용등급 B- 이상)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엄격한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 부실업체에 의한 저품질 제품의 납품 우려가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안전·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일단 시공된 후 부실이 발견될 경우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기술수준, 만족도, 신인도 등도 포함하여 업체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전자격심사제”를 도입하여 이를 통과해야만 종합쇼핑몰에 등록 가능합니다.

- 새로 도입되는 금번제도는 중소기업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1단계로 7개 품명에 대하여 '11년 7월 이후 공고분부터 우선 적용하고, 2단계로 9개 품명에 대하여 '12년 1월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1단계('11.7.1 이후 공고분) :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 태양광발전장치, 공기살균기, 공기순환기, 합성목재(이상 7개 품명)

* 2단계('12.1.1 이후 공고분) : 조경석, 교량난간, 도막형바닥재, 가드레일, 우레탄바닥재, 온수제조기, 정수기, 낙석방지책, 차선규제봉에 적용(이상 9개 품명)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업체 진입요건 강화>

- ▶ 추진배경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부실 업체·저품질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엄밀한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물품에 대하여 업체의 계약이행능력을 사전 심사하여 일정 자격 이상을 갖춘 업체와만 계약체결
- ▶ 주요내용
 - ① 기존의 납품실적, 경영상태 외에 업체의 기술수준, 만족도,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② 종합심사결과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가능
 - ③ 대상 물품
 - 1단계('11.7.1 이후 공고분) :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미끄럼방지 바닥포장재, 태양광발전장치, 공기살균기, 공기순환기, 합성목재(7개)
 - 2단계('12.1.1 이후 공고분) : 조경석, 교량난간, 도막형바닥재, 가드레일, 우레탄바닥재, 온수제조기, 정수기, 낙석방지책, 차선 규제봉(9개)
- ▶ 시행일 : 2011.7.1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표준계약서
사용업체 우대**

조달청 기술심사팀
(☎ 070-4056-7353)

-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시 신청자가 표준계약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인도 심사분야에서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 공정위에서 공정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작성·보급하여 그 사용을 권장
 - * 표준계약서 대상 :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표준하도급계약은 당해공사 계약금액의 30% 이상에 대하여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점, 40%이상에 대하여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인도 분야에서 2점 가점 부여
-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은 토목공사 계약금액의 1% 이상에 대하여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점의 신인도 분야에서 가점 부여
- 표준계약서 사용업체 우대로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받았으나, 이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향후 3년 동안 입찰에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에 따라 2배의 감점 부여
- '11. 6. 1.부터 입찰공고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에 적용합니다.

☞ 시설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표준계약서 사용업체 우대>

▶ 추진배경 : 원·하수급자간 공정거래질서를 정착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평가에서 신인도 평가분야에 가점 부여

▶ 주요내용

- 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계획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신청시 제출
- ② 표준계약 사용계획서 제출시 신인도 평가분야에서 최대 3점 가점 부여
 -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 +2점
 - 당해 계약에서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 +1점
- ③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시에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향후 3년 내에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받은 가점의 2배 범위 내에서 감점 조치

▶ 시행일 : 2011. 6. 1.

**조달업체 스스로
품질을 보증하는
「자가품질보증제도」
시행**

조달청 자체품질관리과
(☎ 070-4056-8122)

■ 조달물자에 대한 품질확보는 납품검사를 통한 완제품 검사 위주의 품질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자가품질보증제도」를 개발·시행하여 조달업체의 자발적인 품질개선 노력을 유도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조달업체는 자체 품질관리수준의 차등없이 납품검사를 동등한 기준에 따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품질이 보증되는 우수물품에 대하여 검사시간 및 비용 등이 낭비되어 왔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업체 스스로 품질을 보증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이 일정 기준에 따라 자체 품질관리시스템을 심사하여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자가품질보증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동 제도의 시행으로 조달업무의 신속성을 증대시키고, 검사 면제에 따른 비용 및 인력 절감을 통해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의 편익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조달업체는 시범운영기간('11. 5. 6 ~ '12. 9. 30)동안 조달청 홈페이지에 고시·공고된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규정 및 심사기준 등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자가품질보증제도 관련 보도자료(2011. 5.3)

☞ 제1차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 심사기준(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 제2011-6호)

<자기품질보증제도 시행>

- ▶ 추진배경 : 납품검사 위주의 품질관리에서 벗어나 조달업체가 스스로 지속적인 품질 개선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자 「자기품질보증제도」를 시행
- ▶ 주요내용
 - ① 조달청에서 지정한 심사기관의 심사원들이 생산업체의 품질경영 시스템, 생산공정, 성과지표 등을 품명별 심사기준에 따라 현장 심사를 실시
 - ② 선정 절차
선정(품명)기준 고시 → 신청서 제출/접수 → 신청서(자격) 심사 → 현장심사 → 선정/등급 결정(심의위원회) → 선정업체 유지관리 → 정기심사(기간연장)
 - ③ 선정업체에 대하여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 면제
* 유효기간 : S등급(750점 이상)-3년, A등급(600점 이상)-2년 / 1000점 만점
- ▶ 시행일 : 2011. 5. 6

3. 산업(중소기업·특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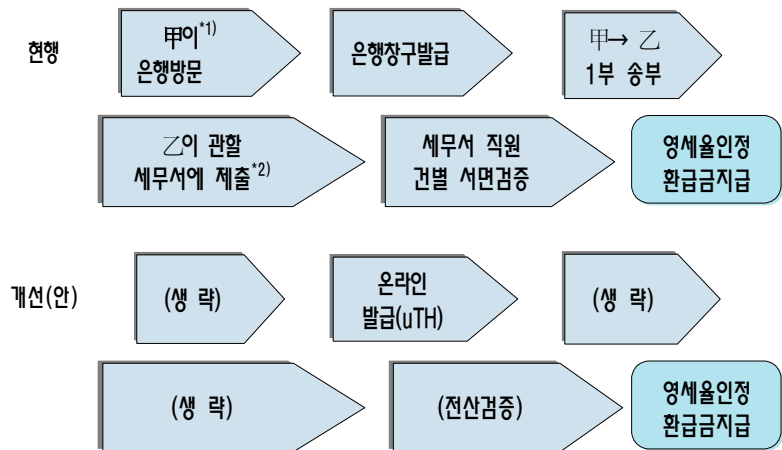
**구매확인서
on-line발급
2011.7.1일부터
전면시행**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
(☎ 02-2110-4833)

■ 2011년 7월 1일부터 이용자가 거래은행 방문 없이 on-line을 통하여 구매확인서를 작성·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은행창구를 통한 구매확인서 발급(off-line 발급)은 폐지되었습니다.

- ※ 구매확인서 온라인 발급은 보다 빠르고 편리함
 - 거래은행 방문이 필요 없으며 발급신청 근거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 발급비용도 대폭 인하됩니다(발급수수료 : 1만원→) 6,000~8,000원)
 - 행정부담이 간소화 됩니다.(거래업체통보, 국세청 신고 on-line화)

- 지식경제부는 on-line으로 발급된 구매확인서 발급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구매확인서 사본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및 개선(안)의 구매확인서 처리과정 비교〉



* 1) 甲 : 수출기업 * 2) 乙 : 수출용 원재료 등 공급자

■ uTradeHub 포털 또는 각 사업자가 발급기관과 직접 연계한 내부전산시스템(ERP) 등을 통해 on-line으로 발급받으시면 되고,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신청 및 발급지원서비스 이용의 자세한 내용은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매뉴얼(uTradeHub 포털(www.utradehub.or.kr)내 게재)”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제 도입 등
안전관리제도 개선**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 02-2110-5446)

■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확보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대한 등록제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을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동법은 '11.11.25 시행되며,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에 있어서의 안전확보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 수입가스용품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액화석유가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의 품질기준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품질기준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 가스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입은 생명,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와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며,
- 액화석유가스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적정 가격을 도모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에게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 >

- ▶ 추진배경 : 소비자보호, 가스사고예방 및 유통질서 확립
- ▶ 주요내용
 - ①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제 도입
 - ②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에 대한 등록제 도입
 - ③ 지식경제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의 품질기준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④ 가스용품 수입자와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 함
 - ⑤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제도 도입
- ▶ 시행일 : '11. 11.25

**국가통합인증마크
(KC)만 확인하세요!**

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 02-509-7291)

- 하나의 제품에 붙어있는 다수의 인증마크는 제품 구매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인증마크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표준원에서는 5개 부처에서 사용하던 13개 법정 의무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KC)로 통합하였습니다.
 - 법정 의무인증마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출시 전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 권한있는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마크입니다.
 - 개별 법령에 의해 받은 인증은 자연 승계되며, '11.6.30일까지는 기존의 마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11.7.1일부터 KC마크만 표시 가능합니다.
 - KC마크는 장난감, 통신기기 등 560여개 품목에 표시되며, '11.7.1일부터는 KC마크 하나만 확인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국가통합인증마크 '11.7.1일부터 전면 시행

<13개 법정무인증마크를 KC마크로 통합>

▶ 추진배경 : 다양한 인증마크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해소하고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① 5개 부처에서 사용하는 13개 법정무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KC)로 통합
- ② '11.6.30일까지는 기존마크 사용이 가능하나 '11.7.1일 부터는 KC마크만 표시 가능

▶ 시행일 : 2011.7.1

**법적규제를
특정지역에 한해
완화하는 지역특구
규제특례 확대**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 02-2110-4973)

- 신규 규제완화 특례를 확대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안이 공포(5.24일)되어 8.25일부터 시행됩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5개의 신규 규제특례와 2개의 특례 확대로써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규제특례>

- 특구로 지정할 면적 중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면적이 일정 면적(1km)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 특화사업을 위해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분할 최소면적을 완화함
- 특화사업과 관련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에 필요한 부지면적을 2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을 인·허가 의제에 추가함

<규제특례 확대>

- 선특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기존 제도를 보완, 2년 이내에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1년을 연장하고
- 민간사업자의 토지 등의 수용·사용 요건(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이상 토지 소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3이상 동의) 중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2/3이상에서 1/2이상으로 완화함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주요 개정 내용 >

- ▶ 추진배경 :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제특례 대상을 확대
- ▶ 주요내용
 - ① 특구지정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건 완화
 - ② 산업단지내 산업용지 분할 최소면적 완화
 - ③ 수산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시 우선심사 특례
 - ④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 완화
 - ⑤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승인 의제 신설
 - ⑥ 선특구지정 후토지이용계획 승인 제도 보완
 - ⑦ 토지등의 수용·사용 요건 완화
- ▶ 시행일 : '11. 8.25

**통관단계에서
보호되는 지재권의
종류 및 대상물품
확대**

관세청 특수통관과
(☎ 042-481-7638)

■ 관세청은 한·EU FTA 발효('11.7.1)에 맞춰 관세법(제235조) 및 동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반영하였습니다.

- 지재권 보호대상 권리를 상표권·저작권 뿐만 아니라, 품종 보호권, 지리적표시권(지리적표시 포함)까지 확대하고, 대상 물품을 수출입물품에서 환적 또는 복합환적·보세구역 반입·보세운송·일시양륙 물품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지재권 침해우려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조치권한도 통관보류 뿐만 아니라 유치까지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 관세청에서는 지재권 침해물품의 국내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 통관단계에서의 국경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창의적인 기업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 통관단계에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 종류 확대

<통관단계에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 종류 확대>

- ▶ 추진배경 :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및 동법시행령 제237조의 개정에 따른 관련 행정규칙(고시)를 한·EU FTA 발효 시점에 맞춰 개정
- ▶ 주요내용
 - ①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을 지식재산권 보호대상 확대
 - ② 보호대상물품 또한 기존 수출입물품에서 환적 또는 복합환적·보세구역반입·보세운송·일시양륙 물품까지 확대
- ▶ 시행일 : 2011. 7. 1.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지원대상
확대**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 042-481-4481)

■ 석사학위 취득만 지원하던 「중소기업형 계약학과」를 확대하여 학사·전문학사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 기업 수요를 반영한 학위과정 운영을 위해 대학과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학과

- 동 사업은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장기 재직 유도 및 선취업 후진학을 위해 확대합니다.

- 하반기부터는 전문학사와 학사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지원대상을 학사·전문학사까지 확대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의 학위과정을 확대하여 장기재직 유도 및 특성화고 졸업 이후 선취업 후진학 체계 실현 (고졸→전문학사→학사→석사)

▶ 주요내용

- ①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지침을 제정('11.4.6)하여 학사·전문학사로 지원대상을 확대
- ② 참여대학(교) 학칙개정 등을 통한 학과 개설

▶ 시행일 : 2011.9.1

**한·EU FTA
협정에 의한 EU의
지리적 표시 보호**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 042-481-5266)

■ 한·EU FTA 협정에 따라 협정 부속서에 기재된 지리적 표시가 양국에서 보호 받으며,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를 타인이 번역·음역하여 사용하거나, “종류”, “유형”, “양식”이란 표현을 병기하더라도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한·EU FTA협정상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 출원은 등록될 수 없게 됩니다.
- 한편, 거절되는 상품의 범위는 동일상품 및 동일상품으로 인식되는 상품까지 포함됩니다.

■ 또한, 한·EU FTA 협정에 따라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상표권 침해물 제작에 사용된 ‘재료’도 몰수 할 수 있도록 상표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한·EU FTA 이행을 위한 상표법 개정>

- ▶ 추진배경 : 한·EU FTA 합의내용 이행
- ▶ 주요내용
 - ① (상표) 상표법에 등록되지 않았으나, FTA에 따라 보호의무가 발생한 지리적표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거절 근거 마련
 - ② (상품) 거절되는 지정상품의 범위는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까지 확대
 - ③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의 형평성) 보호의무가 발생한 EU의 지리적 표시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의 형평성을 위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지정상품의 보호 범위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까지 확대
- ▶ 시행일 : 2011.7.1

4. 환경·국토

**녹색생활 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린카드
전국 출시**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 02-2110-7930)

■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포인트 지급 및 공공기관 할인서비스 등이 탑재된 그린카드가 발급됩니다.

- 현재 탄소포인트제 가입자는 전기, 수도, 가스 등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상품권, 쓰레기봉투, 교통카드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해당 물품 수령을 위해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는 등 가입자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에너지 감축실적에 따라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한편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국민이 더욱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녹색제품 구매 시 추가 포인트도 지급하게 됩니다.
 - ※ 녹색제품 인증 대상 : 정부공인 환경마크, 탄소성적표시 제품
- 7. 1.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멤버십 카드 등 다양한 형태의 그린카드를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그린카드 전용 홈페이지(www.greencard.or.kr)

<녹색생활 포인트 지급 그린카드 출시>

- ▶ 추진배경 : 녹색소비,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 ▶ 주요내용
 - ① 가정에서 전기·수도·가스 사용량 감축시 제공하는 탄소포인트 지급액 상향 조정
 - ② 녹색제품 구매시 제품가액의 1~2% 포인트 제공
 - ※ 대상 제품명 및 참여 유통사 등은 홈페이지 참조
 - ③ 국립자연휴양림 무료입장 등 공공부문 혜택 제공
- ▶ 시행일 : 2011.7.1

**인체에 유해한
어린이용품의
안전관리 강화**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02-2110-6966)

■ 환경보건법을 개정(11.5.19)하여 인체에 유해한 어린이용품에 대한 회수제도를 새롭게 시행하는 등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 어린이완구내 프탈레이트(플라스틱 가소제) 검출* 등 어린이 건강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환경보건법은 판매중지 권고 등 유해 어린이용품의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어린이 장난감에서 프탈레이트 노출 위험(’11.4.13, 환경부 보도자료)”

- 오는 11월 20일 이후에는 어린이용품의 제조·수입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용품내 환경유해인자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판매중지 또는 제품회수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환경보건법 개정 내용

<위해성기준 초과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강화>

▶ 추진배경 : 위해성 기준 초과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하여 유해 어린이용품으로부터 어린이 건강 보호

▶ 주요내용

- ① 위해성기준 초과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고시)
- ② 고시 위반자에게 어린이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제품 회수를 명령
- ③ 고시 위반시 징역(6개월 이하) 또는 벌금(500만원 이하), 행정 명령 위반시 징역(3년 이하) 또는 벌금(3천만원 이하)

▶ 시행일 : 2011.11.20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제도
시행**

환경부 환경산업팀
(☎ 02-2110-7757)

- 기술력이 우수한 환경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하는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 세계 환경시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환경산업은 아직 전문업체도 적고, 해외진출 실적도 저조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오는 10. 29.부터 사업실적 및 기술력이 우수한 환경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심사를 거쳐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 받고 해외시장 진출 및 재정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제도 시행>

- ▶ 추진배경 : 사업실적·기술력 등에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환경기업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제공
- ▶ 주요내용
 - ① 기후대기, 상·하수도 등 매체별 산업의 사업실적 우수성, 기술 개발 능력 우수성, 제품 및 기술의 시장성, 고용창출 가능성, 환경기술 수준 향상성 등이 우수한 기업을 심사하여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
 - ② 금융, 기술사업화, 해외진출, 교육·마케팅·컨설팅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으로 글로벌 TOP 기업 발굴
- ▶ 시행일 : 2011.10.29

**자연공원 내
용도지구 축소**

환경부 자연자원과
(☎ 02-2110-6744)

■ 생태계 보전 위주로 지정·관리되던 자연공원 용도지구를 자연공원 내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포함한 용도지구로 지정·관리하고자 공원밀집마을지구와 공원집단시설지구를 삭제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자연공원용도지구를 개편하였습니다.

- 고밀도 거주지역으로서 공원의 주변환경과 조화되지 못하고 있던 공원밀집마을지구와 공원집단시설지구를 공원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11.1월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완료하고 자연공원법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재 보유사찰 및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일정구역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여 사찰의 수행환경 개선 및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u>현</u> <u>행</u>	<u>개</u> <u>편</u>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	

<자연공원 내 5개 용도지구를 4개 용도지구로 개편 >

▶ 추진배경 : 자연공원내 용도지구 중 기 개발되어 공원구역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는 공원밀집마을지구와 공원집단시설지구를 삭제하고 자연공원 내 대표적 문화유산자원의 발전을 위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신설

▶ 주요내용

- ① 공원밀집마을지구와 공원집단시설지구를 용도지구에서 삭제
- ②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및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특별히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지역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
- ③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신축·증축·개축 및 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④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문화재 사찰 또는 전통사찰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11.10.6

**분뇨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도 시행**

환경부 생활하수과
(☎ 02-2110-6891)

■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으로 영업물량이 감소하여 폐업하는 분뇨수집·운반업자를 대상으로 폐업지원금 지원 및 대체 사무를 주선하는 “분뇨수집·운반업자 폐업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 지자체 장의 고유 업무인 분뇨의 수집·운반업무를 대행하던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정부의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 ※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정화조가 불필요하게 됨
- 오는 10. 6일부터는 분뇨수집·운반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조례에 따라 지원금 및 용자 알선, 대체사무 주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수도법

< 분뇨수집·운반업자 폐업지원 제도 시행 >

- ▶ 추진배경 :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 및 대체 사업 주선으로 정책 변화로 발생하는 피해 구제 필요
- ▶ 주요내용
 - ①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으로 영업물량이 줄어 폐업하는 분뇨수집·운반업자를 대상으로 폐업지원금 지급·용자알선 및 대체사업 주선
 - ②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용자알선은 지자체 조례로 결정
- ▶ 시행일 : 2011.10.6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시행**

환경부 수도정책과
(☎ 02-2110-7662)

- 금년 5월 26일부터는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환경부는 안전한 수도물을 공급하고 위생안전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 5월 25일 개정된 수도법(제14조)이 금년 5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 하였습니다.
 - 수도관, 밸브, 수도꼭지, 유량계, 펌프 등을 인증대상으로 정하고 인증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이미 생산된 물량을 고려하여 제품 종류별로 인증시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 주철관류 '11.5.26, 기타 금속관류 및 합성수지관류 '11.11.26, 밸브류·펌프류·수도꼭지류·유량계류 및 수도미터류 '12.5.26, 도료 및 기타 수도용 제품 '13.1.26
 - 따라서 앞으로는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게 되면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의 시행으로 수도물의 품질개선과 음용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정보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운영하는 '인증정보망(<http://www.kctap.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시행>

- ▶ 추진배경 :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유해물질 용출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한 제품만 유통하도록 함으로써 수도물의 품질개선에 기여
- ▶ 주요내용
 - ① 인증대상 : 수도관, 밸브, 수도꼭지, 유량계, 펌프 등
 - ② 인증시기 :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제품 종류별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 ※ 주철관류 '11.5.26, 기타 금속관류 및 합성수지관류 '11.11.26, 밸브류·펌프류·수도꼭지류·유량계류 및 수도미터류 '12.5.26, 도로 및 기타 수도용 제품 '13.1.26
 - ③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는 경우 처벌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 시행일 : 2011.5.26

**사업장폐기물
배출시 전자인계서
작성 의무대상 확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02-2110-6940)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중 신고 대상자는 모든 폐기물에 대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현재 동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종류나 발생량에 따라 배출자 신고 대상과 전자인계서 작성대상이 서로 달라 폐기물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배출자 신고대상 폐기물은 모두 전자인계서 작성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 오는 7. 22.부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은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 올바로시스템에서 전자인계서를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 전자인계서 작성 대상 폐기물과 배출자 신고대상 폐기물을 일원화

<사업장폐기물 배출시 전자인계서 작성 의무대상 확대>

- ▶ 추진배경 : 동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종류나 발생량에 따라 배출자신고 대상과 인계서 작성대상이 서로 달라 폐기물 관리에 혼선을 초래함
- ▶ 주요내용
 - ①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을 배출자 신고 대상 폐기물과 동일하게 규정
 - ② 배출자 신고의무가 없음(1일 100kg미만)에도 인계서를 작성해야 했던 소량배출자(오니-33kg/일, 일반폐기물-17kg/일 미만)의 부담 완화
 - ③ 신고 의무 대상 배출자가 배출하는 모든 폐기물이 전자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국가 폐기물 발생 통계’가 실시간으로 생성
 - ④ 사업장의 입력대상 폐기물 여부에 대한 논란 제거 및 폐기물 관리·감독 기관의 업무 효율 증진
- ▶ 시행일 : 2011.7.2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실시**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02-2110-6929)

■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할 경우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1회/년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지자체와 수의 계약으로 계속 업무를 대행해오고 있으나, 적절한 수집·운반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집·운반 대행의 능률성, 경제성을 도모,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 환경미화원의 근로 조건 개선 등을 유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이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는 7. 24.부터 시·군·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대해 위탁대행 계약을 위해서는 사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여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실시>

▶ 추진배경 : 수십년간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청소행정 서비스 질 제고

▶ 주요내용

- ① 평가기준과 항목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여 평가 실시
- ② 대행실적 평가는 외부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평가, 평가결과는 공개
- ③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포상 및 우대지원 등 조치하고,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여 제한, 영업정지 등 적절한 조치
- ④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및 적절한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등
- ⑤ 평가는 1회/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

▶ 시행일 : 2011.7.24

취급제한물질 규제 시행 확대

환경부 화학물질과
(☎ 02-2110-7962)

■ 현재 10개 화학물질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취급제한 규제가 2011년 12월 1일부터 12가지 물질에 대해 시행됩니다.

- 새로이 규제가 시행되는 물질은 납, 카드뮴, 크로뮴(6+) 화합물('08.5.22일 지정·고시)이며, 유역·지방 환경청에서 이 물질들에 대한 영업허가, 수입허가, 또는 수출승인을 받아 취급하셔야 합니다.

<규제 시행 취급제한물질 목록>

연번	종 전	변 경 후
1	말라카이트 그린 염류	말라카이트 그린 염류
2	메틸브로마이드	메틸브로마이드
3	사염화탄소	사염화탄소
4	수산화트리알킬주석과 그 염류 및 트리부틸주석화합물	수산화트리알킬주석과 그 염류 및 트리부틸주석화합물
5	폼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
6	노닐페놀	노닐페놀
7	백석면	백석면
8	트리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납(13세 이하 어린이가 장식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된 장신구의 용도)	납(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용도 및 금속 장신구 용도)
11	-	카드뮴(금속 장신구 용도)
12	-	크로뮴(6+) 화합물 (몰탱크 방청도료 용도)

☞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취급제한물질 규제 시행 확대>

- ▶ 추진배경 : 현재 10개 화학물질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취급제한 규제가 2011.12.1일부터 12가지 물질에 대해 시행
- ▶ 주요내용
 - ① 12개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제한 규제 시행
 - '11.12.1일부터 납, 카드뮴, 크로뮴(6+) 화합물에 대한 새로운 규제 시행
 - ※ 납의 경우 취급제한 범위 확대
- ▶ 시행일 : 2011. 12. 1

환경산업 진흥단지 조성

환경부 환경산업팀
(☎ 02-2110-7757)

- 환경산업체간 협업 및 공동 기술개발, Test-Bed 지원 등 환경산업 육성 전과정 지원을 위해 환경산업체 및 지원시설을 집적화 하는 ‘환경산업 진흥단지’가 조성됩니다.
- 단지조성은 국내 환경산업의 고질적인 어려움인 영세성 및 기술경쟁력 부족에 대한 체질개선을 위한 것으로, 개발된 환경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검증하여 사업화 함으로써, 환경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 오는 10. 29.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산업체, 공공기관, 관련학회간 상호연계를 통하여 환경산업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산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지정·개발 절차에 따라 환경산업 진흥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산업 진흥단지 조성 시행>

- ▶ 추진배경 : 업체간 협업 및 공동 기술개발, Test-Bed 지원 등을 통해 환경산업의 영세성 및 기술경쟁력 부족에 대한 체질개선 도모 필요
- ▶ 주요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산업체, 공공기관, 환경관련 학계간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환경산업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환경산업체를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진흥단지를 조성할 수 있음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 시행일 : 2011.10.29

**토양정화공제조합
설립**
 환경부 토양지해수과
 (☎ 02-2110-6772)

■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여 적시에 정화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11.4.5)하여 토양정화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및 기술개발 등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오염토양 발생 시 이의 정화를 위한 재원 등이 부족하여 적시에 정화되지 못하는 등 오염확대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오염토양 발생 시 이의 정화를 보증하고, 토양정화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추진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오는 10. 6.부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 토양정화업체는 토양정화공제사업, 토양오염 방지 및 정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토양정화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토양정화공제조합 설립>

- ▶ 추진배경 : 오염토양의 적시 처리를 위한 재원 마련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한 토양정화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
- ▶ 주요내용
 - ①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토양정화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
 - ② 토양정화공제조합에서 공제조합원의 분담금을 모아 토양정화 및 이를 위한 기술개발등의 사업 가능
 - ③ 오염토양의 적시처리 및 토양오염정화기술개발 확대
- ▶ 시행일 : 2011.10.6

**오염토양의 정화
국가의 역할 확대**

환경부 토양지해수과
(☎ 02-2110-6772)

-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11.4.5)하여 국가에 의한 오염토양, 오염원인자가 없거나 정화가 곤란한 경우 국가에서 정화를 추진하고, 국유재산 등에 대한 오염토양 정화시에 필요한 토지를 사용·수용하도록 추가하여 오염토양의 조기정화를 추진 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국가에 의한 오염토양, 오염원인자가 없거나 정화가 곤란한 경우 등 국가에서 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이의 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지의 수용 등이 가능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오는 10. 6.부터 국가에 의한 토양정화 및 토양정화를 위한 토지 등의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오염토양의 정화 국가의 역할 확대>

- ▶ 추진배경 : 국가에 의한 오염토양, 오염원인자가 없거나 정화가 곤란한 경우 등 국가에서 정화 추진하도록 개정
- ▶ 주요내용
 - ① 국가에 의한 오염토양, 오염원인자가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 국가가 정화할 수 있도록 확대
 - ② 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시행일 : 2011.10.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환경부 생활하수과
(☎ 02-2110-6882)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0.9.8, 공포)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6월 9일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그냥 버렸던 빗물과 하·폐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 물 재이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10년 마다 물 재이용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에서 물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 의무대상을 늘려 물의 재이용 확대를 촉진 함
 - ※ 빗물이용시설 : (종전 수도법)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 (확대) 공공청사
 - ※ 중수도 : (종전 하수도법) 숙박업, 공장 등 개별시설물 → (확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관광단지, 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업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을 새로 도입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재처리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에게 설계·시공하도록 함.
- 재처리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이용 활성화 기반을 조성함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추진배경 : 그동안 그냥 버렸던 빗물과 하·폐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
- ▶ 주요내용
 - ① 환경부장관은 10년 마다 물 재이용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②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 의무대상을 늘려 물의 재이용 확대 촉진
- ▶ 시행일 : 2011.6.9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의제협의절차 개선**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 02-2110-8256)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택법 제17조에 따른 인허가 의제는 관계 행정기관간의 협의절차에 30일이 소요되고 있고, 관계 행정기관 협의시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곤란하였습니다.

- 2011년 하반기중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법 제17조에 따른 인허가 의제는 관계 행정기관간의 협의절차를 20일로 단축되고, 관계 행정기관 협의시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의제협의절차 개선>

- ▶ 추진배경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택법 제17조에 따른 인허가 의제는 관계행정기관간의 협의절차 기간 단축 및 협의시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필요
- ▶ 주요내용
 - ①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은 30일에서 20일로 단축
 - ②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
- ▶ 시행일 : 2011년 하반기(예정)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 02-2110-8256)

■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4호)

-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1년 하반기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를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대형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질이 좋아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다만, 1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단지 규모에 따른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일부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설치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 ▶ 추진배경 :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
- ▶ 주요내용
 - ①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 확대(150세대 미만 → 300세대 미만)
- ▶ 시행일 : 2011. 7. 1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실구획
허용**

국도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 02-2110-8256)

■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욕실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
으로만 구성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3조제1항)

- 원룸형 주택의 효율적인 공간활용 및 사생활 보호, 2~3인
가구수요에의 대응 등을 위하여, 실구획을 통해 침실 등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30㎡ 이상의 원룸형 주택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도심내 2~3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다양한
개인선호에 대응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가능해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 복합허용 확대>

- ▶ 추진배경 :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실구획 허용
- ▶ 주요내용 : 도시형 생활주택의 실구획 허용
- ▶ 시행일 : 2011. 7. 1

**리츠, 펀드
법인에게 민영주택
우선공급
(임대용·5년)**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2-2110-8260)

- 현재까지 법인의 경우 미분양된 주택만을 매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리츠·펀드 법인은 신규분양되는 민영주택을 5년 임대하는 조건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공급대상 법인은 ①「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펀드)로 한정하며
 - 공급을 받은 법인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임대 의무가 부여되며, 「임대주택법」 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해당 법인에게는 임대용으로 우선공급되는 민영주택의 특정 층 또는 동 전체를 일반 공급받는 자보다 우선하여 공급 가능하며,
 - 공급물량, 공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사업주체가 법인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한 경우에는 일반청약자가 알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시에는 이러한 내용을 게시토록 하였습니다.

<리츠, 펀드 등 법인에게 민영주택 우선공급 허용>

- ▶ 추진배경 : “5.1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리츠, 펀드와 같은 법인에게 신규건설 민영주택을 임대용으로 우선 공급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리츠 및 펀드와 같은 법인*에게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법 및 공급량 범위에서 신규 건설 민영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우선 공급
 - 리츠 및 펀드가 매입한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주택 공급을 허용
 -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REIT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펀드)
- ▶ 시행일 : 2011년 하반기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참여 허용**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 02-2110-8306)

-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주택건설등 사업자도 공공시행자와 함께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범위가 확대·시행됩니다.
 -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LH등 공공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공동시행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50%미만으로 제한하여 공영개발방식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 토지수용권은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는 부여하지 않고, 공공시행자와 공동출자법인에게 부여하였습니다.
 - 그 밖에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선정방법, 협약의 내용,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 상한등 공동사업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오는 8월말까지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계획입니다.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참여 허용>

- ▶ 추진배경 :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이 경쟁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참여 민간기업의 창의 등을 통해 택지조성원가를 낮추고 궁극적으로 공동주택가격을 인하 시키기 위함
- ▶ 주요내용
 - ①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범위에 '주택건설등 사업자로서 공공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시행하는 자'와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공동출자법인)'을 포함
 - ②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50%미만으로 제한
 - ③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방법, 협약의 내용 및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 시행일 : 2011.8.31

**종합적인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 02-2110-8302)

- 택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와 부동산정책 수립 지원에 따른 택지정보 DB 구축, 택지개발관련 유관기관 및 부처간 정보공유 등을 위한 종합적인 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택지개발촉진법 '11.5.30개정)
- 앞으로 국민 등에게 택지개발사업의 일반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한 관련 사업의 DB를 구축하여 현재 부동산시장에 대응하는 택지공급정책수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적인 택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 국민에게 관련 정보 제공>

- ▶ 추진배경 : 그동안 택지개발관련 정보가 권역별, 시·도별 총량수준으로 관리되었으며, 민간택지는 파악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어, 모든 택지개발사업을 DB화 하는 등의 방법으로 택지지정부터 준공·입주까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되, 합리적 택지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 ▶ 주요내용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 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택지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 ① 택지관련 정보 DB구축
 - ② 국민에게 택지개발사업의 일반정보 제공
 - ③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는 택지공급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과학적인 택지수급관리 등
- ▶ 시행일 : 2011.8.31

**택지개발사업지구
대토보상자들에
대한 투자기회 확대**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 02-2110-8306)

■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보상대상자들은 굳이 현금보상을 받지 않아도 택지로 보상받아 대토개발리츠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수의계약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범위가 대토보상자에서 대토개발리츠까지 확대·시행되기 때문입니다.

• 대토개발리츠는 대토보상자로부터 모집한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 범위에서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대토보상자 : 보상대상자 중 현금이나 채권대신 조성된 택지로 보상을 받은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 대토개발리츠 :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수익을 배당하는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으로 공공택지 공급>

▶ 추진배경 : 현금위주의 토지보상에 따른 부작용(지가상승 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추진하여 왔던 제도적 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대토개발리츠가 실질적으로 택지를 분양받아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① 대토보상자와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 ②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의 범위를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정함

▶ 시행일 : 2011.7.31

**택지지구내
단독주택 층수제한
완화, 가구수 규제
폐지**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 02-2110-8305)

■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의 가구수 규제 폐지, 85㎡이하 공동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 상향 조정”에 대한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을 '11.5.31일자로 개정·시행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지구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효력이 발생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더 필요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일반 택지지구에서는 10년(신도시는 2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형 주택이 추가 공급되고 단독주택의 가구 수가 확대되어 주택 전·월세난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택지지구내 단독주택의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가구수
규제를 폐지>**

▶ 추진배경 : '11.5.1일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임

▶ 주요내용

- ①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 완화 및 가구수 규제 폐지
 - 신규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층수 제한 완화(블록형 단독주택 2→3층, 1가구→폐지 / 점포겸용 단독주택 3→4층, 3가구→폐지)
 - 기 준공지구(신도시 포함)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도시기반시설 허용 용량 범위내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건축허용
- ② 신규 택지개발지구내 85㎡ 이하 공동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 상향조정 (60→70% 이상)

▶ 시행일 : 2011.12월 예정

지상경계점 등록 · 관리 제도 시행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 031-436-8973)

■ 지적측량으로 설치된 지상경계점이 훼손·망실될 경우 토지 소유자가 경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다시 측량을 신청하여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이용하여 토지소유자가 경계를 스스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 하였습니다.

- 현재 지상경계점이 훼손·망실될 경우 지적측량을 재 실시 하여 토지경계를 확인하는 등 경제적·시간적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상경계점 등록 관리·제도를 시행 하여 지상 경계점등록부에 의해 지상경계점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7. 1.부터 지적측량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제공하며 토지소유자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경계점 위치설명도를 참고 하여 지상경계점의 위치를 간편하게 지상에 표시·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토해양부> 정보마당> 법령정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상경계점등록부 운영규정 >

- ▶ 추진배경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상 경계점등록부 시행일(11. 7. 1)에 맞추어 운영규정을 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①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 및 관리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과 연동·관리
 - ② 경계점위치설명도를 참고하여 지상에 경계점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함
 - ③ 지상경계점 훼손 또는 멸실되었을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이용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복원할 수 있어 지적 측량 비용절감 및 국민편익 효과 발생
- ▶ 시행일 : 2011. 7. 1

**거래 할 부동산
내역 스마트폰으로
확인**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센터
(☎02-2110-6280)

- 금년 7월부터 전국 모든 토지·건물의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 20여 가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GPS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자의 현 위치를 지적도에 표시 할 수 있는 기능과 지적도와 구글지도를 중첩하여 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됩니다.
- 토지·건물정보의 스마트폰 서비스가 시작되면 국민들을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어 부동산거래와 재산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예를 들어 부동산매매를 하고자 할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현지에서 즉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공시지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이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되고,
- 주변의 위치를 모를 경우 지적도를 확인해 봄으로써 내비게이션의 기능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내역 확인>

- ▶ 추진배경 : 그동안 부동산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의 온나라 부동산 포털 인터넷 서비스만 가능하여 정보조회 장소의 한계가 있었음.
- ▶ 주요내용
 - 7월부터 전국 모든 토지·부동산의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 20여 가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제공하며 GPS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자의 현 위치를 지적도에 표시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
- ▶ 시행일 : 2011. 7. 1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완화**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 02-2110-8314)

■ 시공관리·품질·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어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전체 공사 기간 중 일부 공종은 공사를 하지 않는 기간도 발생하나 모든 기간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

- 실제 시공 및 품질관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자의 상시 배치의 예외*를 규정하여 업계 부담 완화

* 예외사유 예시 (시행규칙 규정사항)

- ①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계절적 요인 또는 민원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 ② 예산의 부족, 용지의 미보상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 ③ 발주자가 공사의 종단을 요청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완화>

▶ 추진배경 : 전체 공사 기간 중 일부 공종은 공사를 하지 않는 기간도 발생하나 모든 기간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계의 부담으로 작용

▶ 주요내용 : 실제 시공 및 품질관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자의 상시 배치의 예외*를 규정

* 시공관리, 민원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발주자가 공사의 종단을 요청한 경우 등

▶ 시행일 : 2011.11.25

**실적미달업체
영업정지 처분
대상에서 제외**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 02-2110-8314)

■ 건설업 등록 후 최근 2년간 건설공사 실적이 연평균액에 미달*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하는 규정 삭제

* 토목·건축 : 2.5억원, 토목건축 : 5억원, 산업환경설비 : 6억원, 전문업종 : 0.5억원

• 실적 미달업체에 대한 제재는 부실업체 퇴출을 위해 도입 되었으나, 부실업체가 아니더라도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실적 미달 업체가 다수 발생

- 부득이하게 경기침체로 실적이 없는 경우까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중한 처벌

- 따라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사유에서 삭제

<실적 미달업체 영업정지 처분 대상에서 제외>

▶ 추진배경 : 실적 미달업체에 대한 제재는 부실업체 퇴출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경기침체로 실적이 없는 경우까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중한 처벌

▶ 주요내용 : 실적 미달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규정 삭제

▶ 시행일 : 2011.11.25

**상수도 미보급지역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 02-2110-6313)

-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지하수를 가정용 등 일상생활의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도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안전한 먹는 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허위 수질검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된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해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수질검사전문기관에 보전하여야 합니다.

☞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 ▶ 추진배경 :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음용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하여 지하수 이용 효율성 증대
- ▶ 주요내용
 - ①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지하수를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지자체의 조례로 수질검사수수료를 감면
 - ※ 감면된 수질검사수수료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이용하여 지자체에서 수질 검사전문기관에 보전함
- ▶ 시행일 : 2011. 8. 31

준공검사 조건부 허가 폐지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 02-2110-6313)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시 준공검사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는 규정(준공검사 조건부 허가)을 폐지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준공검사 조건부 허가는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를 한 경우 준공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지하수법 제9조)과 유사합니다.
- 준공검사 조건부 허가를 폐지하고 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공신고를 활용토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공검사 조건부 허가 폐지>

- ▶ 추진배경 : 준공신고와 유사한 준공검사 조건부 허가를 폐지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 ▶ 주요내용
 - ①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시 준공신고를 하도록 한 규정과 유사한 준공검사 조건부 허가를 폐지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 ▶ 시행일 : 2011. 12. 1

**지하수개발·이용시
공업 등록 결격사유
합리화**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 02-2110-6313)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결격사유를 지하수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여 결격사유를 합리화하는 등 시공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이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분야가 아님에도 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 시공업 등록 결격사유를 지하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시공업에 대한 결격사유를 합리화하였습니다.

☞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결격사유 합리화>

- ▶ 추진배경 : 지하수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결격사유를 합리화
- ▶ 주요내용
 - 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결격사유를 지하수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
- ▶ 시행일 : 2011. 12. 1

**수도권 소재
산업대학의 일반대학
전환 한시적 허용 등**

국토해양부 수도권정책과
(☎ 02-2110-8159)

■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대학의 일반대학 전환이 2011년 9월 28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2009년 12월 31일까지 허용되었던 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폐합도 2012년 12월 31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가능해집니다.

- 지방 산업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40조의2에 따른 일반대학 전환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수도권 산업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서 일반 4년제 대학의 수도권 신설을 금지하고 있어 일반대학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폐합도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서 정한 허용기간이 경과하여 관련부처와 대학 등에서 이에 대한 연장 건의가 있어 왔습니다.
- 수도권 대학 규제 합리화는 교육환경과 시대 변화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을 원활히 지원하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도권 소재 산업대학의 일반대학 전환 한시적 허용 등>

- ▶ 추진배경 : 산업대와 일반대의 차별성 상실, 산업대 기피로 인한 산업대 지원필요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지원
- ▶ 주요내용
 - ① 수도권 산업대학의 일반대학 전환 한시적 허용('11.9.28 까지)
 - ② 대학과 전문대학 통폐합 허용 시한 연장('12.12.31 까지)
- ▶ 시행일 : 2011.3.9

**중저가 관광호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 02-2110-8663)

■ 관광숙박시설 중 교통유발요인이 적은 1~3등급 관광호텔에 대해 일반숙박시설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도록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및 관광산업의 경쟁력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 중저가의 1~3등급 관광호텔은 교통유발요인이 상대적으로 큰 특급호텔 등과 동일한 교통유발계수를 적용받고 있어 관광숙박시설 확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관광 서비스를 위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저가의 1~3등급 관광호텔은 일반숙박시설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토록 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완화하였습니다.
- 오는 12. 31.부터 1~3등급 관광호텔은 일반숙박시설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받습니다.

<1~3등급 관광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 추진배경 : 중저가의 1~3등급 관광호텔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완화하여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

▶ 주요내용

① 관광숙박시설 중 1~3등급 관광호텔은 일반숙박시설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

* 교통유발부담금 : 단위부담금(350원)×교통유발계수×시설물 연면적(m²)
⇒ 약 56%의 부담금 경감효과 발생

▶ 시행일 : 2011.12.31

회전교차로 건설에 따른 사고감소 및 연료절감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 02-2110-8722)

■ 기존 신호교차로에서의 불필요한 신호대기시간 및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연료소모 및 신호교차로 유지관리비 절감 등 녹색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전교차로 지침을 제정 하였습니다.

- 일부 신호교차로에서는 불필요한 신호대기시간으로 인한 불만이 많고 신호위반 사례가 빈번하며,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약 44%(2008년 기준)가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제정하여 회전교차로 도입을 활성화함으로써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녹색교통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 2011. 1월부터 우리나라 지형 및 운전의식에 맞는 한국형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회전교차로 건설에 따른 사고감소 및 연료절감>

- ▶ 추진배경 : 신호교차로의 불필요한 신호대기시간이 길어 신호위반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회전교차로 설계 및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
- ▶ 주요내용
 - ① 회전교차로 계획 및 전환기준 마련
 - ② 회전교차로 설계기준 마련
 - ③ 안전 및 부대시설 기준 마련
- ▶ 시행일 : 2010.12.28

**이동성 기능도로의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완화**

국토해양부 첨단도로환경과
(☎ 02-2110-8745)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 이동성 기능도로에는 과속방지턱 설치가 금지되어 취락지 통과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확보에 문제가 있는 등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자 동 지침을 개정하여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 그간 국도상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금지되어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확보가 필요한 국도 상에 사고 위험이 많아 관할 지자체, 경찰서 등으로부터 과속방지턱 설치요구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하여 2차로 도로에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30km/h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 내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오는 7월부터 도로관리청에서는 이동성 기능도로에서도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할 수 있게 되어 보행자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성 기능도로의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완화>

- ▶ 추진배경 : 이동성 기능도로에서도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토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생활환경 보호
- ▶ 주요내용
 - 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하여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 완화
 - ②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일지라도, 2차로 도로이면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30km/h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 내에서는 교통정온화시설의 하나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 기존 이동성 기능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 설치가 금지
 - ③ 보행자 통행안전 확보 등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 ▶ 시행일 : 2011.7월 예정

**경춘선,
좌석급행열차 운행
개시**

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
(☎ 02-2110-8805)

■ 금년 말 경춘선에 국내 최초의 2층 객차를 포함한 좌석급행 열차를 춘천에서 용산까지 운행할 예정입니다.

• 작년 12월 경춘선 전동열차 개통으로 남양주 등 경기 동북부 지역과 춘천지역의 여행편의가 크게 향상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노선이 길어 좌석에 앉지 못한 입석 승객이 장시간(상봉~춘천 79분) 서서 가야하는 불편함과,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상봉에서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11년 말부터 용산까지 좌석급행열차를 운행하여 소요시간도 더욱 단축(상봉~춘천 기준 약 35분 단축) 시키고 서울도심에 진입하는 원거리 이용객이 환승의 불편없이 편안하게 좌석에 앉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상봉~춘천 운행시간 : 79분 (일반 전동열차) ⇒ 44분 (좌석급행열차)

- 한편, 국내 최초의 2층 객차운행으로 경춘선의 풍광과 낭만을 더욱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춘선 좌석급행열차 운행계획>

▶ 운행구간 : 용산~춘천(97.9km)

▶ 소요시간 : 용산~춘천간 69분(상봉~춘천간 44분)

* 경춘선 일반전동열차(상봉~춘천간) 운행시간(79분) 대비 약 45% 단축

▶ 소요차량 : 8편성 64량(1편성당 8량, 이중 2량은 2층 객차)

▶ 운행속도 및 기대효과 : 고속화(180km/h)에 따라 타 교통수단 대비 속도경쟁력 확보

※ 교통수단별 운행시간 비교(서울(상봉)~춘천 기준)

구분	좌석급행 (180km/h)	직행버스	무궁화호	민자 고속도로
소요 시간	44분	100분	115분	40분대

▶ 시행일 : 2011.12월

**KTX,
전라선(익산~여수)
운행 개시**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
(☎ 02-2110-8787)

■ 전라선(익산~여수, 185.8km)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금년 12월에 완공되면 전라선에도 KTX가 직결 운행됩니다.

• 현재는 여수, 순천 지역에서 KTX를 이용하기 위해 새마을호를 이용하여 익산역으로 와서 환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 '11년말부터는 여수, 순천역에서 직접 KTX를 이용할 수 있어 환승 불편이 해소되고, 소요시간도 약 43분이 단축(익산~여수 기준)됩니다.

* 익산~여수 운행시간 : 2:24(새마을) ⇒ 1:41(KTX)

- 또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12.5.12~8.12)” 행사 기간중 승용차 이용시 교통정체 또는 행사장 셔틀버스 환승 등 불편함이 있으나, 서울(용산역)에서 여수역까지 KTX를 이용하면 박람회장 입구까지 바로 연결되어 편리하게 박람회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라선 복선전철 사업현황>

- ▶ 전라선 익산~신리(34.4km) 복선전철 건설사업
 - 총사업비 5,654억원 / 사업기간 2007~2011년
- ▶ 전라선 신리~순천(119.0km) 복선전철화 사업
 - 총사업비 5,026억원 / 사업기간 2002~2011년
- ▶ 전라선 순천~여수(32.4km) 복선전철 건설사업
 - 총사업비 7,448억원 / 사업기간 2001~2011년
- ▶ 시행일 : '11년 9월말 복선전철 개통 예정
 - * 신리~동산(17.9km) 구간은 우선 9월말 단선개통, 12월 복선개통

**광역급행버스
정류소 확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 02-2110-8672)

■ 7월 중 수도권 주요 거점을 중간 정차 없이 연결하는 광역 급행버스의 정류소가 6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그동안 광역급행버스가 가.종점으로부터 5Km 이내에 위치한 4개의 정류소에만 정차하여 이용이 불편하고 낮 시간에 승객이 적어 운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가.종점으로부터 7.5Km 이내에 위치한 6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 정류소 제한 규정 완화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류소 운영이 가능해져 광역급행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

☞ 정류소 설치 제한 거리 및 개수 완화

<광역급행버스 정류소 확대>

- ▶ 추진배경 : 광역급행버스 정류소 제한 규정 완화를 통해 이용 편의 제고 및 버스 운행 효율성 제고
- ▶ 주요내용
 - ① 정류소 설치 제한 거리 완화 : 가.종점으로부터 5Km 이내 → 7.5Km 이내
 - ② 정류소 설치 제한 개수 완화 : 4개 이내 → 6개 이내
- ▶ 시행일 : 2011.7월 예정

**자동차 Total
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 제공**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 02-2110-6427)

- 자동차 2,000만 시대를 대비하고 미래·고객 지향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차량의 이력정보를 한눈에 확인 가능한 「자동차 토털(Total) 이력관리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 차량의 생애주기(Life-Cycle : 제작, 등록, 정비, 검사, 매매, 폐차)인 이력정보를 모바일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됨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의 향상이 기대됩니다.
 - 자동차에 대한 이력조회로 중고차 매매거래 시 주행거리 조작,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로 판매, 과다정비 등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신뢰향상 및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 오는 11월 부터는 스마트폰 및 인터넷을 통해 본인 소유 차량에 대한 등록사항, 검사이력, 자동차세 등의 정보를 확인 가능하고 순차적으로 정비이력, 사고이력, 보험이력, 중고부품현황 등이 조회 가능해 집니다.

<자동차 Total 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 제공>

- ▶ 추진배경 : 차량의 생애주기(제작, 등록, 정비, 검사, 매매, 폐차)인 이력정보를 모바일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편익을 증진
- ▶ 주요내용
 - ① 본인 소유차량에 대한 등록원부 기본사항(자동차 기본정보, 압류, 저당정보 등), 정기검사이력, 자동차세 납부이력 조회가 가능('11.11)하며, 순차적으로 차량의 제조사 정비 이력, 차량의 보험 개발원 사고이력, 책임보험 완납 등의 이력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 ② 모바일(스마트폰) 및 인터넷을 통해 조회 가능한 서비스 개시('11.11예정)
 - ③ 조회민원 처리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원거리 이동에 따른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
- ▶ 시행일 : 2011.11.15(예정)

CNG 내압용기 안전성 강화

국도예양부 자동차생활과
(☎ 02-2110-8476)

- CNG 버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재검사 제도가 신규도입 됩니다.
- 그동안 자동차관리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으로 이원화되었던 내압용기 관리가 자동차관리법으로 일원화 되면서 금년 11월 25일 서울지역부터 동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 이에따라 자동차 운행 중 충격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내압용기의 결함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 주기적으로 내압용기의 안전성에 대해 정밀하게 검사하고, 용기 손상 및 충전 가스 종류의 변경 등 사유 발생시에도 수시로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 CNG 용기제조 및 장착검사, 운행단계 재검사 신설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안전문제를 보완함에 따라 CNG 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륜자동차 (50cc 미만)에 대한 자동차의무보험 시행

국도예양부 자동차생활과
(☎ 02-2110-8705)

- 그동안 50cc 미만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대상 차량에서 제외되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에 소홀한 면이 있었으나,
 -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를 의무화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가입 대상 차량에 포함되어 '11. 11. 25일부터 시행됩니다.
 - 따라서, '11.11.25 부터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12.1.1 부터는 사용신고시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만 사용신고가 가능하며,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습니다.
 -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의무보험제도 시행으로 앞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한층 더 강화 되고, 성숙한 보험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실태조사 실시**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 02-2110-8678)

- 오는 8월 20일부터 교통안전 취약 지자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사고원인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 그간 지자체의 예산·인력 등의 부족으로 교통사고의 정확한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이 미흡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3년간 ('08~'10년) 교통안전이 취약한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대책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 개선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지방도,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개선 이행실적이 미흡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개선대책 이행을 위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특별실태조사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자체의 교통사고가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 02-2110-8678)

■ 그간 상당부분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 사고율은 여전히 비사업용 자동차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 1억 주행km당 사업용 자동차 사고율은 비사업용의 1.2배(미국의 경우 사업용 자동차가 비사업용의 1/5수준, '01년 기준)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원인분석〉

- 운전자의 난폭운전, 과속, 법규위반 등
- 이론위주의 교육으로 실제 위험대처 능력 부족
- 운수업체의 운전자 안전관리 미흡 등
- 차량요인(브레이크, 타이어, 유지관리의 상태 등)

■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를 달성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통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 오는 8월 20일부터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교통사고 발생율이 낮은 우수사업자에 대하여는 교통안전 점검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 버스, 택시 등 교통사업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안전 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 02-2110-8678)

- 오는 8월 20일부터 교통안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효율적인 교통대책의 도입·확산을 위한 교통안전 시범도시 사업이 추진됩니다.
- 교통안전의 주요 추진주체인 지자체의 경우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이유로 그간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또한, 기존의 교통안전 사업이 주로 사고 잦은 곳을 대상으로 지점별로 시행되어 전반적인 교통흐름과 연계성을 감안한 도시 전체 차원에서의 교통안전 제고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 시범도시 선정 및 사업비 일부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통안전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교통안전 파급효과가 큰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도시를 선정하고,
 -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통공학적인 안전기법과 교통체계 개선,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소시키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교통안전 참여를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 이러한 시범도시 사업을 통해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고 교통안전의 모범사례를 제시하게 되어 지자체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과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권(利用權) 강화**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 02-2110-8687)

- 앞으로는 장애인콜택시를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탈 수 있게 되어 교통약자가 타 지역을 방문했을 때의 불편이 사라지게 됩니다.
- 현재는 장애인콜택시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지자체(시장·군수)가 관할구역 주민 위주로 운행하여 타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이동시 불편이 발생하였으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6월 30일부터는 타 지역 거주 교통약자도 방문지역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는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국정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 5대권역
내륙물류기지 기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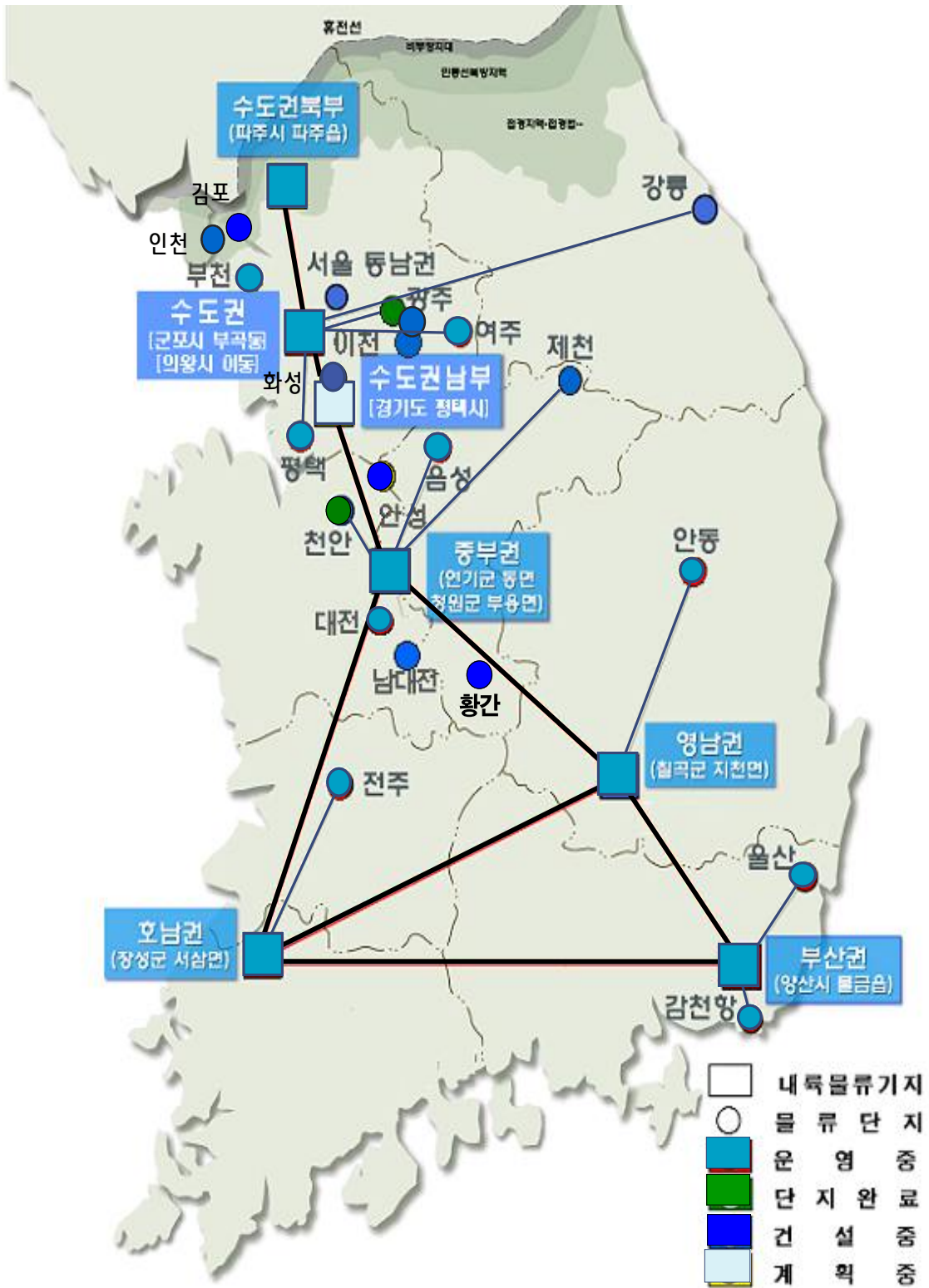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 02-2110-6355)

- 경제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물동량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저비용·고효율의 물류체계 구축 및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전국 5대 거점(수도권, 부산권,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에 내륙물류기지 건설·운영을 추진하여 왔으며,
 - 군포·의왕(수도권), 양산(부산권), 장성(호남권)에 이어 2010년에 청원·연기(중부권)와 칠곡(영남권) 내륙물류기지가 준공됨에 따라 2011년부터는 전국 5대권역 모두에서 내륙물류기지를 본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일부 물류기지는 인근 유사 시설과 수요 중복 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물류시설 수요변화 등을 감안한 물류기지의 기능조정을 통해 운영 활성화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활용성이 높은 물류기지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활용성이 낮거나 수요가 부족한 물류기지에 대하여는 용도전환 등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륙물류기지 기능 조정 추진방안>

- ▶ 추진배경 : 전국 5대권역 내륙물류기지 본격 운영에 따라 운영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능 조정 추진 필요
- ▶ 주요내용
 - ① 발전가능성이 있는 물류거점은 획기적인 활성화 대책 마련
 - ② 활용성이 떨어지는 물류거점은 용도 전환 등 효율화 방안 마련
- ▶ 시행일 : 2011년 11월

<참고자료(사진)>



**평택 청북 신규
물류단지 개발**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 02-2110-8523)

- 물류시설의 공동화집단화를 통해 운송체계 효율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주요 물류거점으로 물류단지 개발을 추진중입니다.
 - 현재, 전국 22개소의 물류단지(981만㎡)를 개발·운영중에 있으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08~'12)에 따라 '11년 하반기에 1개소를 추가하여 총 23개소(1,064만㎡)의 물류단지를 개발·운영할 계획입니다.
 - 물류시설의 합리적 배치 및 개발로 공동 집·배송 체계를 구현하여 화물 수송에 의한 환경오염 감소와 전국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여 물류비를 절감하는 한편 지역의 소득 유발효과 및 고용창출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류단지 개발 주요내용 >

- ▶ 추진배경 : 물류시설의 공동화집단화를 통해 운송체계 효율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주요 물류거점으로 물류단지 개발
- ▶ 주요내용
 - ① 평택 청북 신규 물류단지 개발
 - 시행자: 청북물류단지개발(주)
 - 위치: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렘리
 - 전체면적(828천㎡): 물류시설 470천㎡, 상류시설 90천㎡, 지원시설 32천㎡ 등
- ▶ 시행일
 - ① 201.6.3 신규 단지지정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 02-2110-8523)

- 경인 아라뱃길을 통한 국제 및 내륙 물동량 처리를 위하여 경인항(인천, 김포) 배후에 조성한 물류단지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 인천과 김포의 물류단지는 설계·인허가·공사 발주를 병행 추진하여 공사 착수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하였으며, 2010년 6월 성공적으로 착공하여 2011년 10월 항만공사와 함께 준공될 예정입니다.
 - 경인 아라뱃길 물류단지 시설의 준공으로 도로중심의 수도권 물류체계를 개선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내륙 교통난을 해소하고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준공 주요내용 >

- ▶ 추진배경 : 경인 아라뱃길을 통한 국제 및 내륙 물동량 처리를 위하여 경인항 배후에 물류단지 조성
- ▶ 주요내용: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 ① 인천물류단지(1,146천㎡): 물류터미널 110천㎡, 집배송시설 136천㎡, 창고시설 181천㎡, 상류시설 11천㎡, 지원시설 225천㎡ 등 ⇒ 인천 서구 경서동
 - ② 김포물류단지(903천㎡): 물류터미널 105천㎡, 집배송 시설 49천㎡, 창고시설 93천㎡, 상류시설 9천㎡, 지원시설 150천㎡ 등 ⇒ 김포시 고촌면
- ▶ 시행일: 2011년 10월 인천·김포 물류단지 준공예정

**수출·입 컨테이너
및 샤시 추적정보
서비스 확대**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 02-2110-8520)

■ 국토해양부에서는 수출입 물류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09.5부터 운영하고 있는 수출입 컨테이너 추적정보시스템에 민간 물류정보망인 eTrans와 EDI VAN*을 연계하여 수출입 컨테이너 추적정보시스템의 서비스를 확대·지원할 계획입니다.
* 컨테이너 관련 민간정보망은 eTrans와 EDI VAN정보망이 있으며, eTrans는 1,021개 중·소 운송사가, EDI VAN은 16개 대형운송사가 사용하고 있음

■ '11.6월에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12년까지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면 수해기업이 14개 대형운송사에서 1,037개 컨테이너 운송사로 확대되고

- 컨테이너 차량과 더불어 샤시(피견인 트레일러)의 추적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물류기업은 연간 약300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컨테이너 추적 홈페이지 : www.GCTS.go.kr)

< RFID기반 물류거점정보시스템 주요내용 >

- ▶ 추진배경 : 육·해·공의 물류가시성 향상을 통한 물류업무효율화로 물류경쟁력 강화
- ▶ 주요내용 : 주요물류거점에 RFID인프라를 설치하고 관련기업에 물류 추적정보를 제공
 - ① 항만 22개소, 내륙거점 9개소, 고속도로 TG 22개소, 국제여객터미널 3개소에 RFID인프라 구축
 - 거점에서 수집된 화물(차량)의 추적정보 제공중('09.5월부터 서비스)
 - ② 추적정보제공 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 사업중
- ▶ 서비스 개시 예정 : '11년 6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서비스 확산

**해운중개업
등록기준 완화**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 02-2110-8550)

■ 해운중개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상법상의 주식회사에서 상법상의 회사로 완화하여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 목적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 현재는 해운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해 등록기준으로 「상법」상의 주식회사일 것으로 한정되어 진입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해운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진입 기준을 크게 완화 합니다.

<해운중개업 등록기준 완화>

- ▶ 추진배경 : 해운중개업 진입제한을 완화하여 상법상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유한회사 등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입 제한 완화
- ▶ 주요내용
 - ① 해운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정되어 있는 규정(해운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
- ▶ 시행일 : 2011.12.1

**선박펀드 유형
다양화**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 02-2110-6370)

■ 전문투자자들로만 구성된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마련을 통해, 전문투자자 투자 전문성 비해 다소 과도한 일부 투자자 보호장치를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선박펀드가 구성될 수 있도록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 해운 시황과 선박 매각시점에 관한 전문투자자 판단에 따라 다양한 구조의 상품을 구성할 수 있도록 현재 2년 이상 대선 의무 기간을 1년으로 완화하고,

* 향후 선박가치 상승 예상시 1년 단기 대선 → 1년 경과 후 매각(또는 대선기간 연장)

- 현재 펀드 설립시 체결해야 했던 대선계약을, 새로 선박을 발주하는 펀드의 경우 선박 인도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체결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 선박 건조시 약 2년의 기간이 소요 ⇒ 선박을 빌리는 입장(용선사)에서는 향후 시황을 부정적으로, 선박을 빌려주는 입장(선박투자회사)에서는 향후 시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펀드 설립에 애로

< 선박펀드 유형 다양화 >

▶ 추진배경 : 최근 해운시황 악화로 민간 선박펀드가 위축되고 있는 반면, 펀드 투자자 중 기관투자자 비중은 증가 추세

▶ 주요내용 : 전문투자자들로만 구성된 선박펀드에 대한 특례를 마련

① 대선기간 단축(2년 → 1년)

② 선박 발주 펀드인 경우 대선계약 체결시점 완화(펀드 인가시점 → 선박인도 30일전)

▶ 시행일 : 2011.10.1(예정)

**선박펀드 추가주식
발행 금지 규정
완화**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 02-2110-6370)

■ 해운시황 악재로 선박펀드가 단기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경우를 대비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추가주식 발행 금지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 그간 선박투자회사는 선박 매입·건조후 추가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길이 막혀 있어, 단기·소규모 유동성 위기 시에도 펀드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었으나,
- 투자자보호와 선박 운항 정상화 등을 위해 필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추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선박펀드 추가주식 발행금지 규정 완화 >

- ▶ 추진배경 : 선박펀드는 선박확보 후 추가 자금소요가 없다고 보고, 기존 주주보호 등을 위해 추가주식 발행을 금지중이나, 단기 운임급락 등으로 용선료가 정상 수취되지 않아 선박운항 최소자금 조달마저 어려울 경우 운항 중지에 따른 추가 부실 등 피해 확산 우려
- ▶ 주요내용 : 펀드가 일시 부실화된 경우 일정 요건(대통령령) 하에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
- ▶ 시행일 : 2011.10.1(예정)

**외국인 선원 관련
고용절차 개선 등
외국인선원관리지침
개정 시행**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 02-2110-8576)

- 선원법상 선박소유자가 외국인선원을 고용시 노·사합의 절차를 폐지하고 선원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고용절차 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선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외국인선원 무단이탈시 선박소유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완화하였습니다.

 - 외국인선원 고용시 노·사가 합의토록 한 규정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원노동조합의 의견을 구하도록 고용절차 방법 등을 개선하였으며,
 - 이에 따라 외국인선원 고용신고에 있어 외국인선원의 임금을 3개월이상 체불임금된 업체에 대한 고용제한 규정을 1개월이상 체불임금이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는 고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선원 고용업체가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원법은 물론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또한 선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외국인선원 무단이탈시 선박소유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완화하여 1,2차 무단이탈 발생시 주의, 경고를 1,2차는 주의, 3차는 경고 등으로 변경하여 행정제재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외국인선원 관련 고용절차 개선 등 외국인선원관리지침 개정 시행>

▶ 추진배경 : 외국인선원 고용시 불필요한 노·사합의 절차를 폐지하고 선박소유자가 선원노동조합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자는 노·사 합의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고용절차 등 방법을 변경하고, 선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외국인선원 무단이탈시 선박소유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합리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① 선사별 고용방법에 있어 노·사합의 절차를 선박소유자가 외국인선원 고용시 선원노동조합의 의견을 구하도록 고용방법 등을 개선하고,
- ② 이에 따른 외국인선원 고용신고에 있어 외국인선원의 임금을 3개월 이상에서 1개월이상 체불임금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고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③ 선박소유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외국인선원 무단이탈시에 대한 행정제재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관련 해당 사유의 행정제재 기준 완화하였음

▶ 시행일 : 2011.7.1

**선박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 02-2110-8550)

- 100톤미만 20톤이상 선박 소유자도 해운법령에 의한 선박 대여업이 가능해집니다.
- 그동안 선박대여업 등록기준은 ‘100톤이상 선박을 1척이상 보유할 것’으로 제한하여 100톤미만 선박만을 소유한 자의 재산권 행사를 저해하였으나,
- 소형선박(20톤미만)을 제외한 총톤수 20톤이상(부선은 100톤 이상) 선박 1척 이상 소유자에게도 대여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함

<선박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 ▶ 추진배경 : 100톤미만 선박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운법상 선박대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20톤이상 1척 이상)
- ▶ 주요내용
 - ① 선박대여업의 등록기준을 ‘총톤수 100톤이상의 선박이 1척이상 있을 것’에서 ‘총톤수 20톤이상(부선은 100톤이상) 선박이 1척 이상 있을 것’으로 완화
- ▶ 시행일 : 2011. 12월(예정)

**유조선
통항금지해역
통항금지선박 확대**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 02-2110-8580)

- 유류 오염사고로부터 우리나라 연안을 보호하기 위해 연안으로 접근하여 항해가 금지된 유조선을 크게 확대합니다.
- 기존에는 1,500킬로리터 이상의 중유, 경유, 유해액체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이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에 통항이 금지되었으나, 하반기에는 통항 금지선박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원유 또는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유사석유제품 및 석유 대체연료 등의 기름을 운반하는 선박까지도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을 항해할 수 없습니다.
- 2011년 12월부터 시행되며, 연안에서 유조선 해양사고 시 어장 파괴, 연안오염 등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조선 통항금지해역 통항금지선박 확대>

- ▶ 추진배경 :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으로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는 선박을 원유와 이에 준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으로 확대하여 사고 발생 시 재산 및 환경 피해예방
- ▶ 주요내용
 - ① 원유, 중유, 경유 또는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유사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등의 기름이나 유해액체물질을 1천500킬로리터 이상 화물로 싣고 운반하는 선박의 유조선 통항금지해역 안에서의 운항을 금지
- ▶ 시행일 : 2011. 12. 16

**내항선 맞춤형 안전
관리 매뉴얼 보급**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 02-2110-8581)

■ 금년 9월부터 영세한 내항 선사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급합니다.

- 정부는 내항선의 안전관리 수준향상을 위해 국제항해 선박에 적용해 오던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의 요건을 완화하여 2002년부터 내항선에도 「내항선 안전관리체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 ISM Code(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

해운선사 및 선박의 안전관리 조직·절차 등에 대한 국제적 통일기준에 관한 규약

- 정부는 제도도입 10주년을 맞아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위해 해사안전법에서 정한 필수사항 위주로 선종별 안전관리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여 금년 9월부터 내항 선사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 선사에서는 안전관리체제 수립·이행 업무에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선종별 맞춤형 안전 관리가 가능해져 내항선 안전관리체제의 실효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항선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 ▶ 추진배경 : 내항선박에 선종별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을 보급하여 안전관리체제의 실효성 확보 및 업계부담 완화
- ▶ 주요내용
 - 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내항선종별 안전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 ②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의 보급을 통한 안전관리체제의 전문성 및 실효성 확보
- ▶ 시행일 : 2011.9월중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체제 마련**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 02-2110-8581)

- 「선박안전관리체제」 운용에 책임이 있는 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의무화됩니다.
- 선사는 해사안전법에서 정한 「선박안전관리체제」의 이행을 위해 선사·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이제까지 안전관리(책임)자는 일정한 경력이 있는 경우 선임이 가능하였으나, 조선·운항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실효적인 선박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1년 하반기부터 안전관리(책임)자를 위한 선사·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이를 법제화 할 예정입니다.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체제 마련>

- ▶ 추진배경 : 선박의 체계적 안전관리체제 운영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능력 제고 필요
- ▶ 주요내용
 - ① 선사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필수 교육프로그램 마련
 - ② 교육을 위한 시설 및 교수인원 등의 요건을 마련하여 교육기관 선정
- ▶ 시행일 : 2011.12월중

**소형선박 질소산화물
규제 (유예기간 종료)**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 02-2110-8593)

- 2011년 7월1일부터 기관출력 176마력이상 400마력 미만의 디젤기관은 질소산화물규제 적용유예 기간이 종료되어 질소산화물 배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30kW[176PS] 이상 294kW[400PS] 미만 디젤기관 적용방법〉

선박 건조일 \ 디젤기관 제작일	2011. 7. 1 전 제작된 디젤기관	2011. 7. 1 이후 제작된 디젤기관
2011. 7. 1 전 건조된 선박	비적용	적용
2011. 7. 1 이후 건조된 선박	적용	적용

* '06.6.29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수용하였으나 소형디젤기관 (130~294kW)에 대해 '11.6.30까지 적용을 유예한 바 있음

<소형선박 질소산화물 규제(유예기간 종료)>

- ▶ 추진배경 : 국내운항 소형 디젤기관 질소산화물의 규제 유예 종료
- ▶ 주요내용
2011년 7월1일부터 기관출력 국내운항 176마력이상 400마력 미만의 디젤기관은 질소산화물 규제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질소산화물 검사를 받아야 함.
- ▶ 시행일 : 2011.7.1

**유조선 기름화물
이송계획서 비치**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 02-2110-8593)

■ 해상에서 유조선 간에 기름화물을 이송하려는 선박소유자는 그 이송하는 작업방법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술한 계획서(이하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인을 받은 후 선박에 비치하고, 이송작업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 : 두 선박 간에 기름화물을 이송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한 계획서로서 선박간 호환성, 통신방법, 호스 등 장비,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절차 및 각종 점검표를 포함하고 있다.

<유조선 기름화물이송계획서 비치>

- ▶ 추진배경 :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국제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해상에서 유조선간 기름화물이송 작업시 기름화물이송 계획서 비치 및 시행 필요
- ▶ 주요내용 : 해상에서 유조선간 기름화물 이송작업을 하는 유조선은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비치하고 시행하여야함
- ▶ 시행일 : 2011. 9월(예정)

**선교항해당직경보
장치 의무화**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 02-2110-8587)

■ 항해 중 선교 당직자의 졸음 및 부재 등 당직근무 태만에 의해 발생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 합니다.

*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BNWAS : Bridge Navigational Watch Alarming System) : 일정시간(3분~12분)을 설정하여 선교 당직자에 의한 재입력이 없을 경우 단계별로 시각 및 청각적 경보를 선교 및 선내에 발하는 장치

- 해양사고, 특히 충돌사고는 인적과실에 의하여 많이 발생하고 있어 선교 당직자의 당직근무태만을 사전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대상선박으로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여객선 및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이며 2011년 7월1일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 의무화>

- ▶ 추진배경 : 당직근무 태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해양사고 예방
- ▶ 주요내용
 - ①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 설치 의무화(선박설비기준 개정)
 - ②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의 요건 규정
 - ③ 선종 및 크기에 따른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11년 7월1일부터 연차적으로 적용
- ▶ 시행일 : 2011.7.1

**부유식 해상구조물
구조설비기준 개정**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 02-2110-8587)

■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상부구조물에 대하여 건축법령 등을 준용하여 설계 및 건조할 수 있도록 부유식 해상구조물 구조설비 기준을 개정합니다.

*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이동식해저굴착선, 수상호텔, 수상공연장, 수상레스토랑 등을 말하며, 이동식해저굴착선은 기존 선박구조설비 기준을 계속 적용하나, 그 외 수상호텔 등의 부유식해상구조물의 상부구조물에 대하여 건축법령 등을 준용하여 건조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

• 이전에는 모든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선박구조설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상부구조물의 평면 및 입면계획에 제한이 따랐으나 금번 개정으로 보다 다양한 형태의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건조가 가능합니다.

• 수변이용 활성화에 따라 향후 많은 부유식 해상구조물이 건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부유식 해상구조물 기준의 개정은 미적으로 우수하고 편의성이 강화된 보다 다양한 형태의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건조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생활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유식 해상구조물 구조설비기준 개정>

▶ 추진배경 : 수상호텔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상부구조물에 건축법령 등을 준용하여 수상호텔 및 레스토랑 등 다양한 형태의 부유식 해상구조물 건조가 가능하도록 함

▶ 주요내용

- ① 수상호텔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상부구조물에 대한 구조설비 기준을 선박법령이 아닌 건축법령 등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형태의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건조가 가능하도록 함
- ② 이전에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선박법령 등을 적용하여 수상호텔 및 레스토랑, 공연장 등 다양한 형태의 부유식 해상구조물 건조가 어려웠음

▶ 시행일 : 2011.9.30

**선박 내연기관
형식승인 대상 확대**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 02-2110-8587)

■ 선박 내연기관에 대한 형식승인 대상을 현행 50마력 미만 기관에서 600마력 미만 기관까지 확대합니다.

* 형식승인 : 선박용 물건이 특정선박에 탑재되기 전에 사전에 형식승인 시험에 합격한 경우, 동일 형식의 물건은 간이한 검사절차인 검정을 시행하고 선박에 탑재하도록 하는 제도

- 이전에는 50마력 미만 기관만 형식승인 대상으로 하여 대부분의 선박이 50마력 이상의 내연기관을 탑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형식승인 대상을 600마력미만 기관까지 확대하여 형식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조자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박의 내연기관 형식승인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선박의 내연기관 형식승인 대상을 확대하여 형식승인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제조자 불편해소

▶ 주요내용

- ① 형식승인 대상을 50마력 미만의 선박 내연기관에서 600마력 미만 선박내연기관까지 확대
- ② 이전에는 50마력 이상의 선박내연기관은 형식승인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아 전수 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600마력 미만 선박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할 경우 간이한 검정으로 검사 완료

▶ 시행일 : 2011.7.30

**공기부양선
구조설비기준 제정**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 02-2110-8587)

■ 공기부양선(호버크라프트) 구조설비기준을 제정하여 공기부양선의 안전기준을 확립합니다.

* 공기부양선 : 근접수면상에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부양공기의 공기쿠션에 의하여 정지 또는 운동상태에서 선체중량의 전체 또는 상당부분이 지지되어 질 수 있는 선박 흔히 호버크라프트라고 불림

- 공기부양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기부양선 구조설비기준 제정은 수요자, 제조자 및 검사기관에게 명확한 안전기준을 제시하여 공기부양선 안전운항을 도모하고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공기부양선 구조설비기준 제정>

- ▶ 추진배경 : 공기부양선 구조설비기준 제정으로 공기부양선 안전기준 확립
- ▶ 주요내용
 - ① 공기부양선 구조설비기준 제정
 - ② 이전에는 공기부양선 수요가 적었으나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공기부양선 구조설비기준 제정으로 명확한 안전기준 확립
- ▶ 시행일 : 2011.9.30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안전운송
교육이수 의무화**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 02-2110-8590)

- 선박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제조·운송·적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위험물취급자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2010.7.16 개정된 선박안전법 시행 당시 위험물취급자는 개정법률 시행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경과기간을 두었으나, 올해로 경과조치가 끝남에 따라 2011.7.16부터 모든 위험물취급자는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위험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위험물취급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화주 또는 그 대리인
 - ② 위험물의 용기 제조 또는 포장업무에 종사하는 자
 - ③ 국제물류주선업자 중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
 - ④ 해상화물운송사업자 중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
 - ⑤ 항만운송사업자 중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
 - ⑥ 위험물의 검사, 승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 이수 의무 신설>

- ▶ 추진배경 : 개정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의 국제 발효(2010.1.1)에 따라 그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
- ▶ 주요내용
 - ① 위험물취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
 - ②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③ 교육을 받아야 하는 위험물취급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교육 내용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 시행일 : 2011.7.16

**예인선향해검사의
주기 개선
(1년 → 5년)**

국토해양부 예사기술과
(☎ 02-2110-6381)

■ 예인선향해검사는 부선을 예인하여 운항하는 예인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예인설비, 예인능력 등을 전문 선박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제도로써, 사업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5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검사주기를 개선합니다.

- 다만 중간에 예인설비가 변경되거나 예인하고자 하는 부선 및 구조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기존 예인설비에 대해서는 정기적 검사시 간이한 현상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증서의 추록을 신설하여 예항력과 예인하고자 하는 부선의 저항값을 기재하여 예인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예인선향해검사의 주기 개선>

- ▶ 추진배경 : 예인선향해검사의 실효성 확보 및 사업자의 편의증진
- ▶ 주요내용
 - ① 예인선향해검사 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변경(완화)
 - ② 중간에 예인설비가 변경되거나 예인하고자 하는 부선 및 구조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함
 - ③ 증서의 추록을 신설하여 예항력과 예인하고자 하는 부선의 저항값을 기재하여 예인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 시행일 : 2011.9.30(예정)

**선박검사관의
자격기준 완화**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 02-2110-6381)

■ 일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일정자격(해기사면허)과 경력을 갖춘 자가 선박검사관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합니다.

* 선박검사관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항만국통제 등 선박에 관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임

• 이전에는 대학이나 해양수산계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과 경력을 갖추어야만 선박검사관이 될 수 있어서 일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선박검사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 이번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이 되면 일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도 일정 자격증과 경력을 갖추면 선박검사관이 될 수 있게 됩니다.

【 신설 자격 규정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급항해사(기관사)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선박검사관의 자격기준 완화>

▶ 추진배경 :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일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도 선박검사관이 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① 일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일정자격(해기사면허)과 경력을 갖춘 자도 선박검사관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
- ② 이전에는 대학이나 해양·수산계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과 경력을 갖추어야만 선박검사관이 될 수 있어서 일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선박검사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었음

▶ 시행일 : 2011.9.30(예정)

선박의 기관개방검사 주기 개선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 02-2110-6381)

- 임시검사로 선박의 기관개방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 및 제1종 중간검사시 실시하는 기관 개방검사를 전회 기관개방검사 후 최대 3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임시검사 : 선박의 기관 등 주요 시설에 대해서 개조 또는 수리를 하는 경우 선박안전법에 따라 전문 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선박의 안전검사
 - * 기관개방검사 : 선박의 검사 항목 중 하나로 기관을 개방·분해하여 정밀하게 행하는 검사로서 많은 비용(약 1천만원)과 시간(약 3일)이 소요됨
- 이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임시검사로 선박의 기관개방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지정된 검사일이 도래하면 또다시 기관개방검사를 받아야 하였습니다.

<선박의 기관개방검사 주기 개선>

- ▶ 추진배경 : 기관개방검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자의 비용절감 등 편의증진
- ▶ 주요내용
 - ① 임시검사로 선박의 기관개방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 및 제1종 중간검사시 실시하는 기관 개방검사를 전회 기관개방검사 후 최대 3년까지 유예토록 함
 - ② 이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임시검사로 선박의 기관개방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지정된 검사일이 도래하면 또다시 기관개방검사를 받아야 하였음
- ▶ 시행일 : 2011.9.30(예정)

**소형항공운송사업
좌석기준 상향**

국토해양부 항공산업과
(☎ 02-2669-6467)

- **현행 19인승 이하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 기준이 2011년 하반기부터 50인승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 **동 제도가 시행되면 소형항공사들이 50인승 항공기를 도입하여 소형 항공사들의 기업채산성이 개선되고 지방공항이 활성화 되며, 항공레저와 항공비즈니스 등 새로운 수요 충족으로 내수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 기존 19인승에서 50인승으로 증대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 19인승에서 50인승으로 증대>

- ▶ **추진배경** : 지방공항 활성화와 항공레저관광 및 항공비즈니스 등 새로운 수요 창출
- ▶ **주요내용**
 -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형항공운송사업 좌석기준을 19인석 이하에서 50인석 이하로 상향조정
- ▶ **시행일** : 2011년 10월(예정)

**인천공항
배후물류단지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

국토해양부 항공산업과
(☎ 02-2669-6478)

- 올 7월부터 인천공항 물류단지에 500만불이상 투자하는 기업은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감면 받게 됩니다.
 - 그동안은 투자금액에 따른 토지임대료 감면제도를 외국기업에게만 적용하여 왔으나, 국내기업 차별 해소와 적극적인 공항배후단지 기업 유치 차원에서 국내기업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투자기업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입주기업이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간에 500만불 이상 투자 시 5년간 토지임대료의 50%를 감면받고 1,000만불 이상 투자 시 5년간 토지임대료를 100% 면제 받게 되며, 투자금액이 클수록 임대료 감면기간이 최대 15년까지 늘어 납니다.
 - 아울러, 입주기업이 공항물류단지에서 물품을 가공하여 외국에 배송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감면기간이 2년씩 연장됩니다.
 - 그 밖에 기존 기업이 3,300㎡ 이상 증축하거나 250만불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도 3년간 토지임대료를 50% 감면 받게 됩니다.
- 이번 조치로 인천공항 배후 물류단지에 기업투자가 늘고 항공물동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공항 배후 물류단지 투자인센티브 제도개선>

- ▶ 추진배경 : 인천공항 배후 물류단지 투자활성화를 통해 동북아 물류 허브 기능 강화
- ▶ 주요내용
 - ① 국내기업에게도 공항 물류단지 500만불 이상 투자시 투자금액에 따라 토지임대료 감면
 - ② 입주기업이 글로벌 배송센터 역할을 수행할 경우 감면기간 2년 연장
 - ③ 기존 투자자 3,300㎡이상 증축 또는 250만불 이상 투자시 3년간 토지임대료 50%감면
- ▶ 시행일 : 2011. 7. 1

**군비행장 사용신청
처리기간 단축**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 02-2669-6354)

■ 항공운송사업·비사업용 항공기 업체의 군비행장 사용 승인 신청 및 승인절차를 일부 개선하여 신청 처리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 현재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방부장관 간 체결한 비행장 사용협정에 따라 군비행장 사용을 위한 신청·승인을 하고 있으나 그 절차가 복잡하여 사용 승인처리에 장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 (기존절차) 접수(국토해양부 장관) ⇔ 신청(국방부장관) ⇔ 합참, 각 군 본부 등 예하부대까지 4~5단계의 행정기관을 거쳐 승인

* 평균 4주 정도의 행정기간 소요

- 위와 같은 기존의 절차 중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정기편)의 운항계획 일부변경, 비사업용 항공기 중 기 승인된 사항의 일부 내용변경 승인 등의 권한을 해당기관(국방부: 해당기지 부대장)에 위임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 (개선절차) 접수(지방항공청장) ⇔ 신청·승인(각 군 해당 부대장)

* 평균 1~2주 행정기간 단축으로 현행대비(50%이상 처리기간 축소)

< 군비행장 사용신청 처리 기간 단축 >

▶ 추진배경 : 불필요한 행정처리 절차(단계)를 개선하여 행정처리 기간 단축

▶ 주요내용

① 해당공항 관할 부대장에게 군비행장 사용승인 권한을 위임

▶ 시행일 : 2011년 8월

「항공안전관리 시스템(SMS)」 운영 확대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 02-2669-6369)

■ 항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로 국외를 운항하려는 자도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

- ①최대이륙중량이 5,700kg을 초과하는 항공기, ②1개 이상의 터보제트 발동기를 장착한 항공기 또는 ③승객 좌석수가 9석 이상인 항공기

**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 항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체계적인 안전 관리 및 안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항공교통서비스 제공자가 구축·운영해야 하는 시스템

※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확대 등을 주요골자로 한 항공법 개정안 국회제출('10.10.19)

• 현재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 항행안전시설 설치자·관리자, 항공기정비업자 및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대해서만 SMS 도입·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 지난해 ICAO*가 조종사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과 항공운송사업자는 아니나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사용하여 국외를 운항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SMS 도입·운영을 의무화하도록 국제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사고예방 강화 및 ICAO 국제기준과의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SMS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국제민간항공기구 (UN 산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의무 도입 대상 확대 배경

항공사고의 80%이상이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그 중 대부분의 원인이 조종사 과실과 연계됨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하는 **조종사**들의 **안전지식**과 **위험대처능력** **배양**을 위하여 조종사가 되기 위한 첫 출발점인 **전문교육기관**과 항공운송사업자가 아닌 **국외를 운항하는 개인**(조종사 등) 또는 **법인·단체**에 대해서도 **SMS 도입·운영을 의무화**

- 현행 SMS 도입·운영 의무 대상에 조종사를 양성하는 전문교육 기관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로 국외를 운항하려는 자까지 확대하여 체계적·효율적인 안전 관리로 항공사고 예방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확대 >

- ▶ 추진배경 : 조종사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과 일정기준 이상의 항공기로 국외를 운항하는 자도 SMS를 의무적으로 도입·운영토록 ICAO 국제기준 개정
- ▶ 주요내용
 - ①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확대(항공법 제49조제2항 개정)
- ▶ 시행일 : 2011년 12월(예정)

**집중점검 방식의
항공안전감독제도
도입**

국토해양부 운항안전과
(☎ 02-2669-6474)

-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안전감독관 1명이 공항, 정비 격납고 등을 상시 방문하여 종사자 근무실태, 운항·정비규정 준수여부, 잠재위험요인 등 76개 점검항목에 대하여 상시 점검을 수행하였습니다.
- 그러나 안전감독관 1명이 1일 동안 76개 점검표 중 1개를 선정하여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감독효율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이를 시정하고 점검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76개의 점검표를 유사 분야별로 그룹화(13개)하여 점검 1회당 운항·정비 안전 감독관 2명을 배정, 2~3일 동안 집중점검하는 방식으로 개선 하였습니다.
 - * 그룹 : 운항 6개, 정비 5개, 현장점검 1개, 항공안전관리체계 1개
- 이로 인하여 안전장애, 항공기 지연·결항을 유발하는 잠재 위험요인의 집중 발굴 및 안전개선이 가능함에 따라 감독 일수가 월평균 10.4일에서 9.8일로 절감(6% 절감)되어 감독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중점검 방식의 항공안전감독제도 도입>

- ▶ 추진배경 : 안전감독성과를 극대화하고 급변하는 운항환경에 신속 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상시점검 방식을 집중 점검 방식으로 개선
- ▶ 주요내용
 - ① 국적항공사에 대한 76개 점검표를 유사분야별로 그룹화(13개)
 - * 운항·정비·현장점검·SMS로 대분류 후, 조직인력, 기준·규정, 훈련, 품질 관리, 항공기 등 총 13개로 소분류 및 그룹화
 - ② 점검 1회시 운항·정비 감독관 2명이 점검항목을 그룹단위로 2~3일간 집중점검
- ▶ 시행일 : 2011. 1. 1

**항공사 자율적
안전관리시스템
(SMS) 정착 유도**

국토해양부 운항안전과
(☎ 02-2669-6474)

■ '99년 이후 국적항공사는 무사망 사고를 달성 중이나 인적 과실, 항공기 고장 등으로 인한 비정상운항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항공사 스스로 잠재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시스템(SMS)* 이행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SMS : 항공사고 예방과 비행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목표, 위험요소관리 절차, 안전보증, 안전증진활동 등 자율적 항공안전관리시스템

- 운항·정비 등 취약분야 및 '08년 정부가 승인한 항공사별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실태를 매월 순차적으로 점검하여 안전 지표 및 목표 재설정 등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하여 국적항공사의 인적과실,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 운항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공사 자율적 안전관리시스템(SMS) 정착 유도>

- ▶ 추진배경 : 항공사 스스로 잠재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자율적 안전관리시스템 정착
- ▶ 주요내용
 - ① 국적항공사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실태 순차 점검
 - ② 안전관리시스템 점검항목을 신설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이행실태가 미진한 항공사 재점검
 - ③ 타 분야 안전관리시스템 우수사례 소개 등 자율적 안전증진활동 추진
- ▶ 시행일 : 2011. 1. 1

**항공안전
특별점검 실시 기준
마련**

국토해양부 운항안전과
(☎ 02-2669-6474)

- 그간 항공사에 대한 특별점검은 구체적 실시기준이 없어 엔진, 착륙장치 등 중대한 항공기 고장 발생 시 사후에 일회성으로 실시하였으나,
 - 대형사고로 확대될 수 있는 사고·준사고·안전장애 등 잠재 위험요인을 유형화하여 선제적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점검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 동 기준에 따라 매월 국적항공사의 비정상운항 발생실태를 모니터링하고 항공사별·분야별 대상을 선정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항공안전 특별점검 실시 기준 마련>

- ▶ 추진배경 : 항공기 고장발생 시 사후적·단발적 안전감독에서 잠재 위험요인을 유형화하여 선제적 안전관리
- ▶ 주요내용
 - ① 정비로 인한 사고·준사고가 1개월 내에 2건 이상 발생 시
 - ② 정비로 인한 회항이 1개월 내에 4건 이상 발생 시
 - ③ 엔진, 착륙장치, 조종면, 항법장치 등 항공기 중요 시스템에 동일 결함이 3개월 내에 5건 이상 발생 시
 - ④ 항공운송사업자 및 조종사, 정비사 등 종사자의 범규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가 1년 이내 5건 이상 발생 시
 - ⑤ 그 밖에 항공사 운영실태, 조종사 등 전문 인력의 급격한 감소, 영업여건 악화 등 잠재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시행일 : 2011. 4. 1

**항공기등에 관한
안전성 인증 및
승인 수수료 50%
감면**

국토해양부 항공기술과
(☎ 02-2669-6361)

■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항공기등에 관한 안전성 인증 및 승인 수수료를 50% 감면하는 규정(국토해양부 고시)이 7.1부터 2년간 연장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면 대상은 항공기의 감항증명 및 수리·개조승인 등 항공기의 안전성과 관련된 9가지의 증명·승인 업무가 해당 됩니다.

☎ 국토해양부>정보마당>법령정보

< 항공기등의 인증 수수료 감면 내용 >

- ▶ 추진배경 : 경제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규제완화
- ▶ 주요내용
 - 항공기 등과 관련된 감항증명, 소음기준적합증명, 형식증명, 형식 증명승인,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수리·개조승인, 기술표준품형식 승인 및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 수수료 50% 감면
- ▶ 시행일 : 2011.7.1부터 2013. 6. 30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서
유효기간 연장**

국토해양부 항공기술과
(☎ 02-2669-6361)

■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등에게 안전성인증검사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항공레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전성인증서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유효기간 연장 발급 대상은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제반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영·관리하는 자가 소유한 순수 레저목적의 초경량비행장치로 한정됩니다.

<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서 유효기간 연장 내용 >

- ▶ 추진배경 : 초경량비행장치의 항공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 ▶ 주요내용
 - 비영리목적으로 운영되고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영·관리하는 자가 소유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서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발급
- ▶ 시행일 : 2011. 9. 1

**공항시설 준공 전
사용허가 처리기간
단축**

국토해양부 공항정책과
(☎ 02-2669-6338)

- 공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항시설을 국토해양부장관의 준공 확인 이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그 허가의 처리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법률 수요자의 비용 부담 경감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항개발사업 추진을 도모 하게 됩니다.
- 「항공법」 제104조제5항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8조제2항에 따라 공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항시설을 국토해양부장관의 준공확인 이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 서식에 따라 국토 해양부장관의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처리기간은 15일이 소요됩니다.
- 그러나, 공항시설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법률수요자의 비용 부담을 초래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법률 수요자의 비용부담 경감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공항시설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처리기간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시행합니다.

<공항시설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처리기간 단축>

▶ 추진배경 : 공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항시설을 국토해양부장관의 준공확인 이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그 허가의 처리기간은 15일로 장기간 소요되고 있으나, 그 기간을 10일로 단축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법률 수요자의 비용부담 경감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항개발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항시설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처리기간 단축

- ① 공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항시설을 국토해양부장관의 준공확인 이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그 허가의 처리기간은 15일로 장기간 소요되고 있으나
- ② 공항시설의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처리기간을 단축(15일 → 10일) 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법률 수요자의 비용부담 경감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항개발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시행일 : 2011.12월

소음부담금 부과·징수 요율 인상
 국토해양부 공항환경과
 (☎ 02-2669-6313)

■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있는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추진중인 방음시설 설치를 조속히 완료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에 부과·징수하는 소음부담금 부과·징수 요율을 인상하여 방음시설 설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간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가 재원부족으로 부진한 실정이므로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으며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10년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을 제정하고 재원확보를 위하여 국고를 일부 지원하고 원인자(수익자) 부담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따라 항공사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을 '09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11월부터 현행 착륙료의 10%를 부과하던 소음 6등급 항공기에 대하여는 15%로, 15%를 부과하던 소음 5등급 항공기에 대하여 20%로 인상하여 시행합니다.

<소음부담금 부과징수 요율 인상>

- ▶ 추진배경 :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을 확대하여 방음시설 설치완료 기간을 대폭단축
- ▶ 주요내용
 - ① 소음부담금 부과징수 요율 인상
 - ② 추가 재원확보로 소음피해를 받고있는 주거시설의 방음시설 설치 완료 시기 대폭 단축되고 공항주변 주민들의 실내생활 불편사항 해소
- ▶ 시행일 : 2011.11.1

**항공장애표시 등
설치신고 처리기간
단축**

국토해양부 공항환경과
(☎ 02-2669-6317)

■ 지표면이나 수면으로부터 60m 이상 높은 구조물 중 항공기 운항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구조물에는 항공기 조종사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 표지를 설치하고 관할 지방항공청 또는 시·도에 신고하여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동 업무 신고 처리기간이 7일에서 4일로 단축되어 국민 불편이 해소 되게 됩니다.

- 「항공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7조에 따라 지표면이나 수면으로부터 60m 이상 되는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 서식에 따라 신고서의 처리 기간은 7일이 소요됩니다.
- 그러나, 신고서 제출 후 처리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국민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법률 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서 처리기간을 현행 7일에서 4일로 단축하여 시행합니다.

<항공장애표시등 설치 신고 처리기간 단축>

- ▶ 추진배경 : 항공장애표시등 및 항공장애주간표지를 설치한 구조물의 소유자는 동 설치 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신고서의 처리기간을 7일로 규정하고 있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업무처리에 필요한 최소기간인 4일로 단축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항공장애표시등 설치 신고 처리기간 단축
 - ①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 설치 신고서의 처리기간이 7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 ② 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 기간인 4일로 단축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 시행일 : 2011.12월

**레이저 운영 승인
신청 처리기간 단축**

국토해양부 공항환경과
(☎ 02-2669-6317)

■ 레이저광선의 방사는 항공기 운항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일정 출력 이상의 레이저를 방사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하여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행사 등 레이저 광선 방사 계획이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이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동 업무 신고 처리기간이 7일에서 4일로 단축되어 국민 불편이 해소되게 됩니다.

- 「항공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7조에 따라 레이저광선의 방사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행장 주위에 보호공역을 설정하고, 동 보호공역에서 레이저광선을 방사할 때에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때 사용신청 등 세부 기준에 관해서는 국토해양부 고시 「레이저광선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호 “레이저운영 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2호 “레이저장치 사양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이 신청서의 처리 기간은 7일이 소요됩니다.
- 그러나, 신고서 제출 후 처리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어 레이저 방사를 포함한 행사 계획 등 수립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법률 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서 처리기간을 현행 7일에서 4일로 단축하여 시행합니다.

<레이저 운영 승인신청 처리기간 단축>

- ▶ 추진배경 : 「항공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7조에 따라 레이저 보호구역에서 레이저광선을 방사할 때에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신고서의 처리기간을 7일로 규정하고 있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기간인 4일로 단축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레이저 운영 승인 신청 처리기간 단축
 - ① 레이저 광선 방사를 위한 레이저 운영 승인신청서 처리기간이 7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 ② 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 기간인 4일로 단축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 시행일 : 2011.12월

**연안관리정보시스템
(Coastal-GIS)**

고도화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 02-2110-8465)

- 2011년 하반기에는 1999년부터 구축해온 연안관리정보시스템의 활용성이 크게 개선 될 예정입니다.
- 연안관리정보시스템은 1999년에 개발되어 2013년에 완료 될 예정이며, 최초 연안관리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내부용으로 한정하여 제공되었습니다.
- 연안포털(www.coast.kr)은 연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면서, 2005년에 홈페이지 형식으로 제작, 국민들에게 제공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사용자 수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 현재는 연안정책, 연안레저, 연안지도 등 연안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위성영상을 이용한 연안지리 정보도는 우리나라 연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입체도면으로 시각화하여 연안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국민들의 바람에 따라 그동안 공무원에게만 제공되던 자료들을 일반 국민들에게 확대 제공할 예정이며, 2013년까지 고도화 작업을 완료하여 글로벌 연안포털로서의 위상과 격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안관리정보시스템(Coastal-GIS 고도화)>

- ▶ 추진배경 : 국민들의 바람에 따라 그동안 공무원에게만 제공되던 자료들을 일반 국민들에게 확대 제공
- ▶ 주요내용
 - ①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 ② 연안정책, 연안레저, 연안지도 등 국민들에게 유용한 콘텐츠 구축
 - ③ 공유수면 매립, 점·사용, 무인도서 등 신규자료 현행화
- ▶ 시행일 : 2011. 12월

**전국 자연해안관리
목표제 시행**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 02-2110-8461)

- 전국 자연해안(바닷가, 자연해안선, 갯벌)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됩니다.
- 최근 갯벌면적은 87년 대비 20.4%이상 상실되어 해양 생태계의 단절현상이 증가하고, 수산자원의 서식지가 크게 감소하고 있고,
- 인공구조물 설치와 모래채취 등으로 해안침식이 가속화돼 국내 해안선 길이가 1910년 7,560km에서 2009년 5,620km로 1,940km 줄어들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자연해안선, 바닷가 및 갯벌의 총량적 관리를 위해 자연해안 관리목표제를 실시하여 5년간의 개발 및 복원 사업에 대한 수요가 반영된 국가 및 지자체별 자연해안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하여 자연해안 보호 향상이 기대됩니다.

<전국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실시>

- ▶ 추진배경 : 연안개발로 자연해안이 축소됨에 따라 일정수준의 자연해안 유지 필요성 증대
- ▶ 주요내용
 - ① 국가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
 - ② 5년간 개발 및 복원 수요를 반영한 지자체별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
 - ③ 안전율을 도입하여 지자체의 자율권 인정
 - ④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 실시
- ▶ 시행일 : 2011. 10월

**제2차 연안통합
10개년계획 수립·
시행**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 02-2110-8461)

-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며, 2011.7월에는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이 확정·시행됩니다.
- 우리나라 연안관리는 1999년 연안관리법 제정, 2000년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2009년 연안관리법 전면 개정하여 '10.3.26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동 법률의 시행을 위해 전국을 8개 연안으로 나누고 이를 4개 용도구역과 19개 기능구로 세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 제2차 연안관리통합계획을 수립하여 관계의견수렴('11.4)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11.7)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 동 계획의 세부내용으로 찾고 싶은 에코(ECHO) 연안 조성은 기조로, 통합·생명·정주·협력 연안을 4대 기본목표로, 신 연안관리제도 적용, 생태계 건강성 증진, 기후변화 대응 강화, 연안거버넌스 구축, 연안관리 실행력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연안관리의 기준이 마련됩니다.

<제2차 연안통합 10개년계획 수립시행>

- ▶ 추진배경 :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 ▶ 주요내용
 - ① 전국을 8개 연안으로 구분하여 정책방향 제시
 - ②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연안용도해역제 등 신 연안관리제도 기틀 마련
 - ③ 기후변화 등 연안 환경 변화에 따른 신 추진전략 제시
- ▶ 시행일 : 2011. 7월

**연안정비사업
패러다임 전환**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 02-2110-8463)

- 2011년을 기점으로 연안정비사업은 주변 경관 및 관광지와 연계하여 계획하고, 현지 여건에 맞도록 자연 친화적 정비로 전환됩니다.
-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친환경적으로 연안공간을 조성하여 영토보전과 국민쉼터로 제공하기 위해 연안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 기 수립한('09년) 제2차 연안정비사업을 보완하고 전국 연안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 이를 통해 찾고 싶은 연안, 건강하고 안전한 해역으로 복원하여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연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안정비사업 패러다임 전환>

- ▶ 추진배경 :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친환경적으로 연안공간을 조성
- ▶ 주요내용
 - ① 기 수립한 제2차 연안정비사업 보완 추진
 - ② 전국 연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 ▶ 시행일 : 2011. 하반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업무처리 규정
신설**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 02-2110-6338)

- 2010.10월16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업무처리 규정이 통합 신설됩니다.
 - 국민들 편의를 위해 제정법률에서는 공유수면 점·사용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허가기간 역시 기존 3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연장을 허가하였습니다.
 - 이러한 연장선에서 일부 매립 제한규정 역시 대폭 완화되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처리 규정 또한 현행 법률에 맞게 신설 개편될 예정이며,
 - 이를 통해 공유수면의 개발과 이용, 보존과 관리에 대한 체계 및 기틀을 만들어, 난개발을 방지하고 불법사용을 근절하는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업무처리 규정 신설>

- ▶ 추진배경 : '10.10.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통합법률 제정에 따라 법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업무처리 규정 신설
- ▶ 주요내용
 -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 ② 기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업무처리 규정 통합 제정
- ▶ 시행일 : 2011. 하반기

**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기간 연장
및 과태료 완화**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032-835-2251)

-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변경등록 기간을 연장하였고(20일 → 30일),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과태료를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분 완화하고, 위반회수 및 시일경과에 따른 차등부과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2011. 4. 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오는 2011. 10. 5.부터 적용됩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11 개정부분

위반내용	현행	개정 (단위 :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다. 법 제17조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40	10		
라. 법 제18조 운항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40	10	20	30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마. 법 제19조 원거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0	20		
자. 법 제2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	10	15	20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타.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30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자는 1만원(10일이 초과한 경우 1일 초과할 때마다 4천원 추가).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하.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개인기구)	30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자는 1만원(10일이 초과한 경우 1일 초과할 때마다 4천원 추가).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더.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수상레저기구의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자는 5만원 (10일이 초과한 경우 1일 초과할 때마다 1만원 추가).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자는 5만원(10일이 초과한 경우 1일 초과할 때마다 1만원 추가).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변경등록기간 연장 및 과태료 완화>

- ▶ 추진배경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변경등록기간 연장 및 과태료 완화로 민원편익 제공
- ▶ 주요내용
 - ①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변경등록사항 발생시 30일내 변경 등록
 - ② 일부 과태료 완화 및 일률적 부과를 위반회수·시일경과에 따른 차등부과로 조정
- ▶ 시행일 : 2011. 10. 5.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대상 확대 및
규제완화**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032-835-2251)

■ 원거리수상레저활동 신고기준 완화(5해리→10해리),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확대(선내기 모터보트, 동력요트 추가) 및 기구등록·보험가입시기의 명확화(소유일부터 1개월내), 말소등록사유의 추가(수출 등), 검사방법의 완화(중복검사 완화, 지자체 승인부분 삭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11.6.15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11.12.16부터 적용됩니다. (원거리수상레저활동 신고기준 완화는 '11.6.15 공포시부터 시행)

[참조]

* 현행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선외기
모터보트(20마력이상)



고무보트(30마력이상)



수상오토바이

* 향후 추가되는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2011.12.16)



선내기
모터보트(20톤미만)



동력요트(20톤미만)

* 선외기 모터보트의 마력제한 폐지 검토 중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대상 확대 및 규제완화 등>

- ▶ 추진배경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대상 추가 및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 신고기준 완화 등으로 수상레저활성화 제고
- ▶ 주요내용
 - ①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일부터 1개월이내 보험가입 및 기구등록
 - ②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대상 추가 : 20톤미만의 선내기 모터보트, 동력요트
 - ③ 말소등록 사유에 “구조·장치 등의 변경으로 등록대상에서 제외된 때”와 “수상레저기구를 수출하는 경우”를 추가
 - ④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정기검사 시기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로 대체 하도록 함
 - ⑤ 구조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시 지자체담당자의 변경사실 확인·승인 절차를 간소화, 안전검사기관의 1차 점검만으로 변경등록토록 함
- ▶ 시행일 : 2011.12.16

5. 보건복지 · 여성

전문병원 지정제도 시행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02-2023-7314)

- 2011년 10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병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 현재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현상 등 왜곡된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로 인해 환자의 대기시간 증가, 높은 의료비 지출 등 의료서비스의 비효율적 이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이에 집중화·표준화된 진료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 중소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여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 오는 7.1.부터 9개 질환, 9개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전문병원 신청을 받아 10월에 전문병원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 이와 함께, 전문병원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척도를 추가로 개발하여 전문병원의 질적 수준을 지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전문병원 지정제도 시행>

▶ 추진배경 : 왜곡된 의료서비스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전문병원 지정

▶ 주요내용

- ① 전문병원 지정분야 : 9개 질환, 9개 진료과목
 - * 질환(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및 화상), 진료과목(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및 정형외과)
- ② 지정기준(7개)을 충족하는 병원에 대해 항목별 평가(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지역별·분야별 균형을 고려하여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지정
- ③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지정 및 취소, 3년 주기로 신규 지정
-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병원만이 의료기관명칭에 전문병원이라는 용어 사용 가능

▶ 시행일 : 2011.10월

**임시마약류
지정제도 도입**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 02-2023-7359)

- 2011년 9월부터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여 국민 보건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시행합니다.
-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우선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임시마약류의 지정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1년이며, 임시마약류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효력이 6개월 이내에서 연장됩니다.
 - 공무상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임시마약류의 수입·제조·유통·소지 등 취급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마약류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 신종 환각물질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국민 보건상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시행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그동안 신중 환각물질로 인한 폐해 발생 시 마약류로 등록하기 위한 지정 절차가 복잡하고 수개월 소요됨에 따라 신중 환각물질이 이미 유통되어 확산된 다음에 단속 근거가 마련되는 문제점이 있어 신중 환각물질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하여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도입

▶ 주요내용

- ① 신중 마약류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가 인정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
- ② 공무상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임시마약류의 수입·제조·유통·소지 등 취급 금지
- ③ 임시마약류 취급·금지 규정 등의 위반 시 마약류 규정과 동일하게 처벌
- ④ 임시마약류 지정의 효력은 공고 후 1년간이며, 추후 필요시 마약류로 지정 가능

▶ 시행일 : 2011. 9. 8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2-2023-7418)

-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보장성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고가의 치료비 또는 약값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을 위해 최신 암수술 등 고가의 암치료 기술을 급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또한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에 대해 급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이와 함께,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 본인부담을 인하하고, 주로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2011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 ▶ 추진배경 :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 주요내용
 - ①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 ② 당뇨치료제 급여 확대 및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지원
 - ③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요양비 지원
 - ④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급여화
 - ⑤ 최신 암수술 급여화
- ▶ 시행일 : 2011년 하반기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05)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됨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50%만 납부하면 됩니다.
 - 현행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로서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만 가능하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금보험료의 전액을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 부담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을 개정,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

- ▶ 추진배경 :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으로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및 노후생활 안정 도모
- ▶ 주요내용
 - ①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적용하고 희망하는 경우 적용제외 신청
 - ②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및 연금수급권 강화
- ▶ 시행일 : 2011.12.8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요건
완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05)

- 60세 도달 당시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이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요건이 완화됩니다.
- 기존의 임의계속가입 요건은 60세 도달 당시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 한정하고 있어,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는 연금수급권 확대를 위한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 * 가입자였던 자 : 60세 도달 당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전에 가입이력이 있던 자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요건이 완화되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분들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고, 60세 도달했지만 가입기간을 더 연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 2011. 6. 7.부터 60세에 도달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들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요건 완화>

- ▶ 추진배경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요건 완화를 통한 가입자의 수급권 강화
- ▶ 주요내용
 - ① 60세 도달 당시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임의계속 가입 신청 가능
 - ②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서 제출
 - ③ 임의계속가입 요건 완화에 따른 가입기간 연장으로 국민연금 수급권 강화
- ▶ 시행일 : 2011.6.7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 범위
합리적 확대·조정**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02-2023-8341)

-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을 계부모까지 확대하고, 유족연금의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자와의 생계유지 기준으로 부양가족 연금을 지급합니다.
 - 종전에는 계부모에 대해서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변화하는 가족관계를 반영하여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포함하고,
 - 타 공적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이중보상을 방지하며
 - 유족연금 수급권자(사망한 가입자의 배우자·자녀·부모)의 부양가족연금 지급시 가입자(사망자)와의 생계유지 요건은 폐지하고, 유족연금 수급권자와의 생계유지만 인정되면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여 지급대상 범위가 합리적으로 확대·조정됩니다.
 - ※ 신분관계 기준은 동일 : 사망한 가입자의 배우자·자녀·부모
- 2011. 6. 7부터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 공단에 부양가족연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 범위 합리적 확대조정>

- ▶ 추진배경 : 비혈연 관계가 증가하는 가족구조 현실을 반영하고 유족연금 수급권자와의 실질적 부양관계를 고려하여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조정
- ▶ 주요내용
 - ①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 계부모 제외 → 계부모 포함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제외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물론 타 공적연금 수급권자 제외
 - ②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부양가족연금 산정기준) 사망한 가입자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와의 생계유지 충족 → 유족연금 수급권자와의 생계유지 충족
 - * 신분관계 기준은 동일 : 사망한 가입자의 배우자·자녀·부모
 - ③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와 생계유지확인서(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주소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첨부하여 신청
- ▶ 시행일 : 2011.6.7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도입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05)

-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소급하여 추가 징수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하고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는 경우, 일시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분할납부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됩니다.
 - 2011. 12. 8.부터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신청에 의해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도입>

- ▶ 추진배경 :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를 통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 ▶ 주요내용
 - ① 기준소득월액 정정, 자격변동 확인 지연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추가 징수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
 - ② 추가 징수되는 보험료가 과다하여 일시 납부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 ▶ 시행일 : 2011.12.8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공제계산서
교부의무 완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05)

-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에게 교부하는 연금보험료 공제계산서를 급여명세서 등으로 갈음토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행정처리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는 경우 공제계산서를 사업장가입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여명세서로써 보험료의 공제내용을 알 수 있으면 공제계산서를 따로 교부하지 않아도 되어 사용자의 행정부담이 완화됩니다.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공제계산서 교부의무 완화>

- ▶ 추진배경 :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에게 교부하는 공제계산서를 급여명세서 등으로 갈음함으로써 사용자의 행정편의 도모
- ▶ 주요내용
 - ① 급여명세서로 연금보험료 공제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 공제계산서로 갈음
 - ② 사용자의 행정력 절감 등 국민 불편사항 해소
- ▶ 시행일 : 2011.6.7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통합 발급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05)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소관 사회보험기관에서 각각 발급받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1장으로 통합하여 4대 사회보험기관 어디서든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현재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소관 기관을 통해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1. 8. 1.부터 4대 사회보험 기관 어디서든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공제계산서 교부업무 완화>

- ▶ 추진배경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통합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각각 발급받는 불편함 해소
- ▶ 주요내용
 - ① 4대 사회보험기관에서 각각 발급하고 있는 가입내역확인서를 1장으로 통합하여, 소관기관이 아니더라도 4대 사회보험기관이면 발급 가능
 - ② 한 곳에서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인 편의 제고
- ▶ 시행일 : 2011.8.1

**집행유예자 ·
가석방자 기초노령
연금 수급 가능**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 02-2023-8375,
8386)

■ 2011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도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11. 3. 30.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 개정 전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 되지 않은 기간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었습니다.

- 그러나 교정시설 등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재소자와 달리 사회에서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고령의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하여 연금 지급 정지 대상에서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를 제외하였습니다.

- 노인 범죄의 대다수가 생계형 범죄인 점을 감안할 때,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의 연금 수급으로 빈곤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11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 만65세 이상 70%(387만명), 월 최고 91,200원 지급

<집행유예자·가석방자 기초노령연금 지급>

- ▶ 추진배경 : 생계가 곤란한 고령의 집행유예자 및 가석방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급 필요
- ▶ 주요내용 : 기초노령연금 지급정지 대상에서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 제외
- ▶ 시행일 : 2011. 7.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TF
(☎ 02-2023-8204, 8195)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 기존의 활동보조에 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이 추가되어 서비스 내용이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10년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 또한, 지자체에서 수행하던 인정조사 및 서비스 사후관리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이 제고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오는 10. 5.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이용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로 전환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
- ▶ 주요내용
 - 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 ② 활동지원급여에 활동보조와 방문목욕·방문간호·긴급지원 등 포함
 - ③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이용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로 전환
- ▶ 시행일 : 2011.10.5.

**보육료·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실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2-2023-8934)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현재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나 원거리 거주자 등 민원인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보육료·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오는 9월부터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실시>

- ▶ 추진배경 : 맞벌이부부나 원거리 거주자 등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보육료·양육수당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으로 민원편익 제공
- ▶ 주요내용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
- ▶ 시행일 : 2011. 9. 1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02-2075-8722)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11.4.4 개정, '11.10.5 시행)으로 그간 출생 시부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재한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구성된 가족으로 한정되었던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인지 또는 귀화 한국인과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확대합니다.

- 이에 따라 오는 10월 5일부터는 귀화·인지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결혼이민자 등과 가족을 이루게 되면 다문화 가족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

- ▶ 추진배경 :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가족을 포괄,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
- ▶ 주요내용
 - ① 귀화 및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와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도 다문화가족에 포함되어 다문화가족서비스 수혜 대상에 포함
- ▶ 시행일 : 2011.10.5

6. 고용노동

**외국인력상담센터
개소**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 02-2110-7189)

■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11.7.1부터 외국인력상담센터를 개소하고 대표전화(1577-0071)를 활용하여 상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를 위하여 고용허가제 고용관리 전반을 비롯하여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 분야상담, 외국인근로자 출입국 관리, 생활법률 등 행정·생활 기본정보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의 이용 편의성을 위하여 10개국 현지 언어 서비스는 물론 주말 및 휴일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 개소>

- ▶ 추진배경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생활고충 및 법률상담 등 체류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① 고용허가제 고용관리 전반,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노동분야 상담
 - ② 외국인근로자 출입국관리, 생활법률 등 행정·생활 기본정보에 대한 상담
- ▶ 개소일 : 2011. 7. 1.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부담금 부과**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2-2110-7307)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과체계를 합리화 하고자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에 의하면 상시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수의 2.3%(공공기관은 3%)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1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기초액('11년 1인당 56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고용부담금 = (의무고용미달인원 x 부담기초액)의 연간합계

- 법률개정을 통해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하여는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하고(1인당 월56만원→90만원) 우선 7.1부터 공공기관과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부터 시행합니다.

☞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 고용부담금 인상

<장애인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부담기초액 인상>

▶ 추진배경 :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과체계를 합리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① 장애인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부담기초액 인상
- ② 그 시행시기는 사업장 규모별로 달리 정함
- ③ 장애인 고용의무를 강화하고, 부담금 체계를 합리화 함

▶ 시행일 : 2011.7.1.(공공기관 및 상시 300인이상), 2012.1.1.(상시 200인~300인미만), 2013.1.1.(상시 100~200인미만)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내일배움카드제”로
통합**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2-2110-7270)

■ 7월 하순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현재 실업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내일배움카드제로,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로 지원하고 있어 취업 상태에 따라 제도를 달리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전직지원을 내일배움카드제로 통합, 실업 상태로 전환되더라도 제도변경 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 가까운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www.hrd.go.kr)을 통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내일배움카드제”로 통합>

- ▶ 추진배경 : 내일배움카드제 발급대상을 비정규직 근로자까지로 확대 하여 취업에서 실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제도 변경 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
- ▶ 주요내용
 - ① 내일배움카드제 발급대상을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 등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확대
 - ② 비정규직 근로자가 취업→실업으로 전환되더라도 제도 변경없이 지원 실시
- ▶ 시행일 : 2011.7월(예정)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2-503-9732)

-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됩니다.
 - 이에 따라 30여만 개의 사업장과 200여만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주40시간제가 새로 적용됩니다.
- 또한 근로시간 단축(주 44시간 → 주 40시간)과 더불어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10일 이상→15~25일), 보상휴가 제도 도입,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 등도 2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

- ▶ 추진배경 : 근로기준법은 상시 20명 미만 사업장의 주40시간제 적용 확대를 명시하고 있으며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 ▶ 주요내용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도,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조정 등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 ▶ 시행일 : 2011.7.1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02-2110-7335)
중영노동위원회의 교섭대표결정과
(☎ 02-3278-8620)

■ 2011.7.1부터 기업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해야 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 기업단위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 복수노조 허용으로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가 보장되고, 노동조합간 건전한 경쟁관계가 조성되어 조합원 중심의 민주적 노조활동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도 한층 제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노조법 개정 설명자료 게시

■ 이에 따라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건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신설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교섭요구 사실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②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③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④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결정 신청, ⑤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⑥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 신청서식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 및 「노동위원회규칙」 별지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 추진배경

-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호하고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이 국제적 기준에 위반한다는 ILO의 권고와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노동조합의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 2010.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어 2011.7.1.부터 기업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해야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됨

▶ 주요내용

- ① 기업단위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
- ② 교섭창구는 자율적 단일화→과반수 노조→공동교섭 대표단 순으로 단일화절차를 진행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 ③ 교섭대표 노조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 소수 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

▶ 창구단일화 주요 절차

- ① 교섭요구노조 확정 절차 : 노조의 교섭요구 →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 다른 노조의 교섭참여 → 사용자의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 → 노동위원회의 시정 결정 → 교섭요구 노조 확정
- ②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 : 자율적 단일화 - (안되면) → 과반수 노조 교섭대표노조 결정 - (노동위원회에 이의 제기시) → 노동위원회의 교섭대표노조 결정 - (과반수 노조 없으면) → 공동교섭 대표단 자율결정 - (안되면) → 노동위원회의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 ▶ 시행일 : 2011.7.1.(다만, 2009.12.31. 현재 기준 복수노조 사업장의 교섭창구 단일화는 2012.7.1.부터 시행)

7. 법무·행정안전

**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실시**
법무부 보호법제과
(☎ 02-2110-3326)

- 성폭력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어려운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여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 시키는 치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 아동 대상 성폭력범 중에는 과도한 성적 충동 또는 성적 환상으로 과잉 성행동 증상을 보이는 소아성기호증 등 성도착증 환자가 많은데, 이들에 대하여는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만으로 성범죄 근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형벌과 함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관리가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6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7. 24.부터 성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는 성도착증 환자에게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법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도입>

▶ 추진배경 :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체계 구축으로 성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도모

▶ 주요내용

- ① 16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
 - ※ 성도착증 환자 판단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 또는 진단을 필수적으로 거침
- ②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 중에 있는 경우 출소 2개월 전부터 치료 명령을 집행
- ③ 대상자는 치료명령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여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로 재범을 방지하고 안정적 사회복귀 도모
- ④ 치료를 받지 않고 도주하거나, 치료약물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약물을 투약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시행일 : 2011. 7. 24.

**압류금지 범위
구체화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시행**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02-2110-3502)

-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서민생활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압류금지 보장성보험금과 예금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현금)와 급여채권 금액을 120만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최저생계비 상승분을 고려하여 금액을 15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또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수령함으로써 질병을 앓고 있는 채무자의 보험계약이 강제로 해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보험계약의 강제해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 예금채권에 대하여도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장성보험금에 대한 압류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 개정된 시행령은 7. 6.부터 시행됩니다.

☞ 치료·수술보험금, 생계예금 압류하지 못한다(법무부 홈페이지)

<압류금지 범위 구체화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 ▶ 추진배경 :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생계형 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압류금지 보장성보험금과 예금 등의 범위를 구체화
- ▶ 주요내용
 - ① 채권자가 해약환급금 환수 의도로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해지 못하도록 제한
 - ② 치료비, 수술비 등 보장성보험금에 대한 압류 금지
 - ③ 압류금지 생계비와 급여채권 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 ④ 150만원 이하의 예금채권 압류 금지
- ▶ 시행일 : 2011. 7. 6

**상법 항공운송편
신설**

법무부 상사법무과
(☎ 02-2110-3167)

■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항공운송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항공 운송에 관한 국내 입법이 전혀 없이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약관에만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항공운송관계를 명확히 법률에 규율하여 여객과 화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항공사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과거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상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피해를 입은 여객이나 화주가 항공사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했기 때문에 분쟁해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2002년 김해에서 발생한 중국 민항기 사고의 경우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약 7년이 소요되었습니다)

- 이번 상법 항공운송편 신설로 항공사에게 무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속하게 구제 받게 됩니다.

- 항공기 사고로 여객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항공사는 10만 SDR(약 1억 8천만원)까지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고, 여객의 수하물 손해에 대하여는 가격신고가 없는 한 여객 1인당 1,000 SDR(약 180만원)을 한도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또한 화물이 파손되는 경우에는 항공사의 과실이 추정되고 운송물 1kg 당 17 SDR(약 3만원, 국내운송은 15 SDR, 약 27,000원)까지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 뿐만 아니라 항공기가 추락하여 지상에 있는 제3자가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항공사는 피해자 1인당 12만 5천 SDR(약 2억원)의 범위 내에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상법 항공운송편이 오는 11. 24.부터 시행되면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객이나 화주 및 항공기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법률에 따라 적절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 인사교류
인센티브 강화 등**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정책과
(☎ 02-2100-2862)

■ 정부 부처에 근무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다른 부처에 인사교류 경험이 있을 경우 고위공무원단 승진이 유리해지며, 고위공무원단 채용면접에 있어 위원수를 늘리고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해 보다 공정한 선발이 이뤄지게 됩니다.

- 먼저 과장급 공무원의 부처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4급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인사교류 또는 개방형·공모 직위로 타 기관 임용 경력이 있는 사람은 해당기간의 2분의 1만큼 고위공무원단 진입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공무원단 승진심사에서도 이러한 경력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고위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면접위원 수를 늘리고, 위원회 구성도 강화하였는데, 면접위원은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고 위원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러한 개선안은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2011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 인사교류 인센티브 강화 등>

- ▶ 추진배경 : 과장급 인사교류 등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심사절차 생략 및 면접위원 구성 강화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고위공무원으로 선발하려는 목적
- ▶ 주요내용
 - ① 과장급 인사교류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 과장급 인사교류 및 개방형·공모직위 경력자에게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한 근무경력 요건을 완화(교류기간 1/2 근무 경력에 반영)하고,
 - 승진심사 시 해당 경력도 고려하도록 함
 - ② 고위공무원의 공정하고 엄격한 선발을 위해 면접위원 수를 5명으로 늘리고, 외부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함
- ▶ 시행일 : 2011.5.19.(입법예고), 2011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

**'11. 7. 29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 02-2100-4051)

■ 도로명주소는 '11.7.29 대국민 동시 고시 후 법적 주소로 확정되어 사용하게 됩니다.

- 다만, 올해 말('11.12.31)까지는 도로명주소를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12.1.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게 됩니다.

* 참고로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적응을 위해 도로명주소를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2년('11년말→'13년말)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11.12.31 까지 공공기관의 각종 공적장부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게 됩니다.

-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사업자등록 등 7대 핵심 공적장부를 먼저 도로명주소로 바꾸고, 나머지 공적장부도 '11.12.31까지 변경하게 됩니다.

- 각종 공부상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되면 국민들은 새로운 도로명주소로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생활을 편하게 하는 도로명주소 사업 >

▶ 추진배경 : 길찾기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①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지·고시 실시('11.3~7)
- ② 공공기관의 공적장부 주소전환 및 민간부문 주소전환 지원 ('11.8~12)
- ③ 도로명주소 사용 대비,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 및 국민생활밀접 분야 교육

▶ 시행일 : 2011. 7. 29('11년말까지 병행 사용)

* 단,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병행사용 기간이 2년 연장('11년말 → '13년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4493)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일반법이 없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개별법간에 처리기준이나 원칙 등이 상이하여 일관되고 통일된 정책 추진이 어려워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법 사각지대 해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 처리 가능
-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시 범죄예방 등 특정한 목적으로만 설치하고 공중화장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에 설치 금지
-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처리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을 통지하고 전문기관에 신고하여 금융사기 등 2차 피해 방지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권을 규정하여 기본권 보장 강화
- 동일사안에 대해 다수가 피해입은 경우, 집단분쟁조정제와 권리침해 중지 단체소송 도입하여 신속공정한 구제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인터넷 주민번호(I-PIN) 의무제공,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중요 개인정보 암호화 등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시행
-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 구축시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목적·근거·기간 등을 행안부장관에 등록·공개

■ 시행일 : 2011.9.30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 02-360-6644)

■ 공직자의 부패행위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 경쟁을 위협하는 행위를 신고하여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경우, 원상복직 등 보호·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신고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 : 농산물품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소비자 기본법 등 400여개 법률에서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정하는 위반행위

☞ 위해식품의 제조·유통, 폐기물 불법 매립, 부당 공동행위 등

- 지금까지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더라도 개별법에 규정된 이상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신분 위협, 신분 노출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공익 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기업 및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 하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인적사항의 공개 금지, 신분보호, 신분상 보복에 대한 원상회복 등

- 또 치료비·재송비·임금손실 등 신고로 인한 비용 지출에 대하여 구조금을 받을 수 있고, 위반자의 과태료·과징금·벌금 등의 납부로 국가나 지자체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오는 9. 30.부터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 ▶ 추진배경 :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하여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확산 방지 도모
- ▶ 주요내용
 -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이익·공정 경쟁 등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 ※ 기존에는 부패행위 신고자만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등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음
 - ② 해당기업,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권익위 등에 신고 시 권익위를 통해 보호·구조·보상이 가능
 - ③ 공익신고자가 보호·지원받음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
- ▶ 시행일 : 2011.9.30

**고층·특수건축물
대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성능위주설계
활성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02-2100-5338)

■ 고층 및 특수 건축물의 증가로 인한 대 국민 안전확보를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대한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최근 법 규정대로 소방시설을 설계하면 화재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특수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건축물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화재 등의 재난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을 확보하고자 건축물별 특성에 맞는 화재 및 피난특성 분석으로 과학적인 최적의 소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 7. 1.부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제4항에 의한 성능위주설계대상은 시·군·구청 건축심의 전에 건축물의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에 관한고시 제정>

- ▶ 추진배경 : 특수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최적의 소방시스템 구축
- ▶ 주요내용
 - ① 성능위주설계의 정의
 - ② 성능위주설계의 신청 및 처리 절차
 - ③ 성능위주설계의 변경 절차
- ▶ 시행일 : 2011. 7. 1.

8. 보훈 · 국방 · 병무

**참전유공자! 모두
국가유공자로 인정**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02-2020-5242)

■ 그동안 참전유공자 중 6·25참전유공자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참전유공자간에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참전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모든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였고, 이를 증명하는 국가유공자증(서)도 별도 계획에 따라 교부할 예정입니다.
- 다만, 지원수준은 변화 없이 종전 참전유공자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모든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

- ▶ 추진배경 : 6·25참전유공자가 2008년 9월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으나 일부 참전자들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모든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필요성 대두
- ▶ 주요내용
 - ① 모든 참전유공자(참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포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
 - ②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되, 지원수준은 변화없이 종전과 같음
 - ③ 국가유공자 증(서)은 별도 계획에 따라 교부
- ▶ 시행일 : 2011.6.30.

**보국수훈자
국가유공자
인정범위 개선**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02-2020-5225)

- 보국훈장을 받은 군인·군무원 등은 전역·퇴직한 이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군인을 제외한 모든 보국수훈자는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서훈 시에만 보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됩니다.
- 그동안 보국수훈자는 전·퇴직여부, 국가안보기여도 심사 없이 모두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으나,
 - 앞으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보국훈장을 받는 경우, 모두 전역 또는 퇴직한 이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또한, 군인을 제외한 군무원·경찰·국정원 직원 등은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만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며,
 - 기존 재직자 보호를 위해 '11.6.30일 이후 신규로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보국수훈자 국가유공자 인정범위 개선>

- ▶ 추진배경 : 장기재직 공로 보국수훈자까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결여 등으로 보국수훈자의 국가유공자 인정범위 조정 필요
- ▶ 주요내용
 - ①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보국훈장을 받는 경우 전역 또는 퇴직하여야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이 가능
 - ② 군인을 제외한 군무원·경찰·국정원 직원 등은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만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며, 다만 기존 재직자 보호를 위해 2011.6.30일 이후 신규로 임용된 사람부터 적용
- ▶ 시행일 : 2011.6.30.

**소방공무원의
일반직무 중 희생도
보상금을 받는 순직·
공상군경으로 인정**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02-2020-5225)

■ 소방공무원도 군인·경찰공무원과 같이 일반직무 중 희생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받는 순직·공상군경으로 인정됩니다.

- 그동안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의 직무 중 희생한 경우만 순직·공상군경으로 인정되고, 그 외 일반 직무 중 희생한 경우는 순직·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 앞으로는 군인·경찰공무원 등록체계와 같이 화재진압·구조구급이 아닌 일반 직무 중 희생한 경우에도 공무원관련성이 인정되면 순직·공상군경으로 인정됩니다.
- 개선내용은 법 시행일인 6.30일 이후 최초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소방공무원의 일반직무 중 희생도 순직·공상군경으로 인정>

- ▶ 추진배경 : 소방공무원의 직무 대부분이 상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군인·경찰과 같은 수준으로 예우와 지원할 필요성 대두
- ▶ 주요내용
 - ① 소방공무원이 일반직무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등록하여 예우
 - ② 다만, 법률시행일인 2011.6.30일 이후 최초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부터 적용
- ▶ 시행일 : 2011.6.30.

**입영 후 자녀
출산시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제도 실시**

국방부 인력관리과
(☎ 02-748-5136)

- 육아여건 보장 차원에서 현역병 복무 중에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편입시키는 제도가 '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자는 현역병 외에 전환복무(전경·의경, 해경, 의무소방대, 경비교도) 중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 입대 前에 자녀가 있는 경우 병무청에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신청절차를 통해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으나, 현역병 복무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되는 제도가 없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유자녀 현역병의 육아여건을 보장하고 입대 前 출산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상근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유자녀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제도 실시>

- ▶ 추진배경 : 유자녀 현역병의 육아여건을 보장하고 입대 前 출산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유자녀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 제도 마련
- ▶ 주요내용
 - ① 현역병 복무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편입 가능함
 - ② 현역병 외에 전환복무(전경·의경, 해경, 의무소방대, 경비교도) 중인 사람도 포함됨
- ▶ 시행일 : 2011.11.25

**여군 전역제도
개선으로 예비역
문호 개방**

국방부 국방여성정책과
(☎ 02-748-5171)

■ 지금까지는 여군이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일괄적으로 퇴역 하도록 되어 있어 예비역으로 군 경험을 가진 우수 인력을 예비전력으로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 앞으로는 여군이 현역 복무를 종료하고 퇴역 또는 예비역으로 선택 가능하여 예비역에 지원하면 해당 계급의 연령 정년까지 예비역으로서 전·평시 예비전력에 활용될 수 있어 군 전투력 증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여군 전역시 예비역 지원 가능 >

▶ 추진배경 : 여군에게 예비역의 문호를 개방하여 '선택권' 및 국가에 헌신할 기회 부여, 우수 자원을 전·평시 예비전력 자원으로 활용하여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

▶ 주요내용

- ① 여군이 전역 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 퇴역 또는 예비역 선택 가능
 - * 현역여군 대상 설문결과, 제도 도입 찬성 83.8%, 예비역 선택 의사 표명 61.6%
- ② 이에 따라 예비역 지원 시 남군과 동일한 병역 의무와 혜택이 있음
 - * 예비역 지원 시 남군과 동일하게 병력동원 소집 대상이 되고, 해당 계급 연령정년까지 예비군에 편성되어 훈련을 받게 되나, 명예진급이나 예비전력 관리기구 군무원 지원 시 유리
- ③ 군경험을 가진 우수 전문인력 활용으로 예비전력 보강 및 전투력 제고

▶ 시행일 : 2011. 5. 24

**군수품
국방표준바코드
부착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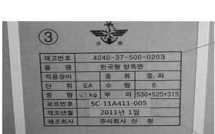

국방부 군수정보화팀
(☎ 02-748-5764)

- '11. 6. 1. 계약분부터 국방부로 납품하는 모든 군수품은 국방 표준바코드를 부착해야 합니다. (단, 일반포장이 불가능한 대량 유류 및 자재, 탄약류는 제외)
- 모든 군수품에 국방표준바코드를 부착하여 소 물류과정(수불, 저장)에서 활용하고, 군 물류흐름 개선 및 실시간 자산 가시화를 극대화시킬 것입니다.

■ 또한, 군수품 납품 시 국방 표준 바코드 부착을 의무화함에 따라 계약특수조건 표준(3종)을 개정하였으며 향후 군수품 현장관리 자동화가 이루어져 군수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계약특수조건 표준 3종 : 제조·구매(일반 및 방산, 특정조달), 함정건조

<국방표준바코드 적용 예>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재고번호</td><td colspan="3">4240-37-500-0203</td></tr> <tr><td>품명</td><td colspan="3">한국형 방독면</td></tr> <tr><td>적용장비</td><td>종류</td><td colspan="2">중,좌</td></tr> <tr><td>단위</td><td>EA</td><td>수량</td><td>6</td></tr> <tr><td>중량</td><td>67kg</td><td>부피</td><td>530*525*315</td></tr> <tr><td>로트번호</td><td colspan="3">SC-11A411-055</td></tr> <tr><td>제조년월</td><td colspan="3">2011년 1월</td></tr> <tr><td>제조회사</td><td colspan="3">주식회사 ○○</td></tr> </table>	재고번호	4240-37-500-0203			품명	한국형 방독면			적용장비	종류	중,좌		단위	EA	수량	6	중량	67kg	부피	530*525*315	로트번호	SC-11A411-055			제조년월	2011년 1월			제조회사	주식회사 ○○		
재고번호	4240-37-500-0203																																
품명	한국형 방독면																																
적용장비	종류	중,좌																															
단위	EA	수량	6																														
중량	67kg	부피	530*525*315																														
로트번호	SC-11A411-055																																
제조년월	2011년 1월																																
제조회사	주식회사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재고번호</td><td colspan="3">4240-375000203</td></tr> <tr><td>품명</td><td colspan="3">한국형 방독면</td></tr> <tr><td>적용장비</td><td>종류</td><td colspan="2">중,좌</td></tr> <tr><td>단위</td><td>EA</td><td>수량</td><td>6</td></tr> <tr><td>중량</td><td>67kg</td><td>부피</td><td>530*525*315</td></tr> <tr><td>로트번호</td><td colspan="3">SC-11A411-055</td></tr> <tr><td>제조/유효</td><td colspan="3">2010.03.10-9999.99.99</td></tr> <tr><td>제조회사</td><td colspan="3">주식회사 ○○</td></tr> </table>	재고번호	4240-375000203			품명	한국형 방독면			적용장비	종류	중,좌		단위	EA	수량	6	중량	67kg	부피	530*525*315	로트번호	SC-11A411-055			제조/유효	2010.03.10-9999.99.99			제조회사	주식회사 ○○			<p>[바코드 적용 전]</p>  <p>[바코드 적용 후]</p>
재고번호	4240-375000203																																
품명	한국형 방독면																																
적용장비	종류	중,좌																															
단위	EA	수량	6																														
중량	67kg	부피	530*525*315																														
로트번호	SC-11A411-055																																
제조/유효	2010.03.10-9999.99.99																																
제조회사	주식회사 ○○																																

<군수품 국방표준바코드 부착 시행>

- ▶ 추진배경 : 정보체계를 이용한 군수품의 효율적 관리 추진
- ▶ 주요내용
 - ① 군수품 납품 시 국방 표준 바코드 부착 의무화
 - ②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납품조서 제출할 경우도 바코드 부착
- ▶ 시행일 : 2011.6.1

육군 베레모 착용

국방부 물자관리과
(☎ 02-748-5720)

■ 육군은 현재 착용하고 있는 전투모 및 근무모를 대체하여 2011년 10월부터 베레모를 착용합니다.

- 디지털무늬 신형전투복과 현 얼룩무늬 전투복에 혼용하여 착용하며, 육군 장병의 강인함, 명예, 자긍심을 대외에 군 이미지를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군 베레모 착용>

- ▶ 추진배경 : 신형전투복 보급에 따른 얼룩무늬 전투모 개선
- ▶ 주요내용
 - ① 신형 디지털무늬 보급에 따라 육군의 얼룩무늬 전투모를 베레모로 대체하여 보급
- ▶ 관련법규/시행일 : 군인 복제령 / 2011. 10. 1
- ▶ 형상변경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제도 도입**

병무청 징병검사과
(☎ 042-481-2945)

- 병역면탈 범죄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고의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언제라도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병역 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확인신체검사의 대상 및 절차 등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권한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제거하였으며,
- 확인신체검사 결과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사전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이 제도는 오는 11.25.부터 시행됩니다.

<병역면탈 의심자 확인신체검사 실시>

- ▶ 추진배경 : 병역처분 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속임수를 써서 신체검사만 통과하려는 심리적 작용으로 병역면탈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병역면탈 범죄 근원적 차단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 ▶ 주요내용
 - ① 질병, 심신장애로 신체등위 4급부터 7급까지 판정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
 - ② 확인신체검사 결과 병역면탈이 확인된 사람은 당초 병역처분 취소 후 병역처분 변경
 - ③ 확인신체검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하고, 사전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인권침해 소지 제거
- ▶ 시행일 : 2011.11.25.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입영기일연기제도
신설**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15)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점은행제 학습기관에서 학위취득을 위해 수강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입영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동안 일반대학교나 전문대학과 같은 제도권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입영연기가 가능하였으나 학점은행제 학습기관에서 학위취득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영연기 제도가 없어 학력차별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7.1.부터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학점은행제 학습기관에서 수강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입영기일연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에 대한 입영기일연기 신설>

- ▶ 추진배경 : 제도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해 배려 및 입영기일 연기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로 민원 편의 제고
- ▶ 주요내용
 - ① 교육훈련기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 ② 입영기일연기대상 : 고졸학력자로서 출석수업형태로 수강중인 사람
 - ③ 연기기간 : 통산 2년의 입영기일연기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 시행일 : 2011.7.1.

**동반입대병 ·
직계가족병
범죄경력 제한기준
완화**

병무청 현역모집과
(☎ 042-481-2746)

- 육군 동반입대병 및 직계가족병으로 지원입영 시 범죄경력 사유 입영비대상 기준을 벌금형 이상에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벌금형 선고 범죄경력자는 현역병 모집분야 중 동반입대병 및 직계가족병 입영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타군과의 다른 기준 적용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 및 민원 불만이 지속 제기 되어 왔었습니다.
 - 2011년 6월 입영자 부터는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의 범죄경력 이상자만 제한함으로써 민원 불만 해소 및 병역이행 형평성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 ※ 단, 동반입대병의 경우 12대 강력범죄에 의한 벌금형 선고자는 종전 기준 적용

☞ 병무청 홈페이지 육군병모집 지원절차 및 안내

<동반입대병 · 직계가족병 벌금형 선고자도 입영가능>

- ▶ 추진배경 : 동반입대병 및 직계가족병의 범죄경력 제한기준 완화 (벌금 → 징역·금고)로 입영희망자 등의 불만 해소 및 병역이행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① 동반입대병 입영 비대상 : 징역 또는 금고의 형 실형(집행유예 포함) 선고자
 - ※ 단, 12대 강력범죄에 해당되는 범죄에 의한 벌금형은 종전과 동일
 - ② 직계가족병 입영 비대상 : 징역 또는 금고의 형 실형(집행유예 포함) 선고자
- ▶ 시행일 : 2011. 6월 입영자 부터

**국외이주자 중
현역병복무지원자에
대한 선발가산점
부여**

병무청 현역모집과
(☎ 042-481-2741)

■ 국외이주자가 각 군 현역병 모집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었음에도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하고자 각 군 병 모집에 지원하는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에 대하여 '11년 8월 지원자 (육군 9회차, 해군·해병대·공군 8회차)부터 선발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가산점은 각 군 모집 전반에 걸쳐 부여되나, 육군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동반입대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 카투사 및 어학병 등 개별모집병 일부 분야는 제외됩니다.
- 군별 가산점은 육군 3점, 해군 3점, 해병대 6점, 공군 3점으로 1차 및 최종선발 모두 반영됩니다.

• 국외자원의 병역의무 이행은 '04년 마련된 '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원 제도'를 통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들의 병역이행은 국내·외에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전체 국외이주자 중 병역을 이행하는 인원은 아직 미약한 수준으로 지원자격 확대, 가산점 부여 등의 병역이행 편의성 제고 노력을 통해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 모병센터

<국외이주자 중 현역병복무지원자에 대한 선발가산점 부여>

- ▶ 추진배경 : 국외자원에 대한 각 군 모집병 지원 시 선발 가산점 부여를 통한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 확산
- ▶ 주요내용
 - ① 가산점 부여대상 및 절차
 - 대상 : 국외이주자 중 현역병복무지원자
 - 점수 : 육군 3점, 해군 3점, 해병대 6점, 공군 3점
- ▶ 시행일 : 2011. 8월 지원 시부터(육군 9회차, 해·공군 8회차)

**거주지 이동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완화**

병무청 사회교육복무과
(☎ 042-481-3011)

-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세대일부가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옮긴 거주지에서 사실상 출·퇴근 근무가 곤란할 경우 복무기관 재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 공익근무요원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은 전가족의 주소지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복무기관 재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세대일부 주소지 이전인 경우에는 거주지 이전으로 사실상 복무가 곤란하더라도 복무기관 재지정이 되지 않아 출퇴근 근무가 불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오는 11. 25.부터 공익근무요원 복무자로서 거주지를 이전하여 이전한 주소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할 경우 복무기관장을 통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을 하면 이전한 주소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기관으로 복무기관 재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이동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요건 완화>

- ▶ 추진배경 : 다원화, 핵가족화 등 사회환경 및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직업·학업 등의 사유로 단독 또는 세대일부 거주 사례의 일반화에 따라 세대일부 전출자의 복무기관 재지정으로 민원편의 제공
- ▶ 주요내용
 - ① 동거 가족의 일부 거주지 이동의 경우에도 출퇴근 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복무기관 재지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 시행일 : 2011.11.25

**근무태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처벌 강화**

병무청 사회교육복무과
(☎ 042-481-3011)

-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관 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지각·조퇴·근무장소를 이탈하여 8회 이상 경고처분이 되었을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지각·조퇴·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경고처분을 하고 경고 1회당 5일 연장복무를 하고 있으나 고발이 되지 않음에 따라 제도를 악용한 복무위반 행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여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지각·조퇴·근무장소를 이탈하여 8회 이상 경고처분이 되었을 경우 고발하도록 하여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 오는 11.25.부터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지각·조퇴·근무장소를 이탈하여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을 경우 복무기관장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됩니다.

<근무태만 공익근무요원 처벌 강화>

- ▶ 추진배경 :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무단 지각·조퇴·근무장소 이탈의 복무위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고발 규정이 없어 제도를 악용한 위반행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반복적·고의적 복무위반 행위자를 고발하도록 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복무기간 장기화 방지 및 복무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①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관 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지각·조퇴·근무장소를 이탈하여 8회 이상 경고처분이 되었을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개선
- ▶ 시행일 : 2011.1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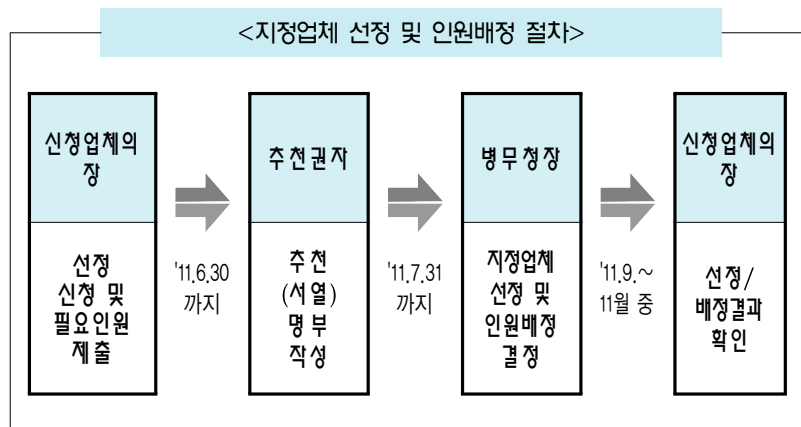
산업기능요원제도 개선

병무청 산업지원과
(☎ 042-481-2816)

■ '12년부터 폐지 예정이었던 산업기능요원제도가 '15년까지 연장 존치함에 따라 산학연계 특성화고 졸업자 위주로 인력을 지원하고 복무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제도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11년도 지정업체(산업체) 선정은 지원가능 인력규모를 고려한 범위 내에서 선정하되, 선정순위를 구분하여 3자간(학교-학생-업체) 협약형태인 산학 맞춤형 특성화고 협약업체와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협약업체를 1,2순위로 우선 선정하고, 기타 업체를 대상으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겠습니다.
- '12년도 인원배정은 배정순위를 구분하여 3자간(학교-학생-업체) 협약 형태인 산학 맞춤형 특성화고 협약업체(1순위)와 산학 협력형 특성화고 협약업체(2순위)에 우선배정하고 잔여 인원에 대하여 복무관리 우수 업체 등에 배정하겠습니다.

☞ 2011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2012년 인원배정 고시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지침 개정**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 02-2079-4182)

- 정비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 무경험 정비업체에 의해 정비하자가 과다하게 발생함에 따라 정비품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능력 확인대상에 정비품목을 포함시키고, 각 소요군에서 정비능력을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 또한 생산능력 보유개념을 확대하여 임차한 경우도 생산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임차를 인정함으로써 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군수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하게 되어 업체간 경쟁강화로 군수품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지침 개정>

- ▶ 추진배경 : 정비품질 향상 도모 및 중소기업체 경제적 부담 완화
- ▶ 주요내용
 - ① 업체 생산능력 확인대상 확대 : 정비품목 포함
 - ② 보유개념 확대 : 임차한 경우도 생산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
- ▶ 시행일 : 2011.5.12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 02-2079-4122)

■ 국방부에서 군수품 납품 시 국방 표준 바코드 부착을 의무화함에 따라 바코드 관련사항을 계약조건에 반영하기 위하여 계약특수조건 표준(3종)을 개정하였습니다.

※ 계약특수조건 표준 3종 : 제조·구매(일반 및 방산, 특정조달), 함정건조

- '11. 6.1일 계약분부터 모든 군수품은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에 따라 바코드를 부착하여 납품해야 하며, 기존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납품조서를 제출할 경우 바코드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의하면 예외없이 바코드를 부착해야 합니다.
- 국방 표준 바코드 부착을 의무화함에 따라 군수품 현장관리 자동화가 이루어져 군수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

- ▶ 추진배경 :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제정에 따른 계약조건 반영
- ▶ 주요내용
 - ① 군수품 납품 시 국방 표준 바코드 부착 의무화
 - ②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납품조서 제출할 경우도 바코드 부착
- ▶ 시행일 : 2011.6.1

9. 교육·문화

이동통신 요금 인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이용제도과
 (☎ 02-750-2551)

-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물가부담 등의 상황과 스마트폰 보급확대에 따른 다양한 인터넷 콘텐츠의 보다 편리한 이용이 통신비 지출 증가로 이어져 가계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 물가안정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인가 사업자 (SKT)를 중심으로 협의를 거쳐 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모든 요금제에 기본료를 1천원 인하 하고, 문자 50건을 무료로 제공하게 됩니다.
 - 스마트폰 요금제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패턴에 맞게 음성·문자·데이터를 선택 구성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선택요금제를 마련하였습니다.
 - 음성소량이용자를 위해 선불요금 효율을 기존 4.8원/1초→4.5원/1초로 인하하였습니다.
 - ※ SKT의 요금인하는 연간 약 7,400억정도 요금인하 효과로 1인당 연 2만8천원(4인가구 기준 연11만4천원)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

☞ 이동통신요금 인하 발표(<http://www.kcc.go.kr>, 보도자료)

<이동통신 요금 인하>

- ▶ 추진배경 : 물가안정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동통신 요금 인하 방안 마련
- ▶ 주요내용
 - ① 모든 요금제에 이동통신 기본료를 1천원 인하
 - ② 문자 50건 무료 제공
 - ③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스마트폰 선택요금제 출시
 - ④ 음성 소량이용자를 위해 선불요금 4.8원/1초→4.5원/1초로 인하
 - ※ SKT가 먼저 이동통신 요금인하 발표
- ▶ 시행일 : 2011.7월(선택요금제 등), 9월(기본료 인하, 문자제공)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이용자
선택사항으로 변경**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02-750-2775)

■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사이트 회원가입 등을 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에 동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용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도 웹사이트 회원 가입 등을 불편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 그간 일부 기업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와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함께 받거나 각각에 대해 별도로 동의를 받더라도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 자체가 되지 않도록 회원가입 절차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용자들은 불필요하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에 동의해야 하는 점이 있었으나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없어 개선을 유도하는데 곤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선택권을 더욱 강화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개정(2011.4.5 공포, 2011.7.6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 등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구분하여 받도록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선택권 강화>

▶ 추진배경 : 인터넷 회원가입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별도로 받도록 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

▶ 주요내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터넷 사업자 등)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취급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개정(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 시행일 : 2011.7.6

【붙임】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규정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③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제공에 대한 동의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아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 취급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02-2100-6688)

- 대통령령에 근거한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보다 정교화·간소화 된 모습으로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 교과부는 전국 통일의 공통사항만을 제시하고 세부평가 시행은 시·도 자율에 일임함으로써, 지역별·상황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가 실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평가대상 및 평가문항을 간소화함으로써 평가자의 부담을 줄였으며, 평가문항 선정 등의 평가 진행과정에 학부모님들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 NEIS와 연계한 온라인평가시스템 개발 및 다양한 인증 방식의 도입을 통하여 응답결과 노출 및 자녀에 대한 불이익의 불안감을 해소하였습니다.

☞ [Http://tf.edumet4u.net](http://tf.edumet4u.net)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 ▶ 추진배경 :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고, 평가 참여에 대한 편의성 및 익명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 ▶ 주요내용
 - ① 평가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확대
 - ② 평가대상 및 평가문항에 대한 간소화
 - ③ NEIS와 연계한 온라인평가시스템 개발을 통한 익명성·보안성 강화
- ▶ 시행일 : 2011년 9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투명성
제고 및 참여확대**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지원과
(☎ 02-2100-6280)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투명성 제고 및 참여확대를 위해,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회의 안건 사전 통지와 심의 결과 공개를 추진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일과 후나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회의 일시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사전 통지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 개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학생생활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이 발언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이와 더불어, 학생수 100명 미만의 학교에서는 위원의 구성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이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하거나 알선한 경우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투명성 제고 및 참여 확대>

▶ 추진배경 : 교육환경 변화와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 추진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및 중요성이 강화되어 단위 학교 책임 경영을 위한 학부모, 교원 등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 참여 활성화 필요

▶ 주요내용

- ① 회의 전에 안건을 위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화
- ②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심의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③ 해당학교의 이권에 개입한 운영위원의 자격 상실
- ④ 학부모 부담 경비 심의시 일반 학부모 대상 의견 수렴
- ⑤ 학생생활 관련 안건 심의시 학생대표 등에게 발언권 부여 및 제안하게 할 수 있음
- ⑥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에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 시행일 : 2011.3.18

**유치원비 수납방식
월납제 도입**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 02-2100-6681)

- 유치원비를 매분기별로 납부함에 따른 학부모의 유치원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매월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 학부모가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는 유치원비를 분기별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등 불편이 있었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유치원비도 매월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5월부터 유치원비 월납이 가능합니다.

<유치원비 수납방식 월납제 도입>

- ▶ 추진배경 : 유치원비 수납방식에 월납제를 도입하여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
- ▶ 주요내용
 - ① 수업료를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 학부모의 신청에 의해 분기납 가능
 - ② 입학금은 입학시에 전액 납부
 - ③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경감됨
- ▶ 시행일 : 2011.4.2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환경안전팀
(☎ 02-2100-6888)

- 연구실 안전 확보 및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등 연구 활동종사자 보호를 통해 선진 연구환경 구축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동 법률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2006년 4월 시행된 이후,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자리매김하였고,
- 금년에는 법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법률을 개정('11.3.9 공포)하였으며,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연구실안전 실태조사 실시, 안전 환경관리자 지정·운영 및 연구실 사고의 보고 근거 마련, 안전관리비 계상 및 보험가입 보고의무 완화, 교육·훈련 개선, 건강검진 실시 세부기준 마련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제고되었습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 개정>

- ▶ 추진배경 :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제 구축을 가속화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 유도
- ▶ 주요내용
 - ① 연구실 안전관리 기초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제4조 제3항 신설)
 - ②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근거 마련 (제6조의2 신설)
 - ③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의무 완화 (제10조제2항 개정)
 - ④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고의무 부과(제15조의2 신설)
 - ⑤ 대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 마련 (제18조의2 신설)
- ▶ 시행일 : 2011.9.10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자본금
1천만원으로 하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 02-3704-9625)

-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자본금을 기존 1억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하여 문화콘텐츠 제작사들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 현재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자본금으로 1억원이 필요하였으나, 이는 영세한 제작사들에게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개정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자본금을 상법상 일반 유한회사의 설립자본금 수준인 1천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 또한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후 3개월 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 신청하도록 법에 명확히 명시하여 설립 후 등록기한에 대해 궁금해 하던 민원인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습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자본금 1천만원으로 하향>

- ▶ 추진배경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자본금 기준을 「상법」상 유한회사 수준인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및 활용을 활성화
- ▶ 주요내용
 - ①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자본금 1천만원으로 하향
 - ②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후 3개월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신청
 - ③ 등록하지 않고 문화산업전문회사 명칭을 사용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업무를 수행 또는 투자자를 모집한 경우 과태료 1천만원 부과
 - ④ 등록기간 내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백만원 부과
- ▶ 시행일 : 2011.8.26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율등급분류 제도
도입**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02-3704-9362)

- 최근 활성화된 오픈마켓 시장에서 게임물을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한 일괄적인 사전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유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기존에 게임물을 일반에 이용·제공하거나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해 일괄적인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에 따라 최근에 활성화된 오픈마켓에서 게임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 특히 아이폰 등 일부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는 게임콘텐츠의 유통을 국내에서는 차단을 하고 있어 국내 게임콘텐츠 개발사업자 및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의 일괄적인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오픈마켓 사업자 등이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7월 6일부터 오픈마켓 게임물의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권한을 부여받은 오픈마켓 사업자 등으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픈마켓 사업자 등에게 등급분류 권한 부여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율등급분류 제도 도입>

- ▶ 추진배경 :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게임물의 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오픈마켓상게임물의 유통을 활성화 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게임물의 등급분류 권한을 오픈마켓 사업자 등에게 부여
 - ② 게임물 등급위원회를 통해서 등급분류 받는 기간이 단축되고 오픈마켓 사업자 등이 직접 등급분류를 함에 따라 오픈마켓상 게임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 시행일 : 2011.7.6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개선
전문예술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02-3704-9518)

■ 그동안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기준이 시도별로 차이가 있어 생겼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범위 및 지정취소 사유를 문화예술진흥법에 명시하여 통일성 있게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우수 예술단체를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 현재 동 제도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통일성 있는 운영이 다소 어려웠고 지정 받고자 하는 문화예술·단체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고자 문화예술진흥법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 하였고 2011. 11.26.부터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은 자 중 영리법인·단체인 경우에는 2011.11. 26.부터 2년까지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인정하도록 함

■ 또한, 전문예술법인만 가능했던 기부금품 모집을 전문예술 단체에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 이는 문화예술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고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전문예술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 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자료마당>법령정보>최근 공포법령>문화예술진흥법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개선 및 전문예술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확대>

- ▶ 추진배경 : 전문예술법인·단체 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
- ▶ 주요내용
 - ①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범위 및 취소사유 일원화
 - ② 전문예술법인에 한정되던 기부금품 모집을 전문예술단체까지 허용 확대
- ▶ 시행일 : 2011.11.26.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선 - 선택적
기금제 도입 등**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02-3704-9512)

■ 건축물 신·증축 시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를 개선하여, 직접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2011.5.25)하였습니다.

*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 일정 규모(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비의 일정 비율(건축비용의 0.7%)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문화예술진흥법 9조)

- 1995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가 의무화된 이래 동 제도의 법적 의무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축주, 미술계 등 각 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민간건축주의 선택에 따라 의무이행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사회문화적 기여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선택적 기금제에 따라 출연되어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아카이브 구축, 제도 홍보 및 매뉴얼 제작 등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운용 및 지역·전국 단위 공공미술 진흥사업 지원 등 대한민국 공공미술의 발전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입니다.
- 이번 법 개정안은 올해 11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주의 법적의무를 완화하면서도, 지역 주민이 아름다운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자료마당)법령정보)최근 공포법령)문화예술진흥법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선>

- ▶ 추진배경 :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선을 통한 건축주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효과적인 공공미술 진흥정책 추진 필요
- ▶ 주요내용
 - ① 건축주의 선택에 따라 미술작품의 직접 설치 대신 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함
 - ②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공공미술’의 개념을 도입함
- ▶ 시행일 : 2011. 11. 26.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공연장의 범위 축소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02-3704-9503)

■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공연장의 규모를 객석 수 100석 미만 (객석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바닥 연면적 100제곱미터)에서 50석 미만(객석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바닥 연면적 50제곱미터)으로 축소하였습니다.

- 50석에서 100석 사이의 공연장을 새로이 등록 대상으로 함으로써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공연장의 안전성을 제고하여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공연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연장 지원 및 공연장 설치 경영 장려 정책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내용은 7월 6일부터 시행되며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됩니다.

* 현재 운영중인 50석에서 100석 사이의 공연장은 12월 31일까지 등록

☞ 객석 수 50석 이상이면 공연장으로 등록해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공연장의 범위 축소>

- ▶ 추진배경 : 소규모 공연장의 안전성 제고
- ▶ 주요내용
 - 공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공연장의 범위를 100석 미만에서 50석 미만으로 축소
- ▶ 시행일 : 2011.7.6
(이번 개정으로 새로이 등록 대상이 되는 공연장은 2011.12.31까지 등록)

**공공도서관에서의
기부금품 접수
명확화와 국·공유
재산의 사립도서관
무상사용 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과
(☎ 02-3704-2715,
2719)

■ 도서관 현장에서 기부금품 접수에 따르는 절차를 간소화·명확화 함으로써 도서관 일선에서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공립 공공도서관에 자발적 기부금품(도서, 물품, 금전 등)이 접수된 경우에는 「기부금품에 관한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없이도 공립 공공도서관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이를 명확히 하여 도서관 현장에서의 혼란을 해소하였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알림마당)보도자료)도서관법 개정·공포

■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 장이 사립 공공도서관에 국유·공유재산인 폐동사무소·폐교 등 유휴 공공시설(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알림마당)보도자료)도서관법 개정·공포

< 개정 도서관법 주요 내용 >

- ▶ 추진배경 : 공공도서관의 기부문화 활성화,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공공도서관 활성화 및 주민의 이용 편의 도모
- ▶ 주요내용
 - ①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공립 공공도서관이 자발적 의사에 따른 기부금품 접수 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을 사립 공공도서관에게 무상으로 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 시행일 : 2011. 7. 6.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확대 등
행정절차 간소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 02-3704-9732)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시 문화부 장관과 사전 협의절차 마련

- 무분별한 관광자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광(단)지 지정시 관광자원 개발의 주무부처인 문화부와 협의하여 지정토록 관광진흥법을 개정·시행합니다.
- 우리 부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신규 관광(단)지도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바('09.3.25 법 개정) 있습니다.
- 동 조치를 통해 관광자원개발 소요기간이 약 8개월 단축되어 관광자원개발 절차가 간소화 된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반면에 관광자원 난개발 및 편법 지정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중앙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습니다.
- 이에 관광(단)지 지정시 문화부와 사전협의하여 지정토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함으로써 향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관광자원의 난개발을 예방하고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자원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실효(失效)제도 도입

- 관광단지 지정 후 사업의 중단 및 방치 등 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어서 관광단지의 개발이 장기간 지연 되어 난개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광단지 지정 후 일정기간 내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관광진흥법」에 관광단지 실효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동 제도 도입을 통하여 실효제도를 기 운영중인 관광지 제도와 형평성을 제고하고 관광단지 사업의 중단 및 방치를 방지하여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발사업의 추진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확대

- 관광개발 분야의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관광(단)지 조성 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사항을 확대 시행합니다.
- 관광진흥법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조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 2건을 추가함으로써 향후 관광개발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특례적용 확대

- 관광특구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를 위해 관광 활동 관련 특례규정을 확대 시행합니다.
- 관광특구내 호텔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 제공을 위해서 공개공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관광특구 진흥에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향후 관광특구 내 적극적인 관광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광지 및 관광단지 관련 관광진흥법 개정안내>

- ▶ 추진배경 : 지속적인 관광자원의 개발 촉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률안 정비
- ▶ 주요내용
 -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시 문화부 장관과 사전 협의절차 마련
 - ②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실효(失效)제도 도입
 - ③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확대
 - ④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특례적용 확대
- ▶ 시행일 : 2011.7.6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제한 미성년자
(만 20세 미만)에서
청소년(만 19세 미만)
으로 변경**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02-3704-9815,
9816)

-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제한을 미성년자에서 청소년으로 개정하여 복권의 구매제한 연령과 동일하게 통일 하였습니다.
-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진흥투표권은 「민법」상 미성년자 (만 20세 미만)에게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복권의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구매 제한 나이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등 상이한 규정으로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많았습니다.
- 이를 시정하기 위해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제한 연령 또한 복권과 동일하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 여러분의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법령정보>연행법령>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제한을 미성년자에서 복권 구매제한인 청소년으로 개정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함.
- ▶ 주요내용
 - ①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제한을 당초 미성년자에서 청소년으로 변경
- ▶ 시행일 : 2011. 4. 5.

10. 농식품 · 산림

쌀 등급 의무표시제 도입
 농림수산물부 식량정책과
 (☎ 02-500-1976)

■ 2011년 11월 1일부터 쌀 포장재에 쌀의 품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양곡표시제가 변경됩니다.

- 양곡표시제는 쌀의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쌀 품질향상을 위해 '05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품위 및 품질” 항목은 권장사항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기존 양곡의 표시 사항(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구 분	표시 항목
의무사항	①품목 ②산년 ③중량 ④품종 ⑤도정연월일 ⑥생산자 주소 등
권장사항	①품위 ②품질(단백질함량, 완전립 비율, 품종순도)

- 그러나 쌀 가공·유통업체 등의 권장사항 표시 이행률이 낮아 소비자 알권리 확보에 제약 요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 품위표시 : '06) 47.9% → '10) 35.7%(12.2% ↓)

* 품질표시 : '10년 기준 5% 수준으로 대부분 미표시

- 이에 따라 권장사항인 ‘품위 및 품질표시’를 의무화(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1.4.13)하고, ‘품위’는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등급’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세분화(3등급→5등급)할 계획입니다.

* 국산쌀의 고품질화에 필수적인 “단백질 함량표시”는 도정업체 검정시설 보완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12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쌀 등급 표시제를 의무화하게 되면 소비자 알권리가 크게 개선되고, 가공·유통업체의 품질경쟁 유도를 통해 우리쌀의 품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조회>양곡관리법

<양곡표시제도 개선 : 쌀 등급의무표시제 도입>

▶ 추진배경 : 소비자 알권리 확보 및 우리쌀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해 쌀의 “품위 및 품질 표시”를 의무화

▶ 주요내용

- ① 현행 양곡표시제 표시항목 중 권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쌀 품위 및 품질표시”를 의무화
- ② 다만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품위’는 ’11년 11월부터 ‘등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비자 선택 폭 확대를 위해 기존 3개 등급 (특, 상, 보통)에서 5개 등급(1~5등급)으로 세분화, ‘품질’ 표시는 우리 쌀의 고품질화 유도에 필요한 ‘단백질 함량’만을 표시하도록 개선하되 쌀 도정업체의 검정시설 완비 등 준비기간을 위해 ’12년 11월부터 시행 예정

[항목의 재분류]

현 행		변 경
①품위	수분, 분상질립, 피해립, 열손립, 싸라기, 이물, 이종곡립, 벼, 돌	현행 품위 항목에 <u>완전립비율을 감안하여 등급으로 명칭변경</u>
②품질	단백질함량, 완전립비율, 품종순도	단백질 함량

* 기존 품질 중 외향적 특징이 강한 완전립비율은 품위항목에 포함

[표시방법 개선]

현 행	개 선
특, 상, 보통	등급 : 1등급, 2, 3, 4, 5, 미검사
단백질함량 : 6.0%이하, 6.1~6.5, 6.6이상	단백질 : 수(낮음), 우(보통), 미(높음), 미검사

▶ 시행일 : 2011. 11. 1일

※ ‘단백질함량표시’는 ’12.11월부터 시행 예정

**배합사료
제조과정에 항생제
첨가 금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02-500-2070~1)

■ 2011년 7월 1일부터 배합사료 제조과정에 항생제 첨가가 전면 금지 됩니다.

- 2005년부터 정부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료에 첨가하는 항생제 종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왔습니다. [근거 :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농식품부 고시)’]

* 사료용 항생제 : (당초) 44종 → ('05.5) 16종 → ('09.1) 9종 → ('11.7) -

◇ '09.1월부터 내성율이 높은 항생제 2종과 인수공용 항생제 5종 감축

-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옥시테트라사이클린4급암모늄
- 인수공용 항생제 : 바시트라신아연, 황산콜리스틴, 황산네오마이신, 염산린코마이신, 페니실린

◇ '11.7월부터 항생제 8종과 항균제 1종 감축 계획

- 항생제 : 엘라마이신, 타이로신, 버지니아마이신, 바시트라신메칠렌 디살리실레이트, 범버마이신, 티아무린, 아프라마이신, 아빌라마이신
- 항균제 : 설파치아졸

- 2011년 7월 1일부터 배합사료에 항생제 첨가가 금지됨으로써 항생제 오남용 방지 및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배합사료에 항생제 첨가가 금지되더라도 농가에서는 가축의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사료에 항생제를 첨가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행정규칙조회>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사료내 항생제 첨가 금지>

- ▶ 추진배경 :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통한 축산물 안전성 제고 및 소비자 신뢰 회복 추진
- ▶ 주요내용
 - 사료내 항생제 첨가 전면 금지(항생제 8종, 항균제 1종)
- ▶ 시행일 : 2011. 7. 1

**음식점 수산물 등
원산지표시제 확대**

농림수산물부
소비안전정책과
(☎ 02-500-2097)

■ 2011년 8월부터 음식점에서 찌개용, 탕용 배추김치 및 수산물 6품목에 대하여도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합니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품목('10년)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쌀, 배추김치(반찬용), 오리고기

-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범위를 찌개용 및 탕용까지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 그리고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6개 품목을 생식용 또는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2011년 8월부터 확대 예정인 음식점 원산지 대상품목은 6개월간 현장지도·홍보를 거쳐 2012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제 대상품목을 확대함으로써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조회>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 ▶ 추진배경 :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통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 ▶ 주요내용
 - ①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표시범위를 찌개용, 탕용까지 확대
 - ②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은 기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에 수산물 6개 품목(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추가
- ▶ 시행일 : 2011. 8월부터 지도·홍보 기간 운영(2012.2월 본격시행)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품질인증제
시행**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2-500-2127)

■ 2011년 9월 10일부터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 친환경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농업인들의 관련 자재에 대한 수요는 확대되고, 효능이 검증된 제품을 요구함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자재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농업인들은 효능이 검증된 제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자재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또는 단체)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민간인증기관에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동제도가 시행되면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자재의 개발촉진과 전반적인 품질향상이 유도되고 농업인은 질이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조회>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품질인증제 시행>

- ▶ 추진배경 : 친환경유기농 자재에 대한 효능검증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전반적인 품질 향상 및 농업인 보호
- ▶ 주요내용
 - ①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품질인증제도 도입
 - ② 9.10.부터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대해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단체, 농업인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민간인증기관에 신청하면 품질인증 가능
 - ③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개발촉진과 전반적인 품질향상이 유도되고 사용 농업인은 질이 좋은 유기농자재 제품 구입이 가능
- ▶ 시행일 : 2011. 9. 10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관 사후관리 강화**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2-500-2127)

- 2011년 9월 10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 최근 일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인증기준이나 인증 심사의 절차·방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잃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하기 위해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 이나 심사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동제도 시행으로 인해 친환경인증품의 소비자 신뢰가 확보 될 경우 인증품의 소비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조회>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사후관리 강화>

- ▶ 추진배경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인증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인증기관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친환경 인증품 소비자 신뢰확보
- ▶ 주요내용
 - ①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사후관리 강화
 - ② 9.10.부터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이나 심사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인증기관 지정 취소 또는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③ 친환경인증품의 신뢰확보로 소비·유통 활성화
- ▶ 시행일 : 2011. 9. 10

**농약 포장지
글자크기 표시
최소기준 신설**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 031-299-2603)

■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약 사용자가 사용정보를 정확히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농약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포장지에 표시되는 주요 정보의 글자크기를 최소기준(5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농약은 오남용 우려가 많기 때문에 농약명칭·제제형태·사용방법 등 많은 정보를 포장지에 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글자들의 크기가 작아 고령 농업인들이 정보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 농약을 기준량보다 많이 사용하거나 사용시기·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등 농업현장에서 불편이 많았습니다.
- 이에 농촌진흥청은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농업인이 많이 보는 정보 위주로 최소한의 글자크기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2011.5.12일부터 새로이 등록하는 농약 등은 개정된 규정대로 글자 크기를 지켜야 하며, 농업인은 사용방법·시기 등을 더욱 확실하게 숙지하게 되어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적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농약의 표시기준 중 일부 개정 (농촌진흥청 고시)

< 농약 포장지 글자크기 표시 최소기준 신설 >

- ▶ 추진배경 : 농약 포장지 글자크기가 작아 발생하는 오남용 등 농업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많이 보는 정보에 대한 글자크기 최소기준을 마련
- ▶ 주요내용
 - ① 농진청 고시를 개정하여 농약의 주의사항 및 사용방법 등 글자크기 최소기준을 신설
 - ② 적용 병해충의 수에 따라서도 글자크기 최소기준(5~8포인트)을 규정
 - ※ 농약품목별 적용대상 등록수: 5개 이하(8포인트/63%), 6~10개(7/18%), 11~30개(6/16%), 31개 이상(5/3%)
 - ③ 농약 독성분류 색띠 표시 크기기준을 다소 축소: 15%(10mm 이상) → 10%(5mm)
- ▶ 시행일 : 2011. 5. 12. (이미 등록된 농약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

**연구클린센터
(Clean Center)
구축**

농촌진흥청 연구클린센터
(☎ 031-299-2010)

■ 농촌진흥청은 연구원 중심의 과제 관리를 통하여 고객 만족도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사업운영과 과제관리 업무를 분리함으로써 연구관리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클린센터’를 구축(11.4.6)하였습니다.

- 연구비를 집행하고 관리를 함에 있어 부적절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강국 이미지 확립 및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 실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연구관련 각종 부정행위의 사전 방지를 위한 전문 관리부서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 이에 농촌진흥청은 ‘연구클린센터’ 출범을 통하여 연구비를 올바르게 집행·관리하고 연구원의 편리성을 증대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 연구클린센터 운영으로 연구과제 선정 시 타 부처 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이해관계에 따른 불공정을 해소하고,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과 특히 정보 검색을 강화하여 연구과제의 중복 수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등 투명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연구비를 올바르게 집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비 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인터넷뱅킹 등을 연계한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장비·재료의 허위 구입 및 증빙자료 중복 사용 등의 부적절한 연구비 집행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산림청 산지관리과
(☎ 042-481-4123)

- 30ha이상의 규모로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전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를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최근 몇 년간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허가기준이 되는 산림조사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2011.7.1일부터는 30ha이상의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지전문기관이 모두 공개토록 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 30ha 이상의 산지전용허가시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함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 도입>

- ▶ 추진배경 : 산지전용허가의 핵심기준이 되는 “산림조사서” 작성에 대한 사업자와 조사자와의 접촉소지를 없애고, 전문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산지전문기관이 타당성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산지전용 허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 주요내용
 - ① 산지전문기관에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신청(신청자가 비용 부담)
 - ※ 조사내용 : 산림조사, 표고경사도조사, 보전산지편입 비율 등 허가기준 검토
 - ② 산지전용허가 신청(타당성조사서 첨부)
 - ③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필요시 산지전문기관의 조사의견 청취)
- ▶ 시행일 : 2011.7.1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제도 도입

산림청 산지관리과
(☎ 042-481-4294)

-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 후 산지복구 공사에 대해 복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산지복구감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그동안 산지복구공사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체계적 복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산지복구 공사에 대하여는 산림기술사 등 전문인력이 감리를 실시함으로써, 복구의 부실을 방지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지로 복구·복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산지복구공사의 경우 전문가에게 감리를 받아야 함

<산지복구공사 감리제도 도입>

- ▶ 추진배경 : 산지복구공사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복구공사를 지도감독하고 준공검사를 수행하고 있어 공사전반에 대한 전문성 있는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었음
- ▶ 주요내용
일정이상(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 1ha 이상 / 토석채취 5ha 이상) 면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의 경우 산림기술사,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할 수 있는 자의 감리를 받아야 함
- ▶ 시행일 : 2011.7.1

**특별관리임산물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도입·
시행**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 042-481-4208~9)

-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의 품질강화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그 동안 산양삼의 음성적 거래,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 잔류 농약·중금속 오염과 안전성 등 부정적인 유통·판매에 대한 보도로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고 선량한 생산자들이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 앞으로는 소비자의 신뢰회복과 선량한 생산자들의 피해방지를 위한 산양삼의 철저한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생산적합성 조사, 생산신고, 품질검사, 품질표시 등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산양삼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함.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품질관리제도 도입시행>

- ▶ 추진배경 : 산양삼의 품질강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하위법령을 개정하여 품질관리제도 도입
- ▶ 주요내용
 -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산양삼의 품질 관리제도 도입
 - ② 산양삼에 대해 생산적합성조사, 생산신고, 품질검사, 품질표시 등을 의무화하는 품질관리제도 시행
 - ③ 산양삼의 품질강화를 통해 국민신뢰 회복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
- ▶ 시행일 : 2011. 7월(예정)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 신설**

산림청 숲길정책팀
(☎ 042-481-8876,
4191)

■ 누구든지 숲길 또는 주변의 토지 안에서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와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
-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나 설치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 숲길 훼손과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 등 재물 손괴 행위를 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오물·쓰레기 버리는 행위와 표시판 이전·파손 등의 행위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숲길주변에서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함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규정>

▶ 추진배경 : 숲길 이용자의 부주의 또는 수요 급증으로 인한 조성된 숲길의 훼손과 농작물 피해·오물투기행위, 안내판 등의 손괴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

▶ 주요내용

- ① 숲길 훼손행위,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 손괴행위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②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표시판 등 손괴행위 금지에 대해 처벌규정 도입
 - 위반시 2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
- ③ 이용자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둠으로서 질서유지와 이용체계 확립으로 서비스의 질 제고에 기여

▶ 시행일 : 2011. 9. 10.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완화**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 042-481-4195,
4191)

■ 산림사업법인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림사업법인 등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그 동안에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시 사무실면적 보유(20~30㎡)를 의무화하고, 법인의 종류별로 각각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영세한 법인에게는 재정적 부담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산림사업법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림사업법인의 사무실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둘 이상의 산림사업법인 등록 시 자본금 및 기술인력 중복을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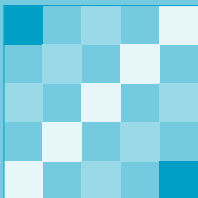
☞ 산림사업법인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림사업법인 등록 요건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완화 제도·시행>

- ▶ 추진배경 :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위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숲가꾸기, 산림토목 등 다수 업종의 법인 보유가 쉽도록 함
- ▶ 주요내용
 - ①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 중 사무실 면적을 폐지
 - ② 둘 이상의 산림사업법인 등록 시 자본금 및 기술인력을 중복 인정하는 특례제도 도입
- ▶ 시행일 : 2011. 9월(예정)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 기획재정부	219
○ 교육과학기술부	222
○ 법무부	223
○ 국방부	225
○ 행정안전부	225
○ 문화체육관광부	228
○ 농림수산식품부	231
○ 지식경제부	232
○ 보건복지부	234
○ 환경부	238
○ 고용노동부	241
○ 여성가족부	242
○ 국토해양부	242
○ 방송통신위원회	258
○ 국가보훈처	258
○ 공정거래위원회	259
○ 금융위원회	261
○ 국민권익위원회	261
○ 관세청	261
○ 조달청	262
○ 병무청	263
○ 방위사업청	264
○ 소방방재청	265
○ 농촌진흥청	265
○ 산림청	266
○ 중소기업청	268
○ 특허청	268
○ 해양경찰청	269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감면 제한	〈신 설〉	<input type="checkbox"/> 양도세 비과세·감면 적용 배제 ○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계약서상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을 비과세·감면대상 세액에서 차감 ☞ 기획재정부 > 보도자료 > 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소득세법 (‘11.7.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12)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input type="checkbox"/> 1세대 1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 다만, 서울·과천·5대신도시 소재주택은 보유기간중 2년 이상 거주 필요 *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input type="checkbox"/> 2년이상 거주요건 폐지 ☞ 기획재정부 > 보도자료 > 세법시행령 개정추진 (2011.5.12.)	소득세법 시행령 (‘11.6.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12)
3. 축사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신 설〉	<input type="checkbox"/> 축사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와 그 부수 토지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말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 다만, 990㎡에 해당하는 면적을 한도로 함 ☞ 기획재정부 > 보도자료 > 세법 개정안 국회 재정위 의결 (2011.6.23)	조세특례제한법 (‘11.7월 중)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1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 부가가치세 과세	□ 의료용역 및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면제	□ 일부 의료용역 및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과세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입술 ○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에 대해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가축과 「기르는 어업 육성법」상의 수산동물 진료용역은 계속 면세 유지 ○ 무도(舞蹈)학원의 교육용역에 대해 과세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7.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 (02-2150-4231)
5. 개별소비세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제도 도입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업장별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각 사업장별로 개업·폐업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함 	□ 사업자 단위로 개별소비세의 신고·납부 가능 □ 사업자 단위로 개업·폐업 등의 신고 가능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개별소비세법 (11.7.1)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과 (02-2150-4251)
6. 경마·경륜·경정장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과세	□ 경마·경륜 및 경정장 입장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마장: 1인 1회 500원 - 경륜·경정장: 1인 1회 200원 ○ 장외발매소의 경우 비과세 	□ 장외발매소 입장행위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소비세 세율: 본 경주장과 동일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개별소비세법 (11.7.1)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과 (02-2150-4251)
7.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 신설	〈신 설〉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12.12.31 이전에 일정규모(149㎡) 이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하여 임대시 해당 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해 6년간 50% 소득공제 ☞ 기획재정부>보도자료>세법 개정안 국회 재정위 의결 (2011.6.23)	조세특례제한법 (11.7월 중)
			기획재정부 법인세과 (02-2150-417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8. 원재료 등에 대한 원산지 확인범위 확대	〈신 설〉	<input type="checkbox"/> 수출용 원재료 국내제조 확인 ○ 재료생산자가 수출자/생산자의 요청에 의해 국내제조확인서 작성·제공 ○ 동일한 수출자/생산자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작성 가능(12개월 범위내) ○ 수출자/생산자는 이를 기초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율발급 가능 ≡ 기획재정부>뉴스>보도자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 (2011.7.1)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 관세이행과 (02-2150-4491)
9. 간이과세제도 합리화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하고는 각 사업장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 〈신 설〉	<input type="checkbox"/> 각 사업장 매출액의 합계액(사업자)기준으로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 및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 <input type="checkbox"/>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 적용 ※ 복식부기의무자 해당여부 판정시 전문직 이외의 사업자는 전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7.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1)
10. 내국신용장 등으로 거래한 경우 영세율 신청 시 납세협력 부담 완화	<input type="checkbox"/>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영세율 거래를 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영세율 적용 가능	<input type="checkbox"/>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를 전자발급(On-line)받은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그 명세서만 제출해도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함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7.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1)
11. 농업용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대상 농업기계 범위 조정	<input type="checkbox"/>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업기계의 범위 ○ 트랙터, 콤파인, 농업용 난방기 등 ※ 중고농기계 신고시에는 사용실적 확인장치를 부착하지 않아도 됨	<input type="checkbox"/> 대상 농기계 추가 ○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대상 중고농기계를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 ≡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농림특례규정 (‘11.7.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33)

교육과학기술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2011년 교원능력개발 평가 제도 개선	○ 전국 단일모형에 의한 평가	○ 시도·학교 자율확대모형에 의한 평가 - 전국공통기준 + 시도자율영역 + 학교 자율영역 ○ 평가모형의 개선을 통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이 제고되었으며, NEIS연계 온라인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익명성과 보안성이 강화됨 ☞ 법제화를 통하여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 하게 됨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11.2.25. 공포)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02-2100-6688)	
2. 학교운영 위원회 운영 내실화· 투명성 제고 및 참여확대	① 지역위원의 예시 확대	○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 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공무원 등 으로 대상 확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1.3.18.)
	② 회의 전에 안건을 위원에게 사전통지 의무화	<신 설>	○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함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지원과 (02-2100-6280)
	③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작성 및 심의 결과 공개	<신 설>	○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 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④ 해당학교 이권 개입 운영위원의 자격 상실	<신 설>	○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한 경우에는 자격 상실 가능	
	⑤ 학부모 부담 경비 심의시 학부모 의견 수렴	<신 설>	○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심의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⑥ 학생생활 관련 안전 심의시 학생대표 등에게 발언 및 제안 절차 부여	<신 설>	○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1.3.18.)
	⑦ 학생 수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의 위원 구성 비율 자율화	<신 설>	○ 학생 수 100명 미만의 학교에서는 위원의 구성 비율을 자율화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지원과 (02-2100-6280)
	⑧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에 회의 개최	<신 설>	○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회의 시간을 정하도록 하여 학부모 참여 유도	
	⑨ 안전의 심층적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 구성·운영	<신 설>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3. 유치원비 수납방식 월납제 도입	○ 학부모가 유치원비를 분기별로 납부	○ 학부모가 유치원비를 월별로 납부 가능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11.4.22)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02-2100-6681)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 개정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미지정, 사고보고 의무 규정 부재 등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운영, 중대사고 및 인적피해사고 보고, 연구실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 마련 등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관한법률 (11.9.10.)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환경안전팀 (02-2100-6888)	
법무부				
1. 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실시	—	○ 16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 약물 및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약물치료제도 도입 www.moj.go.kr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11.7.24.) 법무부 보호법제과 (02-2110-332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 압류금지 범위 구체화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류금지 1개월간 생계비 및 급여채권 상한을 120만원으로 한정 ○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 수령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류금지 1개월간 생계비 및 급여채권 상한 상향 조정: 120 → 150만원 ○ 실손 보장정보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를 금지 <p>☞ 치료·수술보험금, 생계예금 압류하지 못한다 (법무부 홈페이지, 보도자료)</p>	민사집행법 시행령 ('11. 7. 6.)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3. 자동차 번호판 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와 관련한 과태료 체납시 실효성 있는 압류장치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과 관련한 과태료 체납시 자동차의 번호판 압류 가능 ○ 과태료 전자부과 제도 도입 <p>☞ 과태료 체납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법무부 홈페이지, 보도자료)</p>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11. 7. 6.)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4. 상법 항공운송편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이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제정하는 약관에만 의존 ○ 항공기 추락사고로 지상에 있는 국민이 인적·물적 피해를 본 경우 민법 상 과실원칙에 따라 항공사 과실을 규명해야만 손해배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운송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상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여객과 송하인 등을 보호하고 항공사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 - 여객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1인당 10만 SDR(약 1억 8천만원)까지 무과실 책임 부담, 그 이상은 항공사의 과실추정 -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항공사의 과실을 추정하여 1kg 당 17 SDR(약 3만원, 국내운송은 15 SDR 약 27,000원) 한도로 배상책임 제한 - 항공기 추락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항공사의 과실 유무와 관계 없이 1인당 12만 5천 SDR(약 2억원) 한도로 배상책임 부담 	상법 ('11.11.24.)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국방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입영 후 자녀 출산시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제도 실시	○ 자녀가 있는 입영대 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에 상근예비역 선발 신청이 가능하였 으나, 입영 후 현역병 복무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상근예비역 편입 하는 제도가 없었음	○ 현역병 복무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되어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및 지원기 관에서 복무 가능함	병역법 (11.11.25.)	
			국방부 인력관리과 (02-748-5136)	
2. 여군 전역제도 개선 예비역 문호 개방	○ 여군이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남군과 달 리 일괄적으로 퇴역함.	○ 여군이 전역 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 퇴역 또는 예비역 선택 가능 ○ 예비역 지원시 남군과 동일한 병역 의무와 혜택이 있음.	군인사법 (11.5.24.)	
			국방부 국방여성정책과 (02-748-5171)	
3. 군수품 국방표준바 코드 부착시행	○ 군수품 납품시 포장 표시에 바코드 미포함	○ 군수품 납품시 포장 표시에 국방표준 바코드 부착하여 납품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 (11. 6. 1)	
			국방부 군수정보화팀 (02-748-5764)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02-2079-4122)	
4. 육군 베레모 착용	○ 얼룩무늬 전투모	○ 베레모	군인복제령 (11.10.1)	
			국방부 물자관리과 (02-748-5720)	
행정안전부				
1.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 인사교류 인센티브 강화 등	① 과장급 공무원 부처간 인사교류 활성화	○ 고위공무원단 후보자는 4 급은 5년, 연구·지도관 은 10년 이상 재직 필요	○ 다른 기관에서 인사교류나 개방형 직 위로 2년 근무한 4급 공무원은 해당 경력 1/2을 우대받아 승진에 필요한 재직 연수보다 1년 먼저(5년→4년)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될 수 있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11.하반기)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② 고위공무원 채용 면접위원 구성강화	○ 면접위원 3명 이상, 1/2 이상 외부전문가(타 기관 소속 공무원 포함)	○ 면접위원 5명 이상, 1/2 이상 민간위원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위촉)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정책과 (02-2100-2862)
2. 2011. 7. 29부터 도로명 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	○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	○ 생활주소 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문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사용 가능 ☞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시 실시 ('11.7.29)	도로명주소법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02-2100-4051)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① 개인정보보호 규율대상 확대	○ 공공기관, 정보통신사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 분야별 개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보호 의무 적용	○ 공공·민간 통합 규율로 법적용대상 확대 - 현행법 적용을 받지 않던 오프라인 사업자, 의료기관, 협회·동창회 등 비영리단체,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확대	개인정보 보호법 ('11.9.30)
			○ 동사무소 민원신청서류 등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4490)
			○ 공공기관은 컴퓨터등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만을 보호대상으로 함	개인정보보호법 ('11.9.30)
③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민간사용을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없음 ○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외의 회원가입방법 제공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한정)	○ 고유식별정보 원칙적 처리금지(제24조)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 허용 ○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외의 회원가입방법 제공 의무화 대상 확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공공기관, 일부 민간 분야 개인정보처리자) * 대통령령에서 의무화대상 규정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확보의무 명시	개인정보보호법 ('11.9.30)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449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④ 영상정보처리 기기 규제	○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한하여 규율 -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 - 녹음기능, 임의조작 금지	○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규제를 민간까지 확대 - 법령, 범죄예방·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등을 위해서 설치 가능 ○ 규율대상을 기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서 네트워크카메라도 포함	개인정보보호법 (11.9.30)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4490)
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 공공,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책임자 지정 및 운영 - 적용 : 51만 공공 및 사업자	○ 공공·민간을 망라하는 책임자 지정 및 운영 - 적용 : 350만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보호법 (11.9.30)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4490)
⑥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 보유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 - 행안부장관은 사전협의 파일 관보 공고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 보유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 - 행안부장관은 등록사항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11.9.30)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4490)
⑦ 개인정보 영향 평가	○ 관련 제도 없음	○ 공공기관 대규모 개인정보파일 구축 등 침해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영향평가 의무화 - 민간은 자율시행	개인정보보호법 (11.9.30)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4490)
⑧ 개인정보유출 통지	○ 관련 제도 없음	○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 의무화	개인정보보호법 (11.9.30)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449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⑨ 집단분쟁조정 ⑩ 개인정보 단체소송 ⑪ 개인정보침해 신고	○ 관련 제도 없음 ○ 관련 제도 없음 ○ 공공, 정보통신망법에 따른침해신고접수 및 처리 - 적용 : 51만 공공 및 사업자	○ 개인정보 피해가 대부분 대량·소액 사건인 점을 고려하여 도입 - 재판상 화해효력 부여 ○ 권리침해증지를 위한 단체소송 도입 - 재산피해 단체소송은 제외 ○ 공공·민간을 망라하는 침해신고 접수 및 처리 - 적용 : 350만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보호법 (‘11.9.30)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4490)
			개인정보보호법 (‘11.9.30)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4490)
			개인정보보호법 (‘11.9.30)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4490)

문화체육관광부

1.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자본금 1천만원으로 하향	○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자본금 1억원	○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자본금 1천만원 ○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설립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신청하여야 함 ○ 등록하지 않고 문화산업전문회사 명칭 을 사용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업무 를 수행 또는 투자자를 모집한 경우 과태료 1천만원 부과 ○ 등록기간 내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백만원 부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1.8.2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02-3704-9625)
2.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율등급분류 제도 도입	○ 게임물 유통, 이용제공 하기 위해서는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함	○ 오픈마켓 사업자 등에게 게임물 등급 분류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자율등급 분류 제도 도입 ☞ 오픈마켓 사업자 등에게 등급분류 권한 부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1.7.6.)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02-3704-936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 전문예술 법인·단체 지정제도 개선 및 전문예술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확대	①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경우 대통령령, 지자체의 경우 조례로 정함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범위 및 취소 사유를 문화예술진흥법에 통일적으로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통일적 운영 	문화예술진흥법 (‘11.11.26.)
	② 전문예술단체 기부금품 모집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예술법인에 한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기부금품 모집 허용 ○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 모두 기부금품 모집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예술단체도 기부금품 모집 가능 	문화예술진흥법 (‘11.11.26.)
4.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선 - 선택적 기금제 도입 등	○ 일정 종류 및 규모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을 미술장식에 사용하여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장식 → 미술작품으로 개념 정비 ○ 민간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적 기금제를 도입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공공미술의 진흥을 새로이 규정하여, 건축주가 미술작품 설치 대신 출연한 기금을 공공미술 진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을 통한 규제 완화 및 공공미술 진흥 기반 마련 	문화예술진흥법 (‘11.11.26.)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2-3704-9512)
5.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공연장의 범위 축소	○ 객석 수가 100석(객석 수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 100제곱미터)미만인 공연장은 등록의무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석 수가 50석(객석 수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 50제곱미터)미만인 공연장은 등록의무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석 수 50석 이상이면 공연장으로 등록해야 	공연법 시행령 (‘11.4.5.)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02-3704-950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6. 공공도서관에서의 기부금품 접수 명확화와 국·공유 재산의 사립도서관 무상사용 근거 마련	① 도서관 기부금품 절차 명확화 근거 마련	<신 설> ○ 도서관법 제9조제2항을 신설하여 공립 공공 도서관에서 자발적 기부를 통하여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함	도서관법 ('11.7.6)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과 (02-3704-2715)
	②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 근거 마련	<신 설> ○ 도서관법 제32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 및 지자체는 국유·공유재산을 사립 공공도서관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함	도서관법 ('11.7.6)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과 (02-3704-2715)
7.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확대 등 행정 절차 간소화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시 문화부장관과 사전 협의절차 마련	- ○ 시·도지사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지정할 경우, 문화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여 문화부가 종합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함.	관광진흥법 ('11.7.6.)
	②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실효(失効)제도 도입	- ○ 관광지에만 적용되던 실효제도를 관광 단지에까지 확대 적용 [관광지 지정 실효] - 관광지로 지정·고시된 관광지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그 고시일부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해당 관광지 지정 효력 상실. - 관광지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관광지에 대하여 그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 관광지 지정 효력 상실 [관광지 조성계획 실효] -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고시일부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 계획 승인고시일부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조성계획의 승인 효력 상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02-3704-973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③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승인에 대한 인·허가 의제사항을 확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 	관광진흥법 (‘11.7.6.)
	④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특례적용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특례규정 신설 - 관광특구 내의 호텔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 제공을 위해서도 공개 공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 신설 - 관광특구 관할 지자체장이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경찰청장은 지체없이 조치하도록 특례를 규정
8.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제한 미성년자 (만 20세 미만)에서 청소년(만 19세 미만)으로 변경		○ 미성년자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는 청소년
농림수산식품부			
1. 쌀 등급 의무표시제 도입	○ 쌀의 “품위 및 품질” 표시를 권장사항으로 규정하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 1일부터 쌀 “품위 및 품질” 표시를 의무화하되, “품위”는 등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등급도 기존 3개 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세분화 * 쌀 “품질” 표시는 우리쌀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백질 함량 표시”로 변경하되 도정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 ‘12.11월부터 시행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11.11.1.)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2-500-1976)
2. 배합사료 제조과정에 항생제 첨가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에 일부 항생제 첨가 가능 * '09.1월 기준 : 9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1일부터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배합사료내 항생제 첨가 전면 금지 * 다만, 농가에서 가축의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음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 행정규칙조회>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농식품부 고시) (‘11.7.1.)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2-500-2070~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 음식점 수산물 등 원산지표시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점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찌개용, 탕용배추김치 및 수산물(6개 품목)을 포함 - 6품목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월 예정)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자안전정책과 (02-500-2097)
4.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품질인증제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자재 제품 품질인증제도 도입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조회>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농업육성법 ('11.9.10.)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2-500-2127)
5.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관 사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의 경우에는 지정취소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않은 경우 ○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농산물에 인증을 한 경우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심사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조회>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농업육성법 ('11.9.10.)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2-500-2127)

지식경제부

1. 구매확인서 on-line 발급 2011.7.1일부터 전면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자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외국환은행이나 전자사업기반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 7월 1일부터 은행창구를 통한 구매확인서 발급은 폐지되고 uTradeHub 포털을 통한 전자발급만 가능하게 됩니다. - 거래은행 방문이 필요 없으며 발급신청 근거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 발급비용도 대폭 인하됩니다.(발급수수료 : 1만원--> 6,000-8,000원) - 행정부담이 간소화 됩니다.(거래업체통보, 국세청 신고 on-line화) 	대외무역관리규정 ('11.7.1.)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 (02-2110-4833)
--------------------------------------	--	--	---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 사업 등록제 도입 등 안전관리제도 개선	<신 설>	○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 도록 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1.11.25)
	<신 설>	○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지식 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신 설>	○ 지식경제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자 등의 품질기준 위반행위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02-2110-5446)
	○ 국내 가스용품제조자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자 등은 가스사고발생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신 설>	○ 가스용품 수입자와 액화석유가스 시설 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도 보험가입을 의무화 함	
	<신 설>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판매 가격을 보고하도록 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통합인증마크 (KC) 전면시행	○ 하나의 제품에 다수의 인증마크를 병행하여 표시	○ 13개 법정의무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 마크(KC)로 통합하여 제품에 하나의 마크만 표시 ☞ 국가통합인증마크(KC) '11.7.1일부터 전면 시행	5개 부처 개별 고시 (11.7.1)
			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02-509-729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 법적규제를 특정지역에 한해 완화하는 지역특구 규제특례 확대	<신 설>	○ 특구로 지정할 면적 중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면적이 일정면적(1km ²) 미만인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11. 8.25)
	<신 설>	○ 특화사업을 위해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9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분할 최소면적을 완화	
	<신 설>	○ 특화사업과 관련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	
	<신 설>	○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에 필요한 부지면적을 2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02-2110-4973)
	<신 설>	○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을 인허가 의제에 추가	
○ 선특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토지이용계획을 제출	○ 선특구 지정 후 2년 이내에 토지이용계획을 제출		
○ 민간사업자의 토지 등의 수용·사용 요건	○ 민간사업자의 토지 등의 수용·사용 요건 중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완화		
-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이상 토지 소유	-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이상 토지 소유		
- 토지 소유자 총수의 2/3이상 동의	-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		
보건복지부			
1. 전문병원지정 제도 시행	<신 규>	○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	의료법 (11.1.3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2-2023-731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 임시마약류 지정제도 도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약류로 지정 후 관리	○ 보건상의 위해(危害)로 신종 환각물질을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 ○ 다만, 공무상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금지 및 처벌규정 적용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11. 9월)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02-2023-7359)
3.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①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대상환자 및 투약기간 제한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고시 개정 ('11. 10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2-2023-7426)
	② 당뇨치료제 급여 확대 및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지원	○ 여러 가지 당뇨병약을 복용하는 경우 2종까지만 급여인정 ○ 당뇨병 환자가 자가혈당측정시 보험 미적용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고시 개정 ('11. 7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2-2023-7426) 보험급여과 (02-2023-7412)
	③ 장루·요루 환자 재료대 본인부담률 인하	○ 장루·요루장애인 외래 처방 재료대 구입시 본인 부담률 20%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고시 개정 ('11. 10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12)
	④ 최신방사선 치료기법 급여화	○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급여 적용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고시 개정 ('11. 7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35)
	⑤ 최신 암수술 급여화	○ 폐암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 비급여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고시 개정 ('11. 7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3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업 장가입자 적용 제외 -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임의 가입만 가능하여 본인 이 보험료 전액부담	○ 사업장가입자에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사업장가입자 의 길을 열어 주면서 원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용제외 신청 ☞ 보건복지부>알림>보도자료>국민연금법 개정	국민연금법 (11.12.8)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2-2023-8305)
5.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 요건 완화	○ 60세 도달 당시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	○ 가입기간 20년 미만 요건을 삭제하고 가입자 외에 가입자였던 자 추가 - 단 보험료 납부 사실 없는 자, 노령 연금 수급권자, 반환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보건복지부>알림>보도자료>국민연금법 개정	국민연금법 (11.6.7)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2-2023-8305)
6. 부양가족 연금 지급 대상 범위 합리적 확대·조정	① 계부모에 대한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지급	○ 계부모에 대해서는 부양 가족연금 미지급 * 현행 계자녀는 지급 ☞ 보건복지부>알림>보도자료>국민연금법 개정	국민연금법 (11.6.7)
	②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확대	○ 사망한 가입자의 배우 자·자녀·부모로서 망자(가입자) 뿐만 아 니라 유족연금 수급권 자와 동시에 생계유지가 인정된 경우만 부양가 족연금 지급 ○ 사망한 가입자의 배우자·자녀·부모 로서 현재 유족연금 수급권자와의 생계유지가 인정되면 부양가족연금 지급 ☞ 보건복지부>알림>보도자료>국민연금법개정	국민연금법 (11.6.7)
7.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도입	-	○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연금 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소급하여 추가 징수하는 경우 분할납부 허용 ☞ 보건복지부>알림>보도자료>국민연금법 개정	국민연금법 (11.12.8)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2-2023-8305)
8.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공제계산서 교부의무 완화	○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 에게 연금보험료 공제 계산서 작성·교부	○ 연금보험료의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를 공제계산서로 간주 ☞ 보건복지부>알림>보도자료>국민연금법 개정	국민연금법 (11.6.7)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2-2023-830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9. 4대 사회보험 가입 내역확인서 통합 발급 서비스 제공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각각 소관 사회보험기관에서 발급 받음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사회보험기관 어디서든 통합·발급 ☞ 보건복지부<알림>보도자료>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통합발급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접수 등에 관한 고시 ('11.8.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2-2023-8305)
10. 집행유예자·가석방자 기초노령연금 지급	○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정지	○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도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초노령연금법 ('11.7.1.)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02-2023-8375,8386)
1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 (지원규모) '10년 3만명 - (지원내용) 활동보조 - (사업주체) 보건복지부, 지자체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 (지원규모) '11년 5만명 - (지원내용)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긴급지원 등 - (사업주체) 보건복지부, 지자체 * 국민연금공단에 관리운영 위탁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11.10.5.)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TF (02-2023-8204, 8195)
12. 보육료·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실시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을 방문신청 뿐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	영유아보육법 ('11.9.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2-2023-8934)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녹색생활 포인트 지급 그린카드 전국 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포인트) 전기, 수도, 가스 등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쓰레기봉투 등 지급 (연 최대 35,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포인트 강화) 전기, 수도, 가스 등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평가하여 감축량 구간별로 더 높은 포인트 제공(연 최대 70,000원) ○ (녹색소비 포인트) 녹색제품 구매시 제품가액의 1~5% 포인트 추가 제공(연 20,000~30,000원 수준, 기업 제공) ※ 대상 제품명은 전용 홈페이지 게재 (www.greencard.or.kr) ○ (일반카드 혜택, 대중교통 특화) 녹색 소비·생활(대중교통 이용 등) 실천 시 추가 포인트 혜택 제공 (연 최대 120,000원, 카드사 제공) ○ 국립자연휴양림 무료입장 등 공공기관에서 인센티브 제공 ☞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총 연 20만원 수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11.4.5)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02-2110-7930)
2. 인체에 유해한 어린이 용품의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성이 큰 환경유해 인자의 어린이용도 판매중지나 회수 권고 <신 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전과 동일) ○ 위해성 기준 초과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제한(고시) ○ 고시 위반자에 대하여 판매금지 또는 회수 명령 	환경보건법 ('11.11.20.)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2-2110-6966)
3.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제도 시행	<신 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사업실적·기술력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를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고 지원시책 마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11.10.29.) 환경부 환경산업팀 (02-2110-7757)
4. 자연공원 내 용도지구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용도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자연보존지구 - 공원자연환경지구 - 공원자연마을지구 - 공원밀집마을지구 - 공원집단시설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공원 용도지구 중 공원밀집마을지구와 공원집단시설지구를 삭제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신설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불교의 의식·신도의 교화를 위한 시설의 신축·증축·개축 및 이축행위를 허용하고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자연공원법 ('11.10.6.) 환경부 자연자원과 (02-2110-674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5.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도 시행	〈신 규〉	○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음	하수도법 (11.10.6.)
			환경부 생활하수과 (02-2110-6891)
6.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시행	〈신 설〉	○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함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11.5.26.)
			환경부 수도정책과 (02-2110-7662)
7. 사업장폐기물 배출시 전자인계서 작성 의무 대상 확대	<p>〈전자인계서 작성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 ○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사업장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니(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광재, 분진, 폐사, 도자기 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축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 폐기물 	<p>〈전자인계서 작성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사업장폐기물 ☞ 전자인계서 작성 대상 폐기물과 배출자 신고대상 폐기물을 일원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1.7.22)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2-2110-694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실시	○ 생활폐기물 대행할 수 있는 자만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1회/년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여 등에 활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11.7.24.)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2-2110-6929)																																																
9. 취급제한물질 규제 시행 확대	○ 10개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제한 규제 시행 * 규제시행 취급제한물질 목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연번</th> <th>취급제한물질</th> </tr> </thead> <tbody> <tr><td>1</td><td>말라카이트 그린 염류</td></tr> <tr><td>2</td><td>메틸브로마이드</td></tr> <tr><td>3</td><td>사염화탄소</td></tr> <tr><td>4</td><td>수산화트리알킬 주석과 그 염류 및 트리부틸주석화합물</td></tr> <tr><td>5</td><td>폼알데하이드</td></tr> <tr><td>6</td><td>노닐페놀</td></tr> <tr><td>7</td><td>백석면</td></tr> <tr><td>8</td><td>트리클로로에틸렌</td></tr> <tr><td>9</td><td>테트라클로로에틸렌</td></tr> <tr><td>10</td><td>납</td></tr> </tbody> </table>	연번	취급제한물질	1	말라카이트 그린 염류	2	메틸브로마이드	3	사염화탄소	4	수산화트리알킬 주석과 그 염류 및 트리부틸주석화합물	5	폼알데하이드	6	노닐페놀	7	백석면	8	트리클로로에틸렌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납	○ 12개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제한 규제 시행 - '11.12.1.부터 납, 카드뮴, 크로뮴 화합물에 대한 새로운 규제 시행 * 납의 경우 취급제한 범위 확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연번</th> <th>취급제한물질</th> </tr> </thead> <tbody> <tr><td>1</td><td>말라카이트 그린 염류</td></tr> <tr><td>2</td><td>메틸브로마이드</td></tr> <tr><td>3</td><td>사염화탄소</td></tr> <tr><td>4</td><td>수산화트리알킬 주석과 그 염류 및 트리부틸주석화합물</td></tr> <tr><td>5</td><td>폼알데하이드</td></tr> <tr><td>6</td><td>노닐페놀</td></tr> <tr><td>7</td><td>백석면</td></tr> <tr><td>8</td><td>트리클로로에틸렌</td></tr> <tr><td>9</td><td>테트라클로로에틸렌</td></tr> <tr><td>10</td><td>납</td></tr> <tr><td>11</td><td>카드뮴</td></tr> <tr><td>12</td><td>크로뮴(6+) 화합물</td></tr> </tbody> </table> ☞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연번	취급제한물질	1	말라카이트 그린 염류	2	메틸브로마이드	3	사염화탄소	4	수산화트리알킬 주석과 그 염류 및 트리부틸주석화합물	5	폼알데하이드	6	노닐페놀	7	백석면	8	트리클로로에틸렌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납	11	카드뮴	12	크로뮴(6+) 화합물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11.12.1.) 환경부 화학물질과 (02-2110-7962)
연번	취급제한물질																																																		
1	말라카이트 그린 염류																																																		
2	메틸브로마이드																																																		
3	사염화탄소																																																		
4	수산화트리알킬 주석과 그 염류 및 트리부틸주석화합물																																																		
5	폼알데하이드																																																		
6	노닐페놀																																																		
7	백석면																																																		
8	트리클로로에틸렌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납																																																		
연번	취급제한물질																																																		
1	말라카이트 그린 염류																																																		
2	메틸브로마이드																																																		
3	사염화탄소																																																		
4	수산화트리알킬 주석과 그 염류 및 트리부틸주석화합물																																																		
5	폼알데하이드																																																		
6	노닐페놀																																																		
7	백석면																																																		
8	트리클로로에틸렌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납																																																		
11	카드뮴																																																		
12	크로뮴(6+) 화합물																																																		
10. 환경산업 진흥단지 조성	<신 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산업체, 공공기관, 환경관련 학계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환경산업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환경산업체를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진흥단지를 조성할 수 있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11.10.29.) 환경부 환경산업팀 (02-2110-7757)																																																
11. 토양정화공제조합 설립	○ 토양정화공제조합설립 근거 없음	○ 토양정화공제조합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오염토양의 적시처리를 위한 재원 마련 및 기술개발 사업 등 가능	토양환경보전법 (11.10.6.)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2-2110-677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2. 오염토양의 정화 국가의 역할 확대	○ 국가에 의한 토양정화의 역할 근거 불명확	○ 국가에 의한 토양정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11.10.6.)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2-2110-6772)
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빗물은 수도법, 중수도, 하수처리수재이용은 하수도법 등에서 운영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1.6.9) - 빗물이용, 중수도 및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등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6.9.)
			환경부 생활하수과 (02-2110-6882)
고용노동부			
1. 외국인력상담센터 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생활고충 및 법률상담 등 체류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11.7.1.부터 외국인력상담센터 개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0.4.10.)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02-2110-7189)
2.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 부담금 부과	○ 장애인 1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우 장애인의무 고용률 1/2 미만 사업주 범위에 포함 되어 고용부담금 부과	○ 장애인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 조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11.7.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07)
3.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 능력개발 지원, “내일배움카드제”로 통합	○ 주기적으로 체직/실업 상태를 반복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취업 상태에 따라 제도를 달리하는 불편	○ 내일배움카드제 발급대상을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취업에서 실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제도 변경 없이 지원이 가능 * 비정규직근로자도 지방고용센터 또는 직업 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을 통해 내일배움카드제를 발급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11.7월 예정)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2-2110-727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 주44시간제 적용	○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 주40시간제 적용 ☞ 주40시간제 확대 적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11.7.1)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2-503-9732)
5.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 하나의 기업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음	○ 2011.7.1.부터 기업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해야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됨 ☞ 노조법 개정 설명자료 게시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1.7.1.)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2-2110-7335)
여성가족부			
1.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	○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 범위 -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결혼 이민자가족으로 이루어진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 - 인지 또는 귀화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자와 결혼이민자 등으로 이루어진 가족 포함 ☞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	다문화가족지원법 ('11.10. 5.)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075-8722)
국토해양부			
1.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의제협의절차 개선	○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 : 30일 이내	○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 : 20일 이내 ○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협의한 것으로 간주	주택법 ('11.하반기)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 8256)
2.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 도시형 생활주택의 범위 한정 :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범위 확대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주택법 개정 ('11.3.30) 시행 '11.7.1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 825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 원룸형 도시형 생활 주택 실구획 허용	○ 원룸형 주택은 욕실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으로만 구성됨	○ 욕실외에 두 개의 공간으로 실구획이 가능하도록 하여, 침실 구성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	주택법 시행령 개정 ('11.7.1)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 8256)
4. 리츠, 펀드 법인에게 민영주택 우선공급 (임대용·5년)	○ 현재 법인의 경우 미분양된 주택만 매입가능	○ “5.1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리츠, 펀드와 같은 법인에게 신규건설 민영주택을 임대용으로 우선공급	주택공급규칙 ('11.하반기)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2-2110-8260)
5.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참여 허용	○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려는 토지에 주택건설 등 사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20%~70%)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 공공이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요청하거나, 민간이 토지취득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요청한 경우에 한해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	○ 공모에 의한 민간 참여 추가 - 공모에 의해 선정된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공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 - 민간 투자지분 : 50%미만	택지개발촉진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1.8.31)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02-2110-8306)
6. 종합적인 택지정보 체계 구축·운영	○ 근거조항 없음	○ 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택지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택지관련 정보 DB구축 후 국민에게 택지개발사업의 일반정보 제공 및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는 택지공급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과학적인 택지수급관리 등을 추진	택지개발촉진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1.8.31)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02-2110-830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7. 택지개발사업지구 대토보상자들에 대한 투자기회 확대	○ 대토보상자만 토지수용 법에 따라 공공택지를 수의 계약으로 공급	○ 택지개발촉진법에 수의계약 대상자 추가 - “대토보상자”와 “대토개발리츠”에 택 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 ○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택지의 범위 :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에 해당하는 면적	택지개발촉진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1.7.31)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02-2110-8306)		
8. 택지지구내 단독주택 층수제한 완화, 가구수 규제 폐지	○ 신규 택지개발지구 내 - 85㎡이하 용지 : 60% 이상 (60㎡이하 포함) - 85㎡초과 용지 : 40% 미만	- 85㎡이하 용지 : 70% 이상 (60㎡이하 포함) - 85㎡초과 용지 : 30% 미만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11.12월 예정)		
			○ 모든 일반 단독주택 가구수 3-5가구 이하	○ 삭제 *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현행 유지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02-2110-8305)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밀도 - 용적률 100% 이하	*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현행유지 - 용적률 150% 이하	
			○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제한 - 준공된 택지지구에 수립 된 지구단위계획은 준공일로부터 10년(신 도시는 20년)간은 계획 변경이 제한	○ 지침 시행 후 1회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허용 - 지자체가 해당 지구의 주차장 등 기반시설 용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한 범위내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9. 지상경계점 등록·관리 제도 시행	○ 지상경계점등록·관리 제도가 없어 지적경계점 훼손이나 망실 시 지적 측량에 의해 경계를 복 원함	○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시행함으로써 지적경계점 훼손 시 토지소유자가 직접 경계를 복원할 수 있어 불편 및 비용부담을 해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11.7.1)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031-436- 897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0. 거래 할 부동산 내역 스마트폰으로 확인	○ 그동안 온나라 부동산 포털 인터넷 서비스만 으로 부동산 내역을 조회	○ 부동산 내역에 대한 정보조회 기능을 인터넷 뿐만이 아닌 스마트폰으로 까지 확대	- (‘11.7.1)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센터 (02-2110-6280)
11.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완화	○ 전체 공사 기간 중 일부 공종은 공사를 하지 않는 기간도 예외없이 모든 기간에 건설기술자를 배치	○ 실제 시공 및 품질관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자의 상시 배치의 예외*를 규정 * 시공관리, 민원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 한 경우 등	건설산업기본법 (‘11.11.25.)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02-2110-8314)
12. 실적 미달업체 영업 정지 처분 대상에서 제외	○ 건설업 등록 후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이 연평균액에 미달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영 업정지 또는 1억원 이 하의 과징금 부과	○ 실적 미달업체에 대한 제재는 부실 업체 퇴출을 위해 도입 되었으나, 경기침체로 실적이 없는 경우까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처벌로 실적 미달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규정 삭제	건설산업기본법 (‘11.11.25.)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02-2110-8314)
13. 상수도 미보급지역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	○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지하수를 음용 으로 이용하는 경우 지자체의 조례 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 - 감면된 수수료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이용하여 지자체에서 수질검사전문기 관에 보전	지하수법 (‘11.8.31)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02-2110-6313)
14. 준공검사 조건부 허가 폐지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에 있어 필요한 경우 준공 검사를 받을 것을 조건 으로 허가할 수 있음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시 준공검사 조건부 허가 폐지	지하수법 (‘11.12.1)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02-2110-6313)
15. 지하수개발·이용시 공업 등록 결격사유 합리화	○ 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에 있는 사람은 지하 수개발·이용시공업을 등록하지 못함.	○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은 지하수법 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을 등록하지 못하게 함.	지하수법 (‘11.12.1)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02-2110-631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6. 수도권 소재 산업 대학의 일반대학 전환 한시적 허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소재 산업대학의 일반대학 전환 불가 대학과 전문대학 통폐합 시한 만료('09.12.31)로 통폐합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소재 산업대학의 일반대학 전환을 '11.9.28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폐합 시한을 '12.12.31까지 연장하여 대학 통폐합 가능 	수도권정비계획 법시행령 ('11.3.9.)
			국토해양부 수도권정책과 (02-2110-8159)
17. 중저가 관광호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관광호텔은 관광 숙박시설의 교통유발 계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호텔 중 중저가의 1~3등급 관광 호텔은 일반숙박시설의 교통유발 계수를 적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11.12.31.)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02-2110-8664)
18. 회전교차로 건설에 따른 사고감소 및 연료 절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전교차로 설계, 안전 및 부대시설 기준 마련 등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10.12.28)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02-2110-8723)
19. 이동성 기능도로의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 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음. 단, 2차로 도로에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30km/h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 내 교통정온화시설의 하나로 과속방지턱 설치 검토 가능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11.7월 예정)
			국토해양부 첨단도로환경과 (02-2110-8745)
20. 경춘선, 좌석급행열차 운행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춘천지역에서 서울도심으로 진입하려면 상봉역에서 환승해야 하고, 입석승객이 장기간 서서 가야 하는 불편 - 상봉~춘천 : 79분(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년말 경춘선에 좌석급행열차를 운행하여 용산까지 환승없이 좌석에 앉아 이동할 수 있으며, 소요시간도 약 35분 단축(상봉~춘천 기준) - 상봉~춘천 : 44분, 용산~춘천 : 69분 	철도사업법 ('11년말 개통예정)
			국토해양부 철도운영과 (02-2110-880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1. KTX, 전라선 (익산~여수) 운행 개시	○ 여수, 순천 지역에서 KTX를 이용하려면 익 산역에서 환승(새마을 →KTX) 필요 - 서울~익산~여수 : 5시간 15분 소요(새마을호)	○ 9월말경부터 여수, 순천역에서 바로 KTX 이용 가능 - 서울~익산~여수 : 약 3시간 21분 소요 * 실제 운행시간은 정차역 등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국토해양부 철도건설법 (11.9월 개통예정)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 (02-2110-8787)
22. 광역급행버스 정류소 확대	○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Km 이내에 위치한 각각 4개 이내의 정류 소에 정차	○ 관할관청이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7.5Km 이내에 위치한 각각 6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 ☞ 정류소 설치 제한 거리 및 개수 완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1.7월 예정)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02-2110-8672)
23. 자동차 Total 이력 관리 온라인 서비스 제공	○ 민원인들이 직접 등록 사무소 및 지자체, 정 비업체, 보험사를 방 문하여 조회	○ 스마트폰(모바일 앱) 및 인터넷을 통해 관련기관의 정보를 한번에 제공 받음	자동차관리법 (11.11.15 예정)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02-2110-6427)
24. CNG 내압용기 안전 성 강화	〈신 설〉	○ 내압용기 소유자는 내압용기 정기검사 (일정 주기) 및 내압용기 수시검사 (용기 손상 등 사유)를 받음 * LPG자동차는 정기검사로 같음	자동차관리법 (11.11.25)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02-2110-8476)
25. 이륜자동차(50cc 미만)에 대한 자동차 의무보험 시행	〈신 설〉	○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한 의무 보험 가입의무 및 의무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자동차관리법 (11.11.25)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02-2110-8706)
26.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실태조사 실시	-	○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안전이 취약 한 시·군·구의 교통체계에 대한 특별실태조사 실시	교통안전법 (11.8.20.)
			국토해양부 교통안전 복지과 (02-2110-867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7.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안전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교통수단운영자를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 ○ 우수사업자에게는 교통안전점검 또는 교통안전진단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교통안전법 ('11.8.20.)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02-2110-8678)
28. 교통안전 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안전 시범도시 지정 ○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등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가능 	교통안전법 ('11.8.20.)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02-2110-8678)
29.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권(利用權)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콜택시, 거주지역 관계없이 인근 시·도까지 이용 가능 	교통약자의이동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11.6.30)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02-2110-8687)
30. 전국 5대권역 내륙물류기지 기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ub & Spork 기반 5대 권역 내륙물류기지 건설 집중 - 수도권 : 군포·의왕 - 부산권 : 양산 - 중부권 : 청원·연기 - 영남권 : 칠곡 - 호남권 : 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ub & Spork 기반 5대 권역 물류거점시설의 기능조정을 통한 운영 활성화 - 발전가능성이 있는 물류거점은 획기적인 활성화 대책 마련 - 활용성이 떨어지는 물류거점은 용도 전환 등 효율화 방안 마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11월 예정)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6355)
31. 평택 청북 신규 물류단지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택 청북 신규 물류단지 개발('11.7) - 시행자: 청북물류단지개발(주) - 위치: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렷리 - 전체면적(828천㎡) : 물류시설 470천㎡, 상류시설 90천㎡, 지원시설 32천㎡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6.9)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852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2. 수출·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1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물류단지(1,146천㎡): 물류터미널 110천㎡, 집배송시설 136천㎡, 창고시설 181천㎡, 상류시설 11천㎡, 지원시설 225천㎡ 등 ⇒ 인천 서구 경서동 - 김포 물류단지(903천㎡): 물류터미널 105천㎡, 집배송시설 49천㎡, 창고시설 93천㎡, 상류시설 9천㎡, 지원시설 150천㎡ 등 ⇒ 김포시 고촌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인천·김포 물류단지) (‘11.10월)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8523)
33. 수출·입 컨테이너 및 사시 추적정보 서비스 확대	○ 차량(컨테이너) 물류추적 정보 제공(직접제공 또는 홈페이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 자산인 사시의 추적정보를 추가 제공하여 보다 정확한 추적정보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사시 운행과 관련하여 3개 국제여객 터미널(인천·평택·군산) 및 수도권 물류 거점(의왕ICD, 서서울TG 등 7개소)에서 사시 추적정보 제공 ○ 민간에서 운영 중인 물류정보망 (eTrans 및 EDI VAN망)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차량(물류)추적정보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해기업이 14개 대형 운송사에서 1,037개 컨테이너 운송사로 확대 	물류정책기본법 (‘11.7월)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8520)
34. 해운 중개업 등록 기준 완화	○ 상법상 주식회사 만 등록 가능	○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합병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도 등록 가능	해운법시행규칙 (‘11.12.1.)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02-2110-8551)
35. 선박펀드 유형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에 대한 구분 없음 ○ 대선기간 2년(§ 26①) ○ 펀드 설립 인가 신청시 체결할 대선계약을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마련 (§ 53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선기간을 1년으로 완화 - 새로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선박 인도 30일전까지 대선계약 체결 	선박투자회사법 (‘11.10월 예정)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02-2110-637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6. 선박펀드 추가주식 발행금지 규정 완화	○ 선박 건조·매입 후 추가 주식 발행을 모두 금지	○ 일시적으로 부실화된 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박운항 정상화를 위한 추가 주식 발행을 일정 요건하에 허용	선박투자회사법 (’11.10.1 예정)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02-2110-6370)
37. 외국인선원 관련 고용 절차 개선 등 외국인선원관리지침 개정 시행	○ 선사별 고용방법에 있어 노·사가 합의하여야 함	○ 선사별 고용방법에 있어 선박소유자가 외국인선원 고용시 선원노동조합의 의견을 구하도록 함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11.7.1)
	○ 지방해양항만청은 외국인선원 고용신고시 외국인선원의 임금을 3개월이상 체불하고 있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체불임금 지급이 확인될 때까지 외국인선원 고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해양항만청은 외국인선원 고용신고시 외국인선원의 임금을 1개월 이상 체불하고 있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체불임금 지급이 확인될 때까지 외국인선원 고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외국인선원관리지침 행정제재기준 [별표1]	외국인선원관리지침 행정제재기준 [별표1]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02-2110-8576)
□ 무단이탈 빈발업체(선박소유자, 송입업체)	□ 무단이탈 빈발업체(선박소유자, 송입업체)	□ 무단이탈 빈발업체(선박소유자, 송입업체)	
○ 동일업체에서 1, 2차 사고발생 : 주의, 경고	○ 동일업체에서 1, 2차 사고발생 : 주의	○ 동일업체에서 3차 사고발생 : 경고	
○ 경고조치 후 1년 이내에 동일업체에서 3차사고 발생 - 외국인선원 신규고용 제한 3개월(당해선박)	○ 경고조치 후 1년 이내에 동일업체에서 4차사고 발생 - 외국인선원 신규고용 제한 3개월(해당선박)	○ 동일업체에서 3차 사고발생 : 경고 ○ 경고조치 후 1년 이내에 동일업체에서 4차사고 발생 - 외국인선원 신규고용 제한 6개월(해당선박)	
○ 고용제한 후 1년 이내에 동일업체에서 4차사고 발생 - 외국인선원 신규고용 제한 6개월(당해선박)	○ 고용제한 후 1년 이내에 동일업체에서 5차사고 발생 - 외국인선원 신규고용 제한 6개월(해당선박)	○ 동일업체에서 4차사고 발생 - 외국인선원 신규고용 제한 6개월(해당선박)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8. 선박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 선박대여업 등록기준이 '100톤이상 선박 1척 이 상 있을 것'	○ 선박대여업 등록기준이 '20톤이상(부선 은 100톤이상) 선박 1척 이상 있을 것'	해운법시행규칙 (11.12월 예정)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02-2110-8551)
39. 유조선 통항금지해역 통항금지선박 확대	○ 경유나 중유 1천500킬 로미터 이상 또는 유해 액체물질을 1천500톤 이상 신고 운반하는 선 박은 해상교통안전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유조선 통항금지해역 안에서 항행할 수 없도 록 규정	○ 원유, 중유, 경유 또는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유사석유제품 및 석유 대체연료 등의 기름이나 유해액체 물질을 1천500킬로리터 이상 화물로 신고 운반하는 선박의 유조선 통항 금지해역 안에서의 운항을 금지	해사안전법 (11.12.16)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02-2110-8580)
40. 내항선 맞춤형 안전 관리 매뉴얼 보급	○ 표준매뉴얼 없음	○ 내항선종별 간소화된 안전관리 표준 매뉴얼을 업계 보급	- (11.9월중)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02-2110-8581)
41.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체제 마련	○ 안전관리(책임)자는 일정 경력요건 요구되나 별도 의 교육요건 부재	○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프로 그램 및 교육기관 선정 등 교육체제 마련	해사안전법 시행령 (11.12월중)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02-2110-8581)
42. 소형선박 질소산화물 규제(유예기간 종료)	○ 국내 운항 소형 디젤 기관(176마력이상 400 마력 미만)에 대하여 2011년 6월 30일까지 유예	○ 2011년 7월1일부터 기관출력 176마력 이상 400마력 미만의 디젤기관은 질소산화물 규제 유예기간이 종료되 어 질소산화물 배출 검사를 받아야 함.	해양환경관리법 (11.7.1)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02-2110-859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3. 유조선 기름화물 이송 계획서 비치	<신 설>	○ 해상에서 유조선간 기름화물 이송작업을 하는 유조선은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비치하고 시행하여야 함	해양환경관리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11.9월 예정)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02-2110-8593)
44. 선교항해당직경보 장치 의무화	<신 설>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여객선 및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를 '11년 7월1일부터 연차적으로 설치토록 함	선박설비기준 ('11.7.1)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02-2110-8587)
45. 부유식해상구조물 구조설비기준 개정	○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상부구조물에 선박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수변이용활성화에 따른 수상호텔 등 다양한 형태의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적용이 불가	○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상부구조물에 대하여 건축법령 등을 준용하도록 기준을 개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건조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생활 향상 도모	부유식 해상구조물 구조설비기준 ('11.9.30)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02-2110-8587)
46. 선박 내연기관 형식 승인 대상 확대	○ 50마력 미만 선박내연기관만 형식승인 대상으로 지정	○ 선박내연기관 형식승인대상을 확대하여 600마력 미만 선박내연기관은 형식승인을 받도록 함	선박용 물건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11.7.30)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02-2110-8587)
47. 공기부양선 구조설비 기준 제정	○ 공기부양선 구조설비기준 미비	○ 공기부양선 구조설비 기준 제정	공기부양선 구조설비기준 ('11.9.30)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02-2110-858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48.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안전운송 교육이수 의무화	○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 없음	○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화 (신설) ○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위탁교육 근거 신설 ○ 위험물취급자의 구체적 범위 및 교육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도록 함	선박안전법 (’11.7.16)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02-2110-8590)
49. 예인선항해검사의 주기 개선(1년 → 5년)	○ 예인선의 소유자는 매년 예인선항해검사를 받고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예항력과 부선의 저항값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예인선항해검사의 실효성이 떨어짐	○ 5년마다 또는 중간에 예인설비가 변경되거나 예인하고자 하는 부선 및 구조물이 변경되는 경우에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으면 됨, 5년에 1회 검사 수수료 납부 ○ 증서의 추록을 신설하여 예항력과 예인하고자 하는 부선의 저항값을 기재하여 예인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11.9.30 예정)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02-2110-6381)
50. 선박검사관의 자격 기준 완화	○ 대학이나 해양·수산계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과 경력을 갖추어야만 선박검사관이 될 수 있어서 일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선박검사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었음	○ 일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일정자격(해기사면허)과 경력을 갖춘 자도 선박검사관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11.9.30 예정)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02-2110-6381)
51. 선박의 기관개방검사 주기 개선	○ 특별한 사유가 있어 임시검사로 선박의 기관개방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지정된 검사일이 도래하면 또다시 기관개방검사를 받아야 하였음	○ 임시검사로 선박의 기관개방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 및 제1종 중간검사시 실시하는 기관개방검사를 전회 기관개방검사 후 최대 3년까지 유예토록 함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11.9.30 예정)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02-2110-6381)
52. 소형항공운송 사업 좌석기준 상향	○ 소형 항공 운송 사업은 19인승 이하 항공기만 운항이 가능	○ 소형항공운송사업에 50인승 이하의 항공기 운항이 가능 ☞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 기존 19인승에서 50인승으로 증대	항공법 (’11.10월 예정)
			국토해양부 항공산업과 (02-2669-646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53. 인천공항 배후물류 단지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투기업 500만불 이상 투자 시 투자금액에 따라 토지임대료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만불 이상: 5년간 50% - 1,000만불 이상: 5년간 100% - 1,500만불 이상: 7년간 100% - 3,000만불 이상: 10년간 100% - 5,000만불 이상: 15년간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금액에 따른 토지임대료 감면제도를 국내기업에게도 확대 공항물류단지에서 물품을 가공하여 여러 국가로 배송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 입주 시 임대료 감면기간을 2년 연장 기존 입주기업이 3,300㎡ 이상 증축 또는 250만불 이상 추가 투자 시 3년간 토지임대료 50% 감면 	인천공항공사 인센티브 제도 개선 ('11.7.1)
			국토해양부 항공산업과 (02-2669-6478)
54. 군비행장 사용신청 처리기간 단축	① 기 승인된 정기항공 운송계획의 일부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미 승인된 정기항공 운송계획 중 운항시간, 기종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국토해양부 장관에 접수 후 국방부 장관에 신청 	국토해양부 변경사항 등의 승인권한을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각 지방항공청으로 이관함으로써 행정처리 소요기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항공청장(접수·신청) ↔ 해당기지 부대장(접수·승인)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 장관간 비행장사용협정 ('11.8월)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02-2669-6354)
	② 정기항공운송 사업용 항공기 중 국제 입사편 항공기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세기 및 외국항공기를 포함하는 국제입사편 항공기의 군비행장 사용 시 국토해양부 장관에 접수 후 국방부 장관에 신청 	국토해양부 신청 접수 및 승인권한을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각 지방항공청으로 이관함으로써 행정처리 소요기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항공청장(접수·신청) ↔ 해당기지 부대장(접수·승인)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 장관간 비행장사용협정 ('11.8월)			
	③ 비사업용 항공기의 비행장 사용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사업용 항공기의 군비행장 사용 시 지방항공청장이 접수 후 각 군 본부에 신청 	국토해양부 변경사항 등의 승인처리 절차를 지방항공청장이 접수 후 해당 부대장에게 직접 접수하는 방식으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항공청장(접수·신청) ↔ 해당기지 부대장(접수·승인)
국방부 장관과 국토해양부 장관간 비행장사용협정 ('11.8월)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02-2669-635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55. 항공안전관리 시스템(SMS) 운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의무 도입·운영 대상 -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관리자 - 공항운영자 - 항공운송사업자 - 항공교통관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의무 도입·운영 대상 -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관리자 - 공항운영자 - 항공운송사업자 - 항공교통관계기관 -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로 국외를 운항하려는 자 	항공법 (’11.12월 예정)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02-2669-6369)
58. 집중점검 방식의 항공 안전감독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 1회당 안전감독관 1인이 1일 동안 76개 점검항목 중 1개를 선별하여 반복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 1회당 안전감독관 2명이 2~3일 동안 76개 점검항목 중 13개로 그룹화하여 집중점검 	항공법 (’11.1.1)
			국토해양부 운항안전과 (02-2669-6474)
59. 항공사 자율적 안전관리시스템(SMS) 정착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성 지적·개선 중심의 정부 안전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사 스스로 잠재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자율적 안전관리 ○ 항공사별 안전지표, 목표 재설정 등 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 개정 	항공법 (’11.1.1)
			국토해양부 운항안전과 (02-2669-6474)
60. 항공안전 특별점검 실시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고장발생시 사후적·단발적 안전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상운항 발생실태를 매일 모니터링하여 잠재위험요인을 유형화 ○ 항공사별·분야별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선제적 안전관리 	항공법 (’11.4.1)
			국토해양부 운항안전과 (02-2669-6474)
61. 항공기등에 관한 안전성 인증 및 승인 수수료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수수료를 모두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수수료를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 	항공기등에 관한 수수료 (국토해양부고시) (’11.7.1)
			국토해양부 항공기술과 (02-2669-636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62. 초경량비행장치 안전 성인증서 유효기간 연장	○ 안전성인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함 -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 최근 2년간 항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소유한 초경량비행장치 - 항공법 제2조제29호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사고 이력이 없는 초경량비 행장치 - 최근 2회 연속 초도검사 또는 정기 검사에 합격한 초경량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검사 업무 운영세칙 (교통안전공단 규정) (11.9.1)
			국토해양부 항공기술과 (02-2669-6361)
63. 공항시설 준공 전 사용허가 처리기간 단축	○ 공항개발사업으로 조성 된 공항시설을 국토해 양부장관의 준공확인 이전에 사용하고자 하 는 경우 국토해양부장 관으로부터 허가를 받 아야 하며, 이 경우 그 허가의 처리기간은 15 일로 장기간 소요	○ 공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항시설을 국토해양부장관의 준공확인 이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 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그 허가의 처리기간은 10일로 단축함	항공법 시행규칙 제268조제2항 별지 제93호 서식 (11.12월)
			국토해양부 공항정책과 (02-2669-6338)
64. 소음부담금 부과· 징수 요율 인상	○ 소음5등급 : 착륙료의 15% ○ 소음6등급 : 착륙료의 10%	○ 소음5등급 : 착륙료의 20% ○ 소음6등급 : 착륙료의 1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11.11.1.)
			국토해양부 공항환경과 (02-2669-6313)
65. 항공장애표시 등 설치신고 처리기간 단축	○ 항공장애표시등과 항 공장애주간표지를 설 치한 경우 그 설치 내 용을 지방항공청장 또 는 시·도지사에게 신 고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신고서의 처리기간은 7일 소요	○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 설치 신고 처리기간을 당초 7일에서 4일로 단축함	항공법 시행규칙 제251조 별지 제85호 서식 (11.12월)
			국토해양부 공항환경과 (02-2669-631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66. 레이저 운영 승인 신청 처리기간 단축	○ 레이저 보호구역에서 레이저를 방사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신고서의 처리기간은 7일 소요	○ 레이저 운영 승인신고 처리기간을 당초 7일에서 4일로 단축함	레이저광선 운영기준 ('11.12월)
			국토해양부 공항환경과 (02-2669-6317)
67.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 연안관리정보시스템 업무용으로 주 제공	○ 업무용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 및 콘텐츠 구축으로 대국민서비스 확대	연안관리법 제37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9조 ('11.12월)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02-2110-8465)
68. 전국 자연해안관리 목표제 실시	<신 설>	○ 국가 및 지자체별 자연해안 관리목표를 설정 총량 관리 실시	연안관리법 ('11.10월)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02-2110-8460)
69. 제2차 연안통합 10개년계획 수립·시행	○ 제1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실시	○ 전국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신 연안관리 제도 등 제2차 연안통합관리 계획 실시	연안관리법 ('11.7월)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02-2110-8461)
70. 연안정비사업 패러다임 전환	○ 제2차 연안정비계획 수립시행('09)	○ 제2차 연안정비계획 보완	연안관리법 ('11.하반기)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02-2110-6338)
7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업무처리 규정 신설	○ 공유수면 관리 업무처리 규정('09.8), 공유수면 매립 업무처리규정('10.6)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업무처리 규정 통합 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1.12월)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02-2110-6338)

방송통신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이동통신요금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통신 기본료 표준 기준 12,000원 문자 무료제공 없음 (건당 20원)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 35,000원~95,000원 선불요금 4.8원/1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요금제에 이동통신 기본료를 1천원 인하 문자 50건 무료 제공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스마트폰 선택요금제 출시 선불요금 4.5원/1초로 인하 ☞ SKT 이동통신 요금 인하내용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이용제도과 (02-750-2551)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이용자 선택사항으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 동의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포함하여 받고 있어 이용자의 선택권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터넷 사업자 등)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취급위탁할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의를 하지 않음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정보통신망법 ('11.7.6.)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02-750-2775)
국가보훈처			
1. 참전유공자: 모두 국가유공자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전유공자중 6·25참전유공자만 국가유공자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6.30)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02-2020-5242)
2. 보국수훈자 국가유공자 인정범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보국수훈자 국가유공자로 인정 - 전·퇴직여부 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인을 제외한 군무원·경찰 등은 국가안보기여도를 심사하여 인정 - 군인·군무원·경찰 등은 전역·퇴직이후 등록신청 가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11.6.30)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02-2020-5225)
3. 소방공무원의 일반직무 중 희생도 보상금을 받는 순직·공상군경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공무원이 일반직무 중 희생한 경우 순직·공상공무원으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공무원이 일반직무 중 희생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받는 순직·공상군경으로 구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6.30)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02-2020-5225)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과징금 단계별 지급 기준액	중거수준별 지급기준율	한도액	과징금 단계별 지급 기준액	중거수준별 지급기준율	한도액	관계 부서		
1. 담합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	담합 (부당한 공동 행위)	5억원 이하 : 5% 5억원 초과 ~500억원 : 1% 500억원 초과 : 0.5%	上 : 70~100% 中 : 30~69% 下 : 30%미만	10억원	5억원 이하 : 10% 5억원초과 ~ 50억원 : 5% 50억원 초과 : 1%		20억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11.5.18)		
	부당지원 행위	5억원 이하 : 4% 5억원초과~ 50억원 : 1% 50억원 초과 : 0.5%		1억원					* 시정명령 : 200만원 * 경 고 : 100만원	10억원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10억원 이하 : 3% 10억원초과~ 50억원 : 1% 50억원 초과 : 0.5%		1억원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 위반	4억원 이하 : 3% 4억원 초과 : 2%	上 : 80~100% 中 : 60~79% 下 : 40~59%	3,000만원	5억원 이하 : 5% 5억원초과~50억원 : 3% 50억원 초과 : 1%		1억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과징금의 5%		2,500만원						
	사원판매 행위	4억원 이하 : 3% 4억원 초과 : 2%		3,000만원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1호 및 동조 제4항, 제4조 3호 및 동조 제4호, 제5조 내지 제9조 위반행위	4억원 이하 : 3% 4억원 초과 : 2%		3,000만원	* 시정명령 : 100만원 * 경 고 : 50만원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2호 및 제3호, 제4조 2호 위반행위	과징금 : 10~30배 시정명령 : 5배 경고 : 0배	上 : 20배 中 : 15배 下 : 10배	1,000만원						
	신문판매고시 제4조 1호 위반행위	중거수준 상, 중, 하에 따라 각각 40만원, 30만원, 20만원 지급								
					最上 : 100% 上 : 80% 中 : 50% 下 : 30%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02-2023-437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 하도급법 적용확대	○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의 경우 매출액 등이 2배 이상 차이가 나야만 법 적용이 가능	○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의 경우 매출액 등이 크기만 하면 법적용이 가능	하도급법 (11.6.30.)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총괄과 (02-2023-4491)
3. 조합에게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도입	〈신 설〉	○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조합도 소속 조합원인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신청 가능	하도급법 (11.6.30.)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총괄과 (02-2023-4491)
4. 경쟁을 제한하는 M&A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기준 제정	〈신 설〉	〈고시 제정〉 ○ 시정조치 부과 일반원칙 - 효과성 원칙, 비례원칙, 명확성 및 실현 가능성 원칙 등 ○ 시정조치 유형 및 판단기준 - 크게 구조적조치와 행태적조치로 구분하여 각각의 세부유형 및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 ○ 구조적조치 우선원칙 명시 - 경쟁제한적 M&A에 대해 구조적조치의 부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행태적 조치는 구조적조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부과함을 원칙으로 규정	기업결합시정 조치부과기준 (11.6.22)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02-2023-4287)
5. 구매안전서비스 적용 대상 금액 확대 및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링크 의무화	○ 1회 결제 기준으로 10만원 이상 구매에 대하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법에 따라 자신의 신원정보를 쇼핑몰 초기화면에 표시	○ 1회 결제 기준으로 5만원 이상 구매에 대하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가능 ○ 자신의 신원정보와 함께 소비자가 신원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링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뉴스<보도/해명>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령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11.7.29) 및 시행규칙 (11.8.11)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02-2023-4361)

금융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보이스포싱 피해금 환급 절차 개선	○ 특별한 법적절차가 필요 하고 1년 넘는 시간소요	○ 특별법 시행으로 소송없이 환급받을 수 있고 환급을 받기까지 걸리던 시간 단축(약 3개월) ☞ 보이스포싱 피해금 환급에 관한 절차 개선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 (11.9.30.)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56-9822)	
국민권익위원회				
1.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만 보호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위협하는 공 익침해행위 신고자를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보호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	공익신고자 보호법 (11.9.30.)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02-360-6644)	
관세청				
1. 통관단계 에서 보호 되는 지재권의 종류 및 대상물품 확대	① 지식재산권 보호대상 종류 확대	○ 상표권, 저작권	○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지리적표시 포함)까지 확대	
	②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 물품 확대	○ 수출입물품	○ 환적 또는 복합환적·보세구역반입· 보세운송·일시양륙 물품까지 확대	지식재산권보호 틀위한수출입통 관사무처리에관 한고시(11.6.3.)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638)
				지식재산권보호 틀위한수출입통 관사무처리에관 한고시(11.6.3.)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638)				

조달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업체진입요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을 통과할 경우 계약체결 가능 - 납품실적 3건 이상, 신용 평가등급 B-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엄격한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일부 물품의 경우 납품실적, 경영상태 외에 기술수준, 만족도,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점수(70점) 이상인 업체들에 MAS 입찰참가자격 부여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11.7.1.)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070-4056-7274)																					
2. 시설공사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시 표준 계약서 사용업체 우대	<p>[별표 3] 신인도 평가 (±5점)</p> <table border="1"> <thead> <tr> <th>심사 항목</th> <th>평가 요소</th> <th>등급</th> <th>평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나. 하도급 관련 사항</td> <td rowspan="2">〈 신설 〉</td> <td></td> <td></td> </tr> </tbody> </table>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등급	평점	나. 하도급 관련 사항	〈 신설 〉			<p>[별표 3] 신인도 평가 (±5점)</p> <p>☞ 시설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 <table border="1"> <thead> <tr> <th>심사 항목</th> <th>평가요소</th> <th>등급</th> <th>평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나. 하도급 관련사항</td> <td rowspan="3">3) 당해계약에 서의 표준 계약서 사용 여부</td> <td>A. 계약금액의 30%이상 표준계약서 사용</td> <td>+1 (-2)</td> </tr> <tr> <td>B.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계약서 사용</td> <td>+2 (-4)</td> </tr> <tr> <td>C. 계약금액의 1%이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td> <td>+1 (-2)</td> </tr> </tbody> </table>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급	평점	나. 하도급 관련사항	3) 당해계약에 서의 표준 계약서 사용 여부	A. 계약금액의 30%이상 표준계약서 사용	+1 (-2)	B.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계약서 사용	+2 (-4)	C. 계약금액의 1%이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1 (-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11.5.30)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등급	평점																			
나. 하도급 관련 사항	〈 신설 〉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급	평점																			
나. 하도급 관련사항	3) 당해계약에 서의 표준 계약서 사용 여부	A. 계약금액의 30%이상 표준계약서 사용	+1 (-2)																					
		B.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계약서 사용	+2 (-4)																					
		C. 계약금액의 1%이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1 (-2)																					
조달청 기술심사팀 (070-4056-7353)																								
3. 조달업체 스스로 품질을 보증하는 「자기품질보증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달청 검사 대상 일부 품명(가구류)에 대하여 품질경영모범업체 제도를 통해 검사면제를 통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달청, 전문기관, 수요기관 검사 대상 물품전반에 대하여 자기품질보증제도를 통해 검사면제 확대 ☞ 자기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 규정 	자기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 규정 ('11.5.6.)																					
			조달청 자재품질관리과 (070-4056-8122)																					

병무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제도 도입	○ 현행 병역법 상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음	○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하여는 사전 확인 신체검사를 실시 한 후 ○ 최종 병역면탈자로 확인된 사람은 해당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	병역법 (’11.11.25.)
			병무청 징병검사와 (042-481-2945)
2.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 입영기일연기 제도 신설	○ 정규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만 일정기간 입영연기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점은행제 학습기관에서 수강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연기혜택 부여(고졸자에 한 함)	현역병입영 업무규정 (’11.7.1.)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15)
3. 동반입대병·직계가족병 범죄경력 제한기준 완화	○ 동반입대병·직계가족병 입영 비대상 - 벌금이상의 형 선고자	○ 동반입대병 입영 비대상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행(집행 유예 포함) 선고자(단, 12대 강력범죄에 의한 벌금 이상의 형 선고자는 종전규정 적용) * 12대 강력범죄 : 살인, 방화, 강도, 강간·추행, 상해, 폭행, 협박, 공갈, 약취·유인, 체포·감금, 집단적 폭행,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현역병모집 업무규정 (’11.6월 입영자부터)
			병무청 현역모집과 (042-481-2746)
4. 국외이주자 중 현역병복무지원자에 대한 선발 가산점 부여	<없 음>	○ 국외이주자 중 각 군 현역병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모집 선발가산점 부여 - 대상 : 국외이주자 중 현역병복무 지원자 - 가산점 : 육군 3점, 해군 3점, 해병대 6점, 공군 3점 - 시행 : ’11. 8월지원자부터 (육군 9회차, 해·공군 8회차)	현역병모집 업무규정 (’11.10월 입영자부터)
			병무청 현역모집과 (042-481-274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5. 거주지 이동 공익근무 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완화	○ 공익근무요원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은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이 불가능 할 경우에 복무기관 재지정	○ 공익근무요원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은 동거 가족의 전 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할 경우 복무기관 재지정	병역법 (‘11.11.25.)
			병무청 사회교육복무과 (042-481-3011)
6. 공익근무요원 소집 해제자의 보상근거 명 확화	○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대상은 제2국민역, 병역면제자 및 그 가족	○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대상은 소집해제한 사람(제2국민역, 병역면제자 포함) 및 그 가족	병역법 (‘11.11.25.)
			병무청 사회교육복무과 (042-481-3011)
7. 근무태만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처벌 강화	○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지각, 조퇴, 근무지 이탈을 한 경우 경고처분 후 경고 1회당 5일 연장복무처분(고발 없음)	○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지각, 조퇴, 근무지 이탈을 한 경우 경고처분 후 경고 1회당 5일 연장복무처분 하되 8회 이상 경고시 고발 처리	병역법 (‘11.11.25.)
			병무청 사회교육복무과 (042-481-3011)
8.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선	○ 추천권자 추천등급 우수 업체 선정 및 지방청 복무관리/추천권자 평가 순으로 인원 배정	○ 산학연계 협약업체 지정업체 우선 선정 및 산학연계 맞춤형고 특성화고 협약업체 우선 배정 ☞ 2011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2012년 인원 배정 고시	병역법 시행령 (지정업체 선정 : '11.10월, 인원배정 : '11.11월)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2816)
방위사업청			
1. 업체 생산(정비) 능력 확인지침 개정	○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 : 제조품목 ○ 제조품목 생산능력 확인 업무 :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 ○ 생산능력 보유개념 : 소유로 해석	○ 정비품목도 생산능력 확인대상품목에 포함 - 생산능력 확인대상품목 : 제조품목, 정비품목 ○ 정비품목 생산능력 확인업무 : 각 소요군이 수행 ○ 생산능력 보유개념 확대 : 임차의 경우도 생산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11.5월)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02-2079-4128)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 계약특수조건 표준 (3종)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납품조서 제출시 바코드 생략 바코드로 처리해야할 사항(검사/납품조서) : 요구번호, 재고번호, 단위, 수량, 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코드 부착 의무화 바코드로 처리해야할 사항(검사/납품조서) :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국가 품목식별번호 포장표지의 경우 국방부 지침에 따라 바코드 방식을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 ☞ 방위사업청>방위사업정보>법령>행정규칙 	('11.6월)
			방위사업청 제도심사팀 (02-2079-4122)

소방방재청

1. 고층·특수건축물 대 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성능위주설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시설 공사방법에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세부 규정이 없어 미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시행으로 과학적 소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성능 위주설계 시행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11.7.1.)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38)

농촌진흥청

1. 농약 포장지 글자크기 표시 최소 기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크게 표시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만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약 포장지에 표시하는 내용에 따라 글자크기 표시 최소기준(5·8포인트) 신설 ☞ 농약의 표시기준 중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의 표시기준 (농촌진흥청고시) (‘11.5.12.)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031-299-2603)
2. 수출용 농약의 제조 증명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용 농약(원제)의 제조업자·원제업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조증명서를 발급 ☞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중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농촌진흥청고시) (‘11.5.12.)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031-299-260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 유통농약의 검사기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농약의 검사결과 판정기준 중 유효성분은 등록규격 이상이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농약의 검사결과 판정기준 중 유효성분은 등록규격을 기준으로 상한선과 하한선을 규정하여 동 범위 내에 적합하여야 함.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중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농촌진흥청고시) ('11.7.1.)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031-299-2603)
4. 연구클린센터 (Clean Center)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에는 연구운영과에서 연구과제를 기획, 공모, 정산 등을 모두 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는 연구과제기획과 관리를 분리하여 관리에 해당하는 공모, 선정협약, 연구비정산 등을 연구클린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취급 - 국가연구개발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 - 연구원 중심의 과제관리를 통한 고객만족도 및 편의성 제고 - 사업운영과제관리 업무분리를 통한 연구관리전문성 강화 ☞ 연구클린센터 관련기사(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연구클린센터 구축 ('11.4.6) 농촌진흥청 연구클린센터 (031-299-2010)
산림청			
1.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ha 이상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전용 또는 일시사용의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받아야 함 ☞ 30ha이상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산지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결과 첨부 	산지관리법 제18조의 2 ('11.7.1.)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23)
2.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제도 도입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 후의 산지복구 시 재해발생, 경관파괴, 수질오염 등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복구공사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 ☞ 일정규모 이상의 산지복구공사의 경우 전문가에게 감리를 받아야 함 	산지관리법 제40조의 2 ('11.7.1.)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29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3. 특별관리임산물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도입· 시행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양삼에 대한 생산적합성조사, 생산 신고, 품질검사, 품질표시 등을 의무화 ☞ 산양삼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함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1. 7월 예정)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208-9)
4.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 행위 및 처벌규정 신설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숲길 훼손행위,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 손괴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 ○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표시판 등 손괴 행위 금지에 대해 처벌규정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숲길주변에서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3, 제31조의 2, 제32조 (11.9.10)
			산림청 숲길정책팀 (042-481-8876)
5. 산림사업법인 등록 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등록 시 사무실 면적 보유(20~30㎡) 의무화 ○ 산림사업법인 등록 시 법인의 종류별로 각각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사업법인의 사무실 면적기준을 폐지 ○ 둘 이상의 산림사업법인 등록 시 자본금 및 기술인력을 중복인정 하는 특례제도 도입 ☞ 산림사업법인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기준을 완화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9월 예정)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195)

중소기업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지원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교육기관인 4년제 대학 - 학생 : 해당분야 중소기업 3년 이상 재직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교육기관인 4년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 학생: 해당분야 중소기업 1년 이상 재직 근로자 <p>☞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지원대상을 학사·전문학사까지 확대</p>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영지침 ('11.4.6)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042-481-4481)
특허청			
1. 한·EU FTA 협정에 의한 EU의 지리적 표시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EU FTA 협정이 없었음 ○ 재료에 대한 몰수 규정이 없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EU FTA협정이 발효되면, 이를 이행하기 위해 상표법 일부가 개정·시행되어 다음과 같은 상표출원은 등록될 수 없음(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6호, 제17호)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그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해당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또한 상표권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생긴 상품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제공된 재료도 몰수한다. (상표법 제97조의2) 	상표법 ('11.7.1)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042-481-5266)

해양경찰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동력수상 레저기구 변경등록 기간 연장 및 과태료 완화	① 동력수상 레저기구 변경등록기간 연장	○ 등록사항의 변경이 생긴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	○ 변경등록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11.10.5.)
	② 수상레저 활동관련 과태료 완화	○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부문 참조)	○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부문 참조)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032-835-2251)
	③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 신고 완화	○ 출발항으로부터 5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려는 자는 해양경찰관서에 신고 후 활동	○ 원거리활동범위를 5해리에서 10해리로 연장	수상레저안전법 (11.6.15)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032-835-2251)
2. 동력수상 레저기구 등록대상 확대 및 규제완화	① 동력수상 레저기구 등록시기의 명확화 및 등록대상 확대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시기의 불명확 ○ 현행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 수상오토바이 - 20마력이상 모터보트 (선외기) - 30마력이상 고무보트	○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일부터 1개월 이내 등록 ○ 등록대상에 추가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 선내기 모터보트(20톤미만) - 동력요트(20톤미만)	수상레저안전법 (11.12.16)
	②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 기구의 말소 사유 확대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훼손·도난·멸실 등의 경우만 말소등록 사유에 포함	○ 말소등록의 사유에 “구조·장치 등의 변경으로 등록대상에서 제외된 때”와 “수상레저기구를 수출하는 경우”를 추가	
	③ 동력수상 레저기구 보험가입시기 의 명확화	○ 동력수상레저기구 보험 가입기간 미지정	○ 소유일부터 1개월이내 가입토록 함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032-835-2251)
	④ 동력수상 레저기구의 중복검사 및 구조변경 승인의 완화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임시검사 시기와 정기검사 시기가 중복되더라도 유사한 검사를 모두 받아야 하고, 구조변경시 지자체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나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정기검사 시기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로 대체 하도록 함 ○ 구조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시 지자체 담당자의 변경사실 확인·승인 절차를 간소화, 안전검사기관의 1차 점검만으로 변경등록토록 함	